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Considerations on Taxation of Agricultural
Income in Korea
www.krei.re.kr

임소영 | 김윤진 | 이 실

연구 담당

임소영 | 부연구위원 | 연구 총괄, 1~6장, 부록 3

김윤진 | 연구원 | 2장, 4장, 부록 1, 2

이 실 | 연구원 | 2장, 3장, 부록 4

안창남 | 강남대학교 교수 | 4장 1절

연구보고 R79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경제적 함의와 개선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6. 10.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02-2269-9917)

ISBN | 978-89-6013-954-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7000160)

머 리 말

2010년 농업소득세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작물재배업 소득은 2016년부터 식량작물재배업을 제외하고 2015년도 수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에 농업과 타 산업 간 그리고 농업 내에서도 과세, 비과세 품목이 구분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형평성 문제 외에도 소득신고 의무가 없는 농가의 경영기록 작성 유인이 줄고, 개인소득증빙자료 부재로 투자자금 조달에 한계가 된다. 또한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소득안정 및 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의 제약 등 농업과 농정 차원의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비과세인 식량작물재배업과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의 과세 전환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세제도 개편은 농업인의 조세저항, 납세 행정비용의 증가, 농가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농업생산 위축과 같이, 과세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 평가하여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농가경제조사, 국세통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농가의 세부담 추정, 납세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사례로 프랑스와 일본 등 선진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를 조사하고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교하여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측면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는 조세제도 개편을 위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16.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요 약

연구 배경

- 2010년부터 농업소득세의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작물재배업은 2016년부터 식량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2010년부터 농업소득세의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던 작물재배업은 2016년부터 식량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2015년 소득분에 대해 수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자는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농업과 타 산업 간의 형평성은 물론 농업 내에서도 과세품목과 비과세 품목이 구분되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과세 형평성과 더불어 소득신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
-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하고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

연구 방법

- 가계경제조사, 국세통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세부담 추정, 납세 현황 등을 분석
-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가의 노동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론분석을 시도

-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농업 관련 소득세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현실의 적용가능성을 비교 검토
- 연구기간 동안 조세 및 농업 관련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등의 논의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

농업 관련 소득세제 운용 현황

- 2015년부터 식량재배업을 제외하고, 채소,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커피 등),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함.
 -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이나, 농가부업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5,000마리)로 정의하는 범위 내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음.
 -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또는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농업 분류		과세내용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 작물재배업	
	시설 작물 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서비스업	

농업인의 조세 납부 현황

- 국세통계연보상에 농림어업 소득 신고자는 2014년 약 17,400명으로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의 0.4%에 해당되며, 농림어업 소득으로 신고된 총 수입은 7조 3,588억 원으로 전체 0.9%에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비중
- 그러나 신고인원과 총수입 및 소득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총수입 및 소득은 다른 업태와 비교하여 낮지 않은 수준
 - 농림어업의 사업소득 신고 인원의 1인당 평균 총수입은 4억 2,311만 원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신고자에 비해 높은 수준
 - 또한 농림어업 소득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은 2,443만 원으로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농가의 세부담 비교

- 201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한 조세·부담금 비중에서 가계 지출비 중 농가당 평균 조세·부담금은 약 57만 원이며, 이는 전체 가계지출의 1.4%
- 도시가구와 비교한 결과 전체 도시가구의 연간 1인당 조세 납부액은 55만 원인 데 반해 농가의 연간 조세 납부액은 27만 원으로 농가의 조세 및 부담금은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
- 가계소득에서 조세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농가는 2.0%인데 반해 도시가구는 4.1%에 이르며, 근로자가구,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대비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농가보다 높게 나타남.

〈농가와 도시가구의 조세 및 부담금 비교〉

단위: 천 원/연, %

가구구분	가구원 1인당	가구 전체
	가계지출 상 조세 및 부담금	소득 대비 조세 및 부담금 비중
농가	206	2.0
도시가구	545	4.1
근로자가구	737	3.1
근로자 외 가구	274	5.5

- 농업총수입별 농가 평균 조세 및 부담금 액수를 살펴보면 총수입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조세 및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어 만약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수입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세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시사

작물재배업 농가소득 변화와 국세청 조세행정 여건변화

- 지난 10년간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의 농가 비중은 2005년 2.1%에서 2014년 3.7%로 증가하였고, 농가소득 2억 원 이상의 농가는 2005년 0.1%에서 2014년 0.6%로 증가하여 각각 연평균 6.6%, 17%의 증가율을 보임.
 - 농가의 실질 평균소득 감소 또는 정체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가구의 비중의 확대는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과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
- 국세청의 조세행정역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행정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의 징세비용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세수 100원당 징세비가 0.81원에서 2014년 100원당 0.75원으로 하락함.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2013년 기준 일본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비용-농가의 세부담 증가

-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의 세부담 추산결과 적용한 모든 시나리오에서 작물재배업에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 부담 농가가 현재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 납세 세액도 증가하여 농가의 세부담은 확대될 것
- 그러나 저소득 농가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등의 세액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지원액이 납세액보다 많아 소득신고가 유리하며, 농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공제 등 보완책 도입으로 전체적인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시나리오별 추산 결과〉

시나리오	납세가구 비중	가구당 평균 세액(원)
작물재배업 제외 종합소득과세	12.2	583,218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	18.8	700,519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EITC 및 CTC 적용	17.7	602,582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세 과세+EITC 및 CTC 적용 +농업소득공제(가칭) 적용	14.5	539,271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	32.0	895,082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EITC 및 CTC 적용	27.8	797,144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세 과세+EITC 및 CTC 적용 +농업소득공제(가칭) 적용	16.4	679,453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조세저항, 행정비용 증가

- (농업인의 조세저항) 농가의 가처분소득이 감소에 따른 농업인의 거부감으로 과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농업분야 내 과세대상자(임업, 축산업 등)와 이해관계 충돌로 분열 발생 가능성도 존재
- (세금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의 증가) 조세징수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고방식 납세를 전제한 경우 과세당국의 미신고 농업인 세금 추정 시 농업인의 분포가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과세당국

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면 농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이 신고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결국, 실질적 납세행정 비용의 증가는 국세 관련 행정비용보다 납세협력 비용의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편익-과세에 따른 직접 편익

- (세수의 증가) 2014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해 농업소득 전체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가정하여 세수 증감분을 추산한 결과 493억 원이 감소하거나 최대 3,495억 원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세 형평성 확보에 의한 후생증가) 농업 분야 내에서도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구분한 품목별 과세여부 결정은 수평적 공평성에 어긋남. 또한 동일한 수준의 소득에서 근로소득자와 작물재배업 사업자의 차별은 수직적 공평성에도 어긋남. 특히 수직적 공평성의 침해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탈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업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를 확대는 국가 전체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형평성 제고로 인한 후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편익소득신고로 파생되는 편익

- (농가 경영의 효율화 및 투자 기회 확대) 농가의 소득신고를 위한 장부 회계관리, 재무제표 작성, 생산관리의 결과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함. 예를 들어 외부 컨설팅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이 용이해짐. 또한 소득증빙 자료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장에 활용될 수 있어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의 확대는 농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농가 복지제도에 활용) 농가의 소득신고로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가 있음. 이들의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가 필수요건이며 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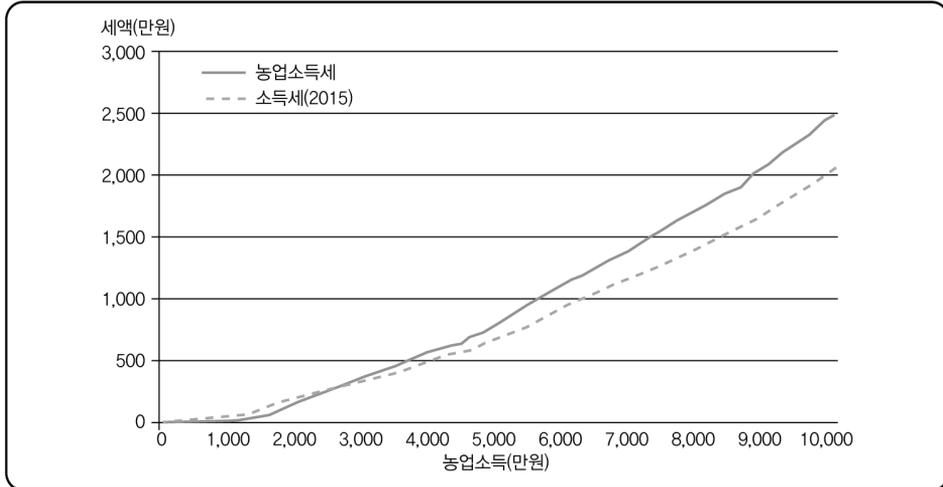
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함. 따라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면 농업인도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관련 정부지원금을 신청이 가능

- (소득안정 정책과 농촌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개별 농가에 맞춘 수입 증빙에서 소득신고 자료는 가장 공신력 있음.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다면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실제 피해 수준에 맞춘 보험금 산정이 가능함, 또한 농업인의 축적된 소득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농촌 복지정책에서의 차등지원이 가능해질 것임.

농업관련 소득세제 개편 방안

- (농업소득공제(가칭) 도입) 농업소득세에서 기초공제를 적용하였던 사례를 감안하여 농업소득에 대한 별도의 공제의 신설적용 방안을 고려해야 함. 농업소득공제는 농업소득세에서 기초공제가 연 560만 원으로 적용된 것을 감안하여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560만 원을 적용하거나 물가상승을 감안한 615만 원 적용 방안,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누진방식의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세율 및 과표 구간 설정) ① 국세인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②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 작물재배업과 축산, 임산소득을 포함한 농업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적용 시 세액 비교〉



-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세가 유리하지만 2,6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농가는 현재의 소득세가 유리함.
 - 그러나 소득세와 달리 농업소득세는 기초공제 외에 별도의 소득 및 세액공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농업소득을 종합소득에 산입시켜 소득세 부과하는 것보다 농가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며, 납세 행정 측면과 여타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부과가 바람직함.
- (농업소득 평준화) 농업분야의 높은 소득변동성과 투자 수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예를 들면 올해의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일부를 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 있음.
 - (소득신고 관련 규제 완화) 시행 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현장에서의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

- (농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지원) 농업소득 전체로 과세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장부기장이나 매입 및 매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납세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협에 축적된 매입·매출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업인이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요약 및 결론

-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세수 확대는 농가의 납세액 증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득의 이전일 뿐 순편익은 없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편익들은 경제의 효율성 증대, 제도의 발전 등 사회적 순편익과 연계될 수 있으며, 농업인 조세저항과 납세협력비용 증가는 제도 개편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 여부에 따라서 완화 가능성이 있음. 결론적으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비과세되던 작물재배업 및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 추진은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함.
- 그러나 과세 확대의 비용은 과세 대상 농가의 부담이나 편익이 농업계 포함 사회 전체로 귀속되기 때문에 사회 내 일부 집단이 치르는 비용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대된다면 피해를 입는 집단에 대한 보상은 정당성이 있음.
-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 세제 개편시 농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가능한 한 세부담 확대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면, 농업소득자 공제혜택도입, 소득 산출시 경비율 조정 등으로 어려운 경영상황 고려 필요

- 제도개편은 농가가 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에서 실시해야 함.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에서도 장기적·단계적인 제도개편이 이루어질 때 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 농업은 여전히 시장개방에 적응 중이고,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 불황에서 과세 시행 시 농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확대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단기간의 제도 변화보다는 단계적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함.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제도 개편을 위하여 농업인과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Considerations on Taxation of Agricultural Income in Korea

Background of Research

Crop income has not been taxable since 2005. Though farmers with income more than one billion won from crop farming other than food crops should declare their income and be subject to income tax from year of 2016, an argument continues regarding on the taxation equity between farmers with tax exemption and those without tax exemption as well as between agriculture and other industries.

Moreover, tax exemption on income from crop farming is a factor hindering efficient agricultural administration from three reasons. First, because farmers are not obliged to declare their income, they have weak motivation to keep books and records, which result in limited application of management techniques in their farming. Second, no income declaration record can be an obstacle to farmer's mor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because of uneasy access to the funds of banks. Third, income stabilization programs and welfare programs for farmers are used for all farmers regardless of recipients' income level. Being acknowledged that the amount of public money transferred sh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recipient's income level for efficiency of policy, the fact that there is no reliable record to prove applicant's income is one of factors to deteriorate efficiency of government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if tax exemption on crop income should be maintained. However, there are socio-economic costs such as farmer's tax resistance, an increase in the costs of tax administration, increased tax burden among farmers as well as benefits if tax exemption is canceled and crop income starts to be taxable income. Thus a balanced ex-

amination should be done on the continuation of tax exemption. Henc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ssessed the socio-economic costs and benefits of the continuation of tax exemption and drew a conclusion.

Method of Research

Four approaches were applied in this study. First, an estimation of farmer's tax burden was done by using the Household Economic Survey, National Tax Statistics, and Household Survey Data. Second, a scenario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mpact of taxation on crop income. Third, taxation on agricultural income in France, Japan, the U.S. and Canada was introduced to bring out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Moreover, meetings with experts on tax and agriculture were held on a regular basis to discuss several issues related to taxation on crop income so insightful comments on the study were obtained.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e results of scenario analysis showed that the number of farmers who pay income tax will increase no matter what scenario is applied. Moreover, the average amount of paid tax also increased which indicates that the tax burden clearly increased among farmers. This can bring out farmer's bigger tax resistance. Conflicts between farmers who pay income tax (forestry and livestock income earners) and farmers who do not pay income tax (crop farmers) can cause social cost. The last cost is an increase in administrative costs required for tax collection, which can be divided into tax collection costs and tax compliance costs. In the end, an increase in the cost of taxation administration can be affected by the increase in the tax compliance costs rather than administrative cost for national tax.

The benefits of taxation on crop income are divided into the benefits from taxation itself and the benefits from income declaration made for tax payment. The former includes an increase in tax revenues, and an increase in social welfare resulting from improved social equity. The latter includes farmers' efficient management of their business, more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and expanded sales channels by ensuring the base for business registration, and development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This study does not provide money metric measures of all the cost and benefit of taxation on crop income because some of costs and benefits are nontangible. However,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benefit of taxation on crop income can exceed the cost and tax exemption on crop income should not continue.

The benefit of taxation on crop income can expand to the whole society beyond the agricultural sector while the major costs are to be borne by farmers who were not income taxpayers. Especially, the change in taxation can cause bigger economic burden to low income farmers compared to high income farmers. Thus it is necessary to devise ways to reduce tax burden for low income farm households.

Furthermore, the transition to taxation on crop income should be carried out as long-term and in stages. The agreement among farmers on taxation on crop income should be preceded to minimize social conflict caused from tax policy changes.

Researchers: Lim Soyeong, Kim Yunjin, and Lee Shil

Research period: 2016. 1. ~ 2016. 10.

E-mail address: syl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2
3. 선행연구	3
4. 연구 방법과 범위	5

제2장 소득세제 및 농림어업인의 납세 현황

1. 소득세제 운용 현황	7
2. 농업인의 조세 납부 현황	25

제3장 작물재배업 비과세 배경과 여건 변화

1. 농업분야의 소득세 감면 현황	37
2. 농업 경영 환경의 변화	44
3. 여건 변화의 시사점	53

제4장 농업분야 소득세 도입의 해외사례

1. 프랑스	55
2. 일본	72
3. 미국	83
4. 캐나다	92
5. 시사점	99

제5장 농업분야 소득 과세 확대의 편익과 비용

- 1. 소득세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103
- 2.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112

제6장 농업 관련 소득세제 개편 방안

- 1.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131
- 2. 소득세제 개편 방안 132

제7장 결론 137**부록**

- 1. 일본 청색신고제도 143
- 2. 사업자 등록 및 자녀장려금 제도 현황 152
- 3. 소득세 부과와 농가의 노동공급 158
- 4. 농업소득세 관련 주요 조세용어 171

참고문헌 173

표 차례

제2장

<표 2-1> 세목별 세수 현황	8
<표 2-2> 소득별 소득세 과세방식	9
<표 2-3> 종합소득과세율(2015)	10
<표 2-4> 사업소득 범위	11
<표 2-5>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4
<표 2-6> 업종별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 ..	15
<표 2-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16
<표 2-8>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16
<표 2-9> 업종별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2015)	17
<표 2-10>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18
<표 2-11> 비과세소득	19
<표 2-12> 신고유형별 농림어업 사업자 수입기준	20
<표 2-13> 농업분야 귀속경비율	20
<표 2-14>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22
<표 2-15>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23
<표 2-16> 기타 농업분야 비과세 범위	24
<표 2-17> 2014년 주요업태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	25
<표 2-18> 농림어업 신고자의 총수입 구간별·연도별 소득신고 현황 ..	28
<표 2-19> 각 부문별 가구당 평균 지출액	30
<표 2-20> 농가와 도시가구의 조세 및 부담금 비교	31
<표 2-21> 농업총수입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33
<표 2-22> 농가소득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35

제3장

<표 3-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변천	38
<표 3-2>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비교	39
<표 3-3>	농업소득세 세액별 납세인원	41
<표 3-4>	품목별·경영주 연령별 가구 비중	42
<표 3-5>	품목별 주/부업 비중	44
<표 3-6>	지방세 세무행정 현황	51

제4장

<표 4-1>	프랑스 농업분야 소득세제 변화	59
<표 4-2>	프랑스 소득세율(2016년 기준)	61
<표 4-3>	농업소득 금액으로 분리된 과세 카테고리	62
<표 4-4>	농업소득과세제도별 납세자 수(법적 형태 기준으로 분류) ..	64
<표 4-5>	2013년 과세방식별 적용 대상 농업소득 과세표준	66
<표 4-6>	정액소득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비교	71
<표 4-7>	일본의 소득세율(2015년 기준)	72
<표 4-8>	일본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	74
<표 4-9>	일본의 소득금액별 농업 소득신고 인원 및 비중(2014)	75
<표 4-10>	일본의 농업소득 계산 순서	81
<표 4-11>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82
<표 4-12>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구간	84
<표 4-13>	미국의 주요 소득 회계방식	86
<표 4-14>	미국의 농업손익 계산산식	87
<표 4-15>	미국의 농업소득의 주요 수입	88
<표 4-16>	미국의 농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89
<표 4-17>	미국의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1
<표 4-18>	캐나다의 연방정부 소득세율	93
<표 4-19>	캐나다의 농업소득의 주요 수입	95

<표 4-20> 캐나다의 농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96
 <표 4-21> 캐나다의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98
 <표 4-22> 농업 관련 소득세제 국제 비교 101

제5장

<표 5-1> 시나리오 구성 내역 113
 <표 5-2> 농가경제조사와 소득세법의 소득분류 비교 116
 <표 5-3> 소득공제 적용 내역 117
 <표 5-4> 세액공제 적용 내역 118
 <표 5-5> 시나리오별 추산 결과 120
 <표 5-6> 납세가구와 과세미달가구 특성 비교 122
 <표 5-7> 세액구간별 농가 분포 122
 <표 5-8> 소득구간별 평균 납부세액 125

부록

<부표 1-1> 청색신고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 145
 <부표 1-2> 청색신고자의 특전 147
 <부표 1-3>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부기 방법 149
 <부표 1-4>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현황 151
 <부표 2-1> 근로소득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152
 <부표 2-2>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사업자 등록 지급액 .. 153
 <부표 2-3> 소득별 제출 증거서류 154
 <부표 2-4> 업종별 조정률 155
 <부표 2-5>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지급 현황 156
 <부표 2-6>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157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종합소득 소득세 산출 방식	10
<그림 2-2>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12
<그림 2-3> 2014년 사업소득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비중	26
<그림 2-4> 농업총수입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비중	32
<그림 2-5> 농가소득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비중	34
<그림 2-6> 경영주연령별 가구원 1인당 조세·부담금 지출 비중	36

제3장

<그림 3-1> 농업소득세 세수	40
<그림 3-2> 품목별·판매금액별 농가 비중	43
<그림 3-3>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 추이	45
<그림 3-4> 고소득 농가 비중 변화	46
<그림 3-5> 농림어가의 유형별 소득	47
<그림 3-6>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및 과세미달추정인원	49
<그림 3-7> 국세 징세비 현황	50
<그림 3-8> 1인당 세수 현황	50

제4장

<그림 4-1> 일본의 농업소득 계산산식	78
<그림 4-2> 캐나다의 농업소득 계산산식	94

제5장

<그림 5-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108
<그림 5-2> 청년취농금부금(경영개시형) 지급 기준	110
<그림 5-3> 세액 계산 흐름도	114

제6장

<그림 6-1>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적용 시 세액 비교 134

부록

<부도 3-1> 농가의 최적 노동시간 배분 162
<부도 3-2> 작물재배업 과세 시 농가의 최적 시간 배분 165
<부도 3-3> 농외 노동활동 제약 시 농가의 시간 배분 168
<부도 3-4> 농외 노동활동 제약하에서 작물재배업 과세 시
 농가의 시간 배분 170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정부의 지원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그 중 하나이다.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농지세가 부과되다가 2000년부터 농업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농업소득세의 폐지와 함께 비과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2015년 소득분에 대해서 작물재배업 종사자도 수입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신고를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식량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수입액에 관계 없이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소득세 부과에 관한 대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것이며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획득하는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세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농업분야라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품목과 비과세되는 품목으로 나뉘어져 있어 과세 대상인 타 품목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아 관련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식량작물재배업 및 수입액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형평성 측면 외에도 농업과 농정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농가는 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장부 기장이나 경영기록을 소홀히 하게 된다. 때문에 전문적인 경

2 서론

영기법이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신고 기록이 없어 금융기관 자금에 대한 접근도 쉽지 않은데 이는 농가의 투자 기회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소득안정정책, 복지정책 등은 대상자의 소득을 증빙하는 기록이 없어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즉 소득세 납부 또는 소득세 납부를 위한 소득신고는 농가의 경영이나 정책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농업인의 정확한 소득과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 형평성뿐만 아니라 소득신고 활성화 측면에서도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10억 원 이하 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다. 농업인의 조세저항이나 납세 행정비용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며 농가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농업생산이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세 범위를 농업분야 전체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나 편익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함께 검토하여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개선 방안을 찾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분야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가 가져올 편익에는 세수 증가, 과세형평성 제고로 인한 조세저항 감소, 농가경영의 효율화와 투자 기회 확대, 농업인의 복지제도 활용도 제고, 농업정책의 발전 등이 있을 수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가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농가의 가처분소득 감소, 농업생산활동 위축, 조세저항, 납세 행정비용 증가를 들 수 있다.¹

이 연구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 평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과세 전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 확대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농업 관련 소득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국내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들은 작물재배업의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김미복·김수석(2011)은 소득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농업 관련 조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품목 간 과세 불균형을 야기하며,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농가 소득에 대한 공인된 정보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농업소득의 세원 누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제도(EITC)의 확대 도입과 함께 농가가 복지정책에 보다 활발하게 편입되기 위해서는 농가의 경영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종합소득세 과세를 통해 농업부문을 제도의 틀 내부로 편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소득세 확대 부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과세 후 공제나 감면을 이용해 보완하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원(2011)은 작물재배업의 비과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작물재배업만 과세 제외되는 근거 부족, 타 산업과의 형평성 침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의 계기가 된 농업소득세 폐지 이유는 세수

¹ 소득세 과세가 농업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는 미미한데 반해 납세행정비용은 높았다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농업소득세라는 별도의 세목만을 따로 분리해서 평가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나왔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국세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면 해당 논리는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안으로서 작물재배업을 소득세에 편입시키는 방법, 농업소득 전체를 비과세하는 방법, 작물재배업 중 특정 종류의 소득만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 농림어업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두는 방법,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는데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작물재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다. 다만 일부 대규모 기업농부터 과세를 시작하고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중석 외(2010)는 작물재배업 비과세가 과세 형평성 저해, 농산물 유통질서 왜곡, 농업정책의 실효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설작물재배 농가에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우리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한 인식도 보이고 있다.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일본, 미국과 캐나다는 공통적으로 농업소득이 국세 또는 연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으며 농업인이 기장과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실제 소득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가 점진적으로 실제 기장에 기초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보다 간소화된 양식을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도 파악하였다.

임응순 외(2013)는 지방재정 확충을 전제로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를 검토하였다. 1차산업 종사자들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여 여타 과세소득자들과 비교할 때 그리 낮은 소득이 아니므로 이들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1차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1차산업 특히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으로서 농업소득을 지방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농업소득을 소득세로 과세하는 방법, 농가부업소득을 지방세로 전환한 후 이 기준에 맞추

어 농업소득을 소득세 과세하는 방법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정치권과 농업인의 조세저항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며 법률적인 보완, 농업소득 과세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부 농업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해외사례를 소개하거나 과세 전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4. 연구 방법과 범위

4.1.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통계자료를 이용한 지표분석, 시나리오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농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이용되었으며 농가의 세부담 추정, 납세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경우 농가의 세부담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농가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사례로서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에 관한 연구로서 세목 중 소득세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과세에 관한 원론적인 차원의 논의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 확대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10억 원 이하의 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한 과세를 의미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 확대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환경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제도 변경을 시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시점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의 의미를 평가해보고 그 정당성과 사회경제적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작물재배업 과세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 농가에 미치는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 전체에 미치는 편익은 형평성 제고로 인한 집단 간 갈등 감소, 납세의 선행조건이 되는 소득신고로 일어날 수 있는 농가 경영상의 편익, 소득 맞춤형 농정의 운영 가능성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에 따른 비용은 효율 비용, 행정비용, 납세자 순응 비용 그리고 정치적 비용(조세저항)으로 나눌 수 있다. 효율 비용은 정부가 세금을 걷으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 또는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의미한다. 이것은 조세가 경제주체의 행동을 바꾸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비효율을 말한다(전주성 2006: 223). 이 연구에서는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가의 노동시간 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행정비용의 변화, 납세자 순응 비용, 정치적 비용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토대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시 나타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소득세제 운용 현황

1.1. 소득세 개요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법인세와 함께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중요한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2014년 국세 수입 중 소득세는 국세 중 27.6%, 내국세 중 3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법률에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다.² 「소득세법」상의 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 소득이 있다. 그 중에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이를 바탕으로 누진세율에 의해 과세된다.³ 이외

²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식에는 법률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열거주의 방식과 포괄적인 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개인소득에는 열거주의 방식을 적용하지만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5: 48).

³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되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일정 비율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이에 해당된다(기획재정부 2015: 48).

8 소득세제 및 농림어업인의 납세 현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세율을 적용하여 분류과세된다.⁴

〈표 2-1〉 세목별 세수 현황

단위: 억 원, %

세목	2012년	2013년	2014년	내국세 대비 비중	국세 대비 비중
국세청 세수	1,920,926	1,902,353	1,957,271	-	100.0
내국세	1,697,713	1,688,458	1,741,119	100.0	-
소득세	463,834	483,834	541,017	31.1	27.6
근로장려금	-6,164	-5,637	-7,765	-0.4	-0.4
법인세	459,318	438,548	426,503	24.5	21.8
상속세	17,185	15,865	16,961	1.0	0.9
증여세	23,020	27,032	29,291	1.7	1.5
부가가치세	556,676	559,626	571,388	32.8	29.2
개별소비세	53,355	54,843	56,241	3.2	2.9
주세	29,989	29,470	28,520	1.6	1.5
증권거래세	36,806	30,771	31,210	1.8	1.6
인지세	6,014	6,366	7,263	0.4	0.4
과년도수입	57,680	47,741	40,489	2.3	2.1
교통·에너지·환경세	138,091	132,478	134,403	-	6.9
방위세	4	-592	2	-	0.0
교육세	46,339	45,091	46,052	-	2.4
농어촌특별세	27,468	24,675	22,623	-	1.2
종합부동산세	11,311	12,243	13,072	-	0.7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소득세 신고 기간은 익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소득세 과세는 개인 또는 가구를 단위로 과세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는

⁴ 분류과세는 특정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개인 단위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단, 2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경우 조세 회피를 위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기획재정부 2015: 49).

〈표 2-2〉 소득별 소득세 과세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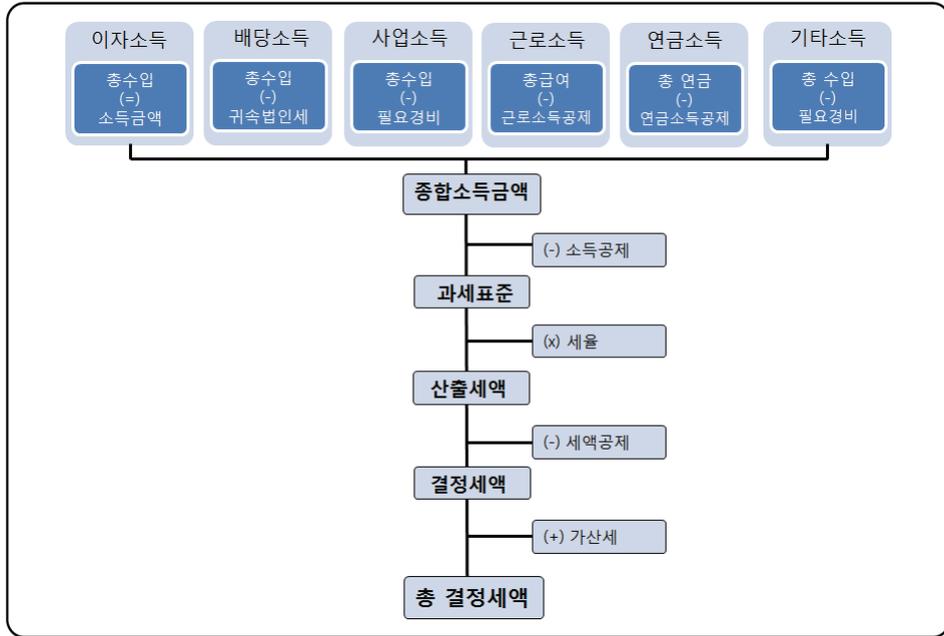
구분	과세방법	소득구분	내용
종합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분리과세 하지 않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금액을 계산, 소득세 결정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예만 과세
	분리과세		- 2,000만 원 이하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세율 14%로 원천 징수 -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별도 세율표에 준하여 원천징수
분류소득	분류과세	퇴직소득, 양도소득	- 소득원천에 따라 별도의 세율적용

자료: 기획재정부. 2015. 『2015 조세개요』 자료에서 재정리.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은 종합소득합산 금액에서 개인별 종합소득공제금액을 감액한 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로부터 산출된 산출세액에 다시 세액공제금을 제하여 확정된다<그림 2-1>.

10 소득세제 및 농림어업인의 납세 현황

〈그림 2-1〉 종합소득 소득세 산출 방식



자료: 기획재정부. 2015. 『2015 조세개요』. p. 51 재가공.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소득세율(2015년 기준)은 <표 2-3>과 같다.

〈표 2-3〉 종합소득과세율(2015)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 및 가산법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760만 원+(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8)

자료: 「소득세법」 제55조 세율에 따름.

1.2. 사업소득의 신고⁵⁾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표 2-4>의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제19조). <표 2-4>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나타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업·임업 및 어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일부는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표 2-4> 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 범위 제외
농업, 임업 및 어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은 제외함.
광업	-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지역권·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
전문, 과학 및 기술지원 서비스업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⁵⁾ 국세청(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기획재정부(2015). 『2015 조세개요』를 참고하여 작성함.

12 소득세제 및 농림어업인의 납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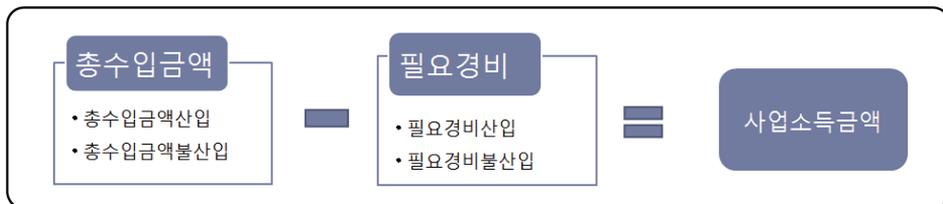
(계속)

사업소득 범위	사업소득 범위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협회 및 단체
가구 내 고용활동	-
그밖에 위와 유사한 사업	-

자료: 기획재정부. 2015. 『2015 조세개요』. pp. 57-58.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 총수입(매출액)에서 소요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으로, 회계적으로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을 통해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기획재정부 2015: 60).

〈그림 2-2〉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여기에서 수입은 과세기간 동안 각 소득종류별 총수입을 의미하는데 회계상 수익으로 잡히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수입과 산입되지 않는 수입으로 나뉜다. 매출액,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의 환입금, 사업과 관계된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추가액과 부채 감소액,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받은 보험차익,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된다. 그러나 소득세 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을 위한 충당액, 이전 과세기간으로 이월된 소득금액, 수확된 농산물, 포획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등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국세청 2016: 105-106).

필요경비는 원료매입비, 제품 보관료 및 포장비, 운반비 등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들의 합계이다. 그러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벌금·과료와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가산세액, 가사 관련 경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소득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장부 및 증명서류를 갖추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여 계산된 실질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⁶ 또한 장부를 갖추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을 통해 소득세를 산정·납부하도록 하고 있다.⁷

⁶ 간편장부: 중·소규모 이하의 개인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면서 소득금액의 계산 및 부가가치세의 신고가 가능하도록 국세청장이 제정·고시한 장부(국세청 <http://www.nts.go.kr> 종합소득세 DB 간편장부 안내, 검색일: 2016. 6. 2.)

⁷ 추계결정은 정부가 그 조세의 과세표준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는 자에 대해 독자적으로 징수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0조).

〈표 2-5〉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신고유형			내용
장부신고	복식부기	자기 조정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외부 조정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포함)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간편장부를 기장한 사업자가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추계신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에 의거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비사업자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서 재정리.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표 2-6>의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또한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위의 기준에 상관없이 간편장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종별 신고 대상의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을 보면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은 3억 원 이상인 자는 복식부기, 3억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1억 5,0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1억 5,000만 원 미만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7,500만 원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로 이보다 미만인 자는 간편장부 대상이다.

<표 2-6> 업종별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 원 이상자	3억 원 미만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000만 원 이상자	1억 5,000만 원 미만자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이상자	7,500만 원 미만자

주: 해당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함.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 11.

복식부기 대상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사업자는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업종별 기준금액은 복식부기의 기준금액의 2배다. 수입금액에 따른 외부조정 대상자의 업종별 수익금액기준은 다음 <표 2-7>과 같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결정 받은 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이밖에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자는 항목별 세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조정 첨부 대상자가 된다.

〈표 2-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구분	비고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이상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1억 5,000만 원 이상

주: 해당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함.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 55.

성실신고확인 은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 유도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업종별로 일정 수입기준 이상의 사업자가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세무대리인(개인작성은 인정되지 않음)에게 검증받은 이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등의 업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업종은 10억 원 이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은 5억 원 이상의 경우 해당 신고유형 대상이 된다.

〈표 2-8〉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업종별	확인 대상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20억 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사업, 서비스업	해당 연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 12.

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장부에 근거해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다. 추계방식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이다.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많은 사업자, 당해 기간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자가 된다. 또한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의사, 약사, 수의사 등),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중 의무가입기간(3개월) 내 미가입자,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상습 발급 거부자(연간 3회 이상에 1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된다(국세청 2015: 57).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 이하인 사업자와 당해 연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해당한다.

〈표 2-9〉 업종별 신고 대상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기준(2015)

업종별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계속사업자 직전수입금액	신규사업자 ('14년수입금액)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 2와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6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법」 제45조 제2항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을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2,400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주: 해당되는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함.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 11 재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는 신고유형에 따라서 종류와 양이 달라진다. 복식부기 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비롯하여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서류, 손익을 나타내는 서류, 영수증 수취 증빙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간편장부 신고자는 복식부기 신고자에 비해 제출서류가 줄어들어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하는 사업자는 제출서류가 거의 없는데 기준경비율 신고자만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고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다.

〈표 2-10〉 신고유형별 제출서류

신고유형	제출서류
복식부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영수증수취명세서, 조정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간편장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계산서, 기타 신청서 또는 명세서
기준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단순경비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자료: 국세청.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자료에서 재정리.

1.3.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된 소득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한 경제행위를 유도하거나 저소득층 보조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비과세 적용된 사례는 작물재배업이 유일하다.

〈표 2-11〉 비과세소득

구분	내용
이자 소득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1인당 3,000만 원 이하에 한함)의 이자소득, 재형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근로 소득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따라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각종 법률 등에 따라 받는 다음의 급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의 입학금·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연금 소득	법령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 과학전람회 입상 상금 등
배당 소득	「신탁업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배당소득,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 저축의 배당소득, 장기보유우리사주의 배당소득(액면가 1,800만 원 이하 보유자에 한함),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000만 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 장기회사채형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사업 소득	논·밭 임대소득, 작물재배업소득, 주택임대 소득,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산림소득
연금 소득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여하는 각종 상금·보조금, 직무발명보상금, 과학전람회 입상 상금 등 확인필요 령→법령, 「소득세법」

자료: 기획재정부. 2015. 『2015 조세개요』. 자료에서 재정리.

1.4. 농업 관련 소득세제 운용 현황

영농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농업분야의 사업소득은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산정된다. 필요경비는 장부의 구비 여부 유무에 따라 적용 방식이 상이하다. 장부 및 증명서류를 구비하고 기록한 경우, 수입금액 3억 원 미만인 농업인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농업인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⁸ 장부를 갖추지 않은

⁸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식량작물을 제외한 작물재배업의 경우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는 비과세함으로 실질적으로는 수입금액 13억 원을 기준으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구분되며 수입금액 10억 6,000만 원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경우, 필요경비는 추계결정을 통해 계산되며,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6,000만 원 미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표 2-12〉 신고유형별 농림어업 사업자 수입기준

신고유형			수입기준
장부 방식	복식부기	자기조정	3억 원 이상
		외부조정	6억 원 이상
	간편장부		3억 원 미만
	성실신고확인		20억 원 이상
추계 방식	기준경비율		(기존사업자) 6,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자) 3억 원 이상
	단순경비율		6,000만 원 미만

〈표 2-13〉 농업분야 귀속경비율

단위: %

구분	경비율		
	축산업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	식량작물재배업
기준경비율	7.4~16.3	13.2	0.0
단순경비율	88~97.2	93.5	0.0

자료: 국세청, 2016.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14.1. 농업소득 계산 방식⁹⁾

가. 장부신고

총수입금액의 사업소득 범위는 「소득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농업분야의 소득은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 및 임업, 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범위에 해당된다.

⁹⁾ 국세청(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p. 51-64를 참고하여 작성함.

또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확정일이 포함된 연도이다.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사업 관련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 감소액(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제외), 당해 사업용 자산손실로 취득한 보험차익,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등이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그러나 소득세 또는 지방소득세의 환급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자신이 채굴·포획·양식·수확한 농산물·포획물·축산물·임산물·수산물이나,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자기가 생산하는 타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등은 산입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26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필요경비의 범위(「소득세법」 제27조, 영 제55조)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부대비용, 임업 및 양잠업의 경비, 가축 및 가금비, 피고용인 급여,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재해손실자산의 원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소득분, 벌금 과료 및 과태료,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나. 추계신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소득금액 산정이 어려워 이들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하단의 식과 같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과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제하여 산정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하여 계상한다(국세청 2016).

-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②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자료: 국세청. 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p. 13.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① 또는 ②를 3배 (간편장부 대상자는 2.4배)한 것 중 적은 것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① 또는 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과 같은 주요 경비는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기타 경비는 정부에 의해 규정된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출한다.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반비를 포함하고, 임차료는 사업과 관련된 건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는 피고용인의 인건비 및 실지급 퇴직금을 포함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류들을 비치·보관 및 제출해야 한다.

〈표 2-14〉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범위 및 증명서류

구분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 비용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

자료: 국세청. 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1.4.2. 농업분야 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에 의거하여 논밭을 작물 생산을 위해 이용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러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즉 작물재배업과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며 나머지는 과세 대상이다. 이는 농업생산 촉진 제고와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2015년부터 채소,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커피 등),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인삼 등), 시설작물재배업(콩나물 등)은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지만 농가부업규모(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닭 1만 5,000마리)로 정의하는 범위 내의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작물재배업과 축산업 또는 축산 관련 서비스업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표 2-15〉 농업분야 사업소득의 비과세 및 과세 항목

농업 분류		과세내용
작물재배업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하 비과세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재배업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재배업	
	기타작물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축산업		농가부업규모 이하 비과세
기타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과세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주: 어업과 임업은 과세하고 있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내부자료.

이 외에도 농가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타 농가부업소득, 전통주 제조소득, 산림소득 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농가부업소득은 연 3,000만 원 이하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전통주제조로 얻어진 소득은 1,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다. 또한 논·밭 임대소득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표 2-16〉 기타 농업분야 비과세 범위

구분	적용 범위
농가부업소득	민박, 음식품 판매, 전통차 제조, 농가부업규모 범위를 초과하는 축산업 등을 합한 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 소득
전통주제조소득	농어촌지역에서 제조한 연 1,200만 원 이하 소득
논·밭의 작물생산 이용으로 발생한 소득	논·밭 임대소득
산림소득	5년 이상 조림된 임지의 임목 벌채 등 연 600만 원 이하 소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내부자료.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하여 2018년까지 세액감면을 실시한다.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으로서 개발촉진지구,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득 발생 후 5년간(5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해부터) 소득세·법인세를 50% 감면해준다(기획재정부 2015: 386).¹⁰

이와 같이 비과세에 해당되는 소득 중 전체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 단계부터 계산되지 않으나, 일정 부분이 비과세 항목인 경우, 종합소득 계산 단계에서 해당되는 사업소득을 포함하고, 비과세소득금액 부분은 제외하여 계산하고 있다.

¹⁰ • 농공단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인구 20만 이상인 시 지역 밖에 소재
 • 개발촉진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
 •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일반산업단지(나주, 김제지평선, 장흥해당, 북평), 국가산업단지(북평) (기획재정부 2015: 386)

2. 농업인의 조세 납부 현황

2.1. 『국세통계연보』상 농림어업인의 조세 납부 현황

세수 측면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농림어업 소득 신고자는 2014년 기준 약 1만 7,400명이며 이는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의 0.4%에 해당되는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총수입은 830조 8,582억 원이며 그 중 0.9%인 7조 3,588억 원이 농림어업 수입으로 신고되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소득금액은 87조 7,084억 원이며 그 중 농림어업은 4,249억 원으로 신고된 전체 사업소득 중 0.5%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7〉 2014년 주요업태별 사업소득 신고 현황

단위: 백 명, 억 원, %

업태	인원	총수입		소득	
		전체	1인당 총수입 (만 원)	전체	1인당 소득 (만 원)
사업소득 전체	45,791 (100.0)	8,308,582 (100.0)	18,145	877,084 (100.0)	1,915
농·임·어업	174 (0.4)	73,588 (0.9)	42,311	4,249 (0.5)	2,443
제조업	2,991 (6.5)	1,386,623 (16.7)	46,362	120,215 (13.7)	4,019
도·소매업	8,854 (19.3)	3,390,098 (40.8)	38,290	180,167 (20.5)	2,035
음식·숙박업	5,376 (11.7)	828,556 (10.0)	15,413	63,492 (7.2)	1,181
기타 서비스업	12,214 (26.7)	508,852 (6.1)	4,166	116,172 (13.2)	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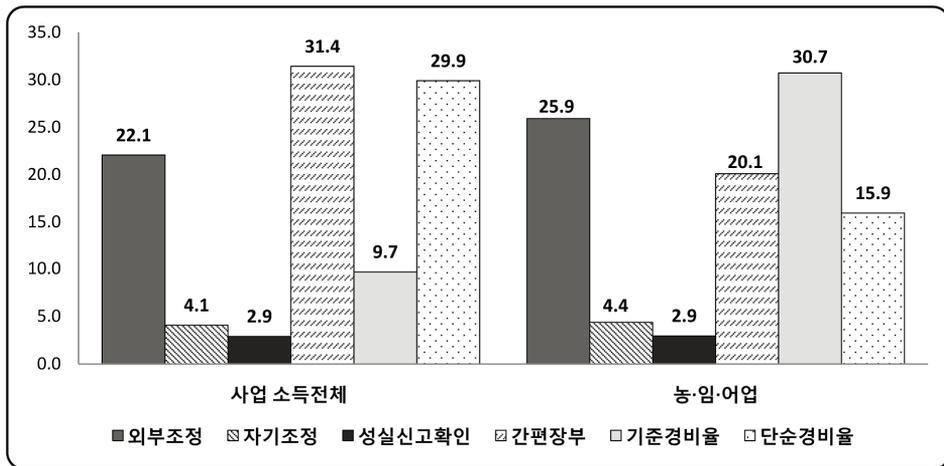
주 1)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작성함.

2) 괄호 안은 사업소득 전체 대비 비중임.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농림어업의 소득신고 내역을 다른 주요 업태와 비교해 보면 신고인원과 총 수입 및 소득은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총수입이나 1인당 소득은 다른 업태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농림어업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한 인원의 1인당 평균 총수입은 4억 2,311만 원으로 도·소매업이나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신고자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림어업 소득신고자의 1인당 신고 소득은 2,443만 원으로 제조업보다는 낮지만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그림 2-3〉 2014년 사업소득 신고유형별 신고인원 비중



주: 성실납세 방식유형 제외.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농림어업 소득신고자의 신고유형을 살펴보면 장부기장보다는 추계결정에 의해 소득신고를 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방식을 합한 추계결정에 의해 소득세 납부를 하는 신고자는 전체 농림어업 소득신고자 중 46.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 중 추계결정 비율이 39.6% 수준이라는 점에서 볼 때 다른 사업소득자에 비해서 농림어업 소득신고자는 추계결정 방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계결정 방식 중에서는 단순경비율보다는 기준경비율 활용 비중이 더 높다.

농림어업 소득신고자가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 소득신고자 중 외부조정 신고자는 25.9%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 중 외부조정신고자 비중인 22.1%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농림어업 소득신고자 중 간편장부 신고자 비중은 20.1%이며 복식부기 활용 비중은 33.1%이다. 전체 사업소득신고자 중 간편장부신고자 비중은 31.4%, 복식부기 신고자 비중은 29.4%로 농림어업 신고자 중 장부신고를 한 사업자들은 전체 사업소득 신고자들에 비해 복식부기 활용도가 높다.

농림어업 소득신고자의 신고 현황을 총수입금액에 따라 나누어보면 농림어업 소득신고자는 1,000만 원 이하의 수입을 가진 저소득 계층과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상위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의 전체 농림어업 소득신고 2만 5,600건 중 7,600건이 1,000만 원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는 전체 소득신고 건수 중 29.9%를 차지한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신고건수는 7,400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중 29.1%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입금액별 건수의 양극화 현상은 농림어업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도별 신고건수와 총수입금액, 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한 반면 동 구간의 총수입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적자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억 원 초과 구간에서의 신고건수와 총수입금액은 최근 5년간 소폭 하락하였는데 소득은 정체되었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림어업 사업자는 경기 변동에 따라 매출이나 수익이 변하였으나 소규모 농림어업 사업자는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표 2-18〉 농림어업 신고자의 총수입 구간별·연도별 소득신고 현황

수입금액	단위: 백 건, 억 원														
	건수					총수입금액					소득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10	'11	'12	'13	'14
전체	235	240	240	229	256	77,299	85,619	73,667	73,152	73,462	2,957	4,371	2,210	2,272	4,052
1천만 원 이하	41	50	68	59	76	96	96	80	63	37	-38	-55	-59	-64	-91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9	8	8	8	8	134	127	119	115	124	9	4	-8	-7	7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7	12	12	12	17	511	375	349	365	527	19	21	22	17	31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15	14	13	13	17	735	689	647	640	845	47	34	33	41	49
6천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13	13	11	11	12	894	887	768	739	865	60	55	49	43	38
8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1	12	10	10	10	997	1,072	876	924	932	70	78	44	50	58
1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37	35	33	32	32	5,394	5,105	4,861	4,611	4,713	273	262	237	217	261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0	49	44	44	42	15,891	15,720	14,326	13,979	13,442	563	613	470	511	687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24	25	23	23	22	17,287	17,438	16,560	16,077	15,895	515	656	441	526	816
10억 원 초과	18	22	18	18	18	35,360	44,111	35,080	35,638	36,081	1,439	2,704	981	936	2,196

주: 건수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장의 개수를 의미하며 신고인원과는 다름.
 자료: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2.2. 농가의 세부담 비교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한 농림어업 사업소득 신고자 현황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을 포함하고 있어 농업인의 납세 현황을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1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을 분석하였다.¹¹ 2014년 「농가경제조사」는 전체 농가 중 2,600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이며, 따라서 아래의 기초통계분석은 표본통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행되었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업경비와 가계지출 각 지출부문별로 농가에서 지출한 조세 및 부담금 등의 지출을 용도별로 분리하여 집계, 제공한다.¹² 농업경비상 조세부담금은 농업생산과 관련된 조세 및 부담금을 의미하며 농업경영으로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세금이 주로 포함된다. 그 중에서도 각 농가가 소유한 농지에 부과되는 토지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계지출상 조세부담금은 순수 가계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농가 가계동향과 관련된 세금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에 대한 세금은 용도에 따라 분배하여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창고 혹은 주택과 같이 농가가 소유한 고정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의 경우 각 고정자산

¹¹ 이 연구의 관심사항인 소득세 부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농가당 지불하는 세금을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농가경제조사」는 조세만 별도로 조사된 자료를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조세와 부담금을 합한 항목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농업경비상 조세 및 부담금은 경상적 조세, 농업용토지세, 소득세, 이장모곡료,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다.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은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순수 가계용으로 지불되는 비경상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과태료 등을 포함한다.

¹²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으로서 농업지출현금, 현물지출 평가액, 대농기구 등 농업용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액, 재고생산자재 증감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자가생산하여 재투입된 중간생산물은 농업경영비에서 제외)

¹³ 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의 소비지출과 조세 및 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주거용건물 감가상각비 등의 비소비지출로 구분

의 이용목적에 따라 사용 비율을 나누고 사용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분할하여 집계한다.

<표 2-19>는 농업경영에 투입된 일체의 비용인 농업경영비의 가구당 평균지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경영비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 재료비는 비료, 농약 등의 구매에 투입된 비용을 말하며 경비는 동력광열비, 임차비, 수선비, 조세 및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경비는 영농광열비, 수선 및 농구비, 임차료, 수리비, 위탁영농비, 조세 및 부담금,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농업부문보험료, 유통비용 및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각 농가는 연평균 약 16만 원을 조세 및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경영비 대비 가구별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조세 및 부담금의 수준은 여타 항목에 비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농가가 가계유지를 위해 지출한 일체의 비용 중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은 농가당 평균 조세·부담금은 약 5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가계지출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9〉 각 부문별 가구당 평균 지출액

단위: 원, %

농업경영비		가계지출	
농업경영비	21,875,470	가계지출	30,554,959
재료비	8,365,104	소비지출	24,465,807
노무비	1,395,852	비소비지출	6,089,152
경비	12,114,514	- 조세 및 부담금	565,328
- 조세 및 부담금	163,105	-	-
가구당 평균 조세 및 부담금 비중	2.1	-	1.4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가의 세부담을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보면, 농가는 도시가구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도시가구의 연간 1인당 조세 납부액은 55만 원 가량인 데 반해 농가의 연간 조세 납부액은

27만 원으로 농가가 납부하는 조세 및 부담금은 도시가구의 절반 수준이었다. 또한 가계소득에서 조세 및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농가는 2.0%에 불과했으나 도시가구는 4.1%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가구,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대비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은 각각 3.1%와 5.5%로 농가보다 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었다.

〈표 2-20〉 농가와 도시가구의 조세 및 부담금 비교

단위: 원/년, %

가구구분	가구원 1인당			가구 전체	
	농업경비상 조세 및 부담금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	조세 및 부담금 합계	연소득	소득 대비 조세 및 부담금 비중
농가	67,055	205,837	272,891	31,840,320	2.0
도시가구	-	545,222	545,222	44,303,688	4.1
근로자가구	-	736,868	736,868	51,608,744	3.1
단순노무 종사자	-	207,631	207,631	28,034,340	1.5
근로자 외 가구	-	273,849	273,849	33,959,642	5.5

주 1)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2) 도시가구는 동지역에 거주하면서 농림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통계청. 2014.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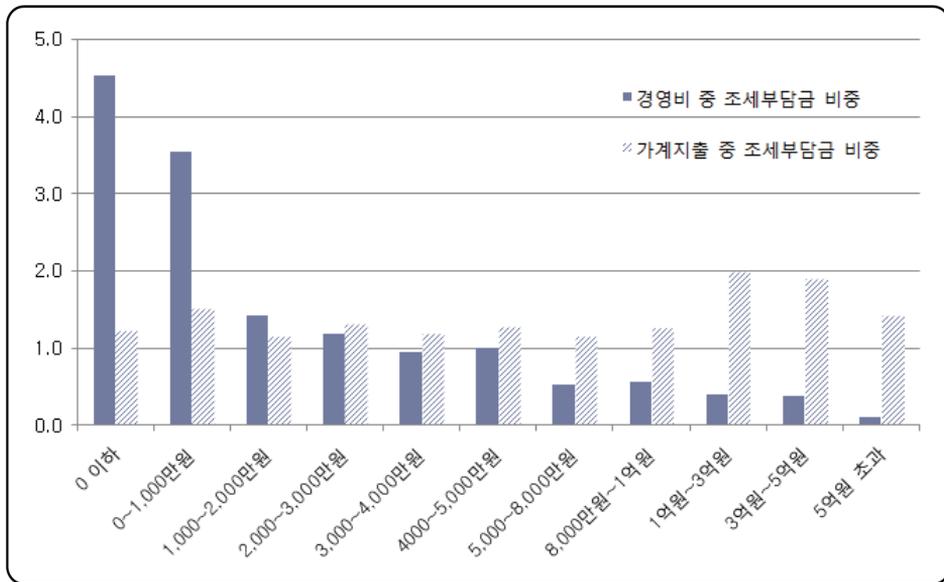
농가의 세부담이 도시가구보다 낮은 이유는 도시가구가 농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조세특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를 비롯한 여러 세목들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누진구조의 특성상 소득 또는 자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도시가구의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높은 것은 세구조의 특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가와 소득수준이 비슷한 근로자 외 가구의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농가보다 높은 것은 단순히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누증뿐만 아니라 농가에 적용되는 다양한 조세특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업계 안에서는 농가의 경영규모에 따라서 조세 및 부담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경영규모와 조세 및 부담금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농업총수입 규모별 평균 조세 및 부담금액 및 비중을 계산한 결과 농업총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비 중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를 기록한 농가의 경우 경영비 중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4.5%를 차지한 반면 농업총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한 농가에서는 조세 및 부담금 0.1%에 불과하였다. 이는 농업경영규모에 따라서 경영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총수입이 커짐에 따라 조세 및 부담금을 제외한 여타 경영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총수입과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 비중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농업총수입을 가진 농가에서는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2-4〉 농업총수입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비중

단위: %



주: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업총수입별 농가 평균 조세 및 부담금 액수를 살펴보면 총수입이 마이너스인 가구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총수입이 증가할수록 조세 및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¹⁴ 1,000만 원 미만의 농가에서는 농업경비로서 부담하는 조세 및 부담금이 1인당 4만 8,174원이지만 농업총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농가의 평균 1인당 조세 및 부담금은 28만 6,160원이다.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도 농업총수입과 어느 정도의 비례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상관관계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이 농업활동과 연계된다기보다는 농업 외 활동이나 재산과 더 많이 관련되기 때문인 것으로 각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활동의 크기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21〉 농업총수입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단위: 원

농업총수입	농업경비상 조세 및 부담금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	합계
0 이하	118,932	176,577	295,509
0~1,000만 원	48,174	237,310	285,485
1,000~2,000만 원	52,854	171,001	223,856
2,000~3,000만 원	75,937	178,680	254,617
3,000~4,000만 원	73,055	174,518	247,573
4,000~5,000만 원	119,501	196,377	315,878
5,000~8,000만 원	86,818	203,660	290,478
8,000만 원~1억 원	139,947	207,909	347,856
1억 원~3억 원	131,881	524,993	656,874
3억 원~5억 원	250,946	373,139	624,085
5억 원 초과	286,160	422,054	708,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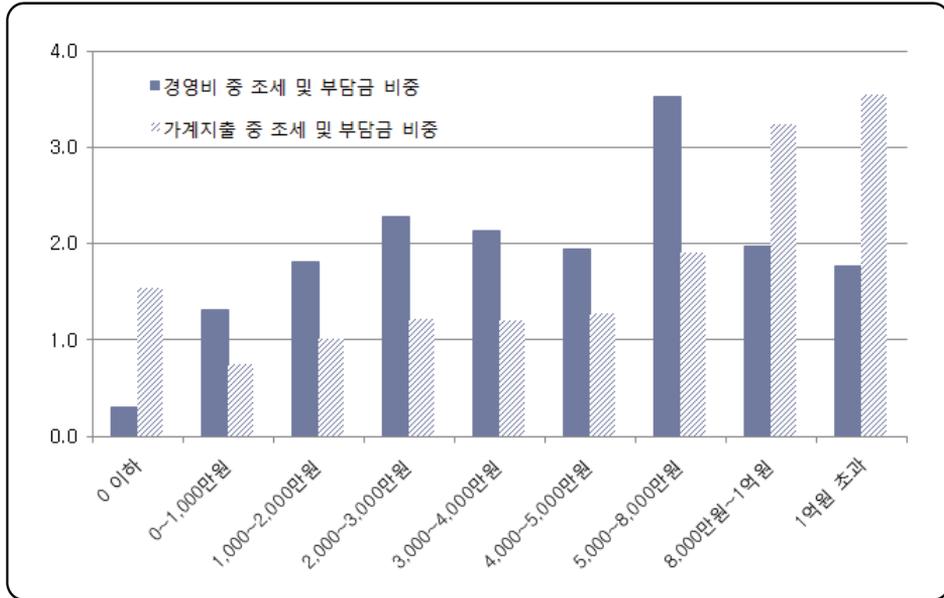
주: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¹⁴ 농업총수입이 0 이하인 가구는 1,000만 원 미만의 가구와 비교해서 가구주의 연령이 비교적 낮고 가구원수가 많으며 농업 외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농가이다. 농업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을 실질적으로 저소득 농가로 분류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 논의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림 2-5〉 농가소득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비중

단위: %



주: 가장 평균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그러나 농가소득별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은 농업총수입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경비상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은 농가소득 5,000~8,000만 원 구간에서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소득구간에서는 2% 내외로 나타나 농가소득의 크기가 조세 및 부담금 비중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 비중은 농가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득세를 포함한 여러 세목들이 초과누진세율 체계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22〉 농가소득별 1인당 조세 및 부담금

단위: 원

농가소득	농업경비상 조세 및 부담금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	합계
0 이하	72,886	592,309	665,196
0~1,000만 원	42,883	70,259	113,142
1,000~2,000만 원	50,045	104,832	154,877
2,000~3,000만 원	77,819	164,021	241,841
3,000~4,000만 원	60,580	156,985	217,566
4,000~5,000만 원	71,003	182,888	253,892
5,000~8,000만 원	86,408	364,938	451,346
8,000만 원~1억 원	83,316	796,668	879,984
1억 원 초과	170,568	854,259	1,024,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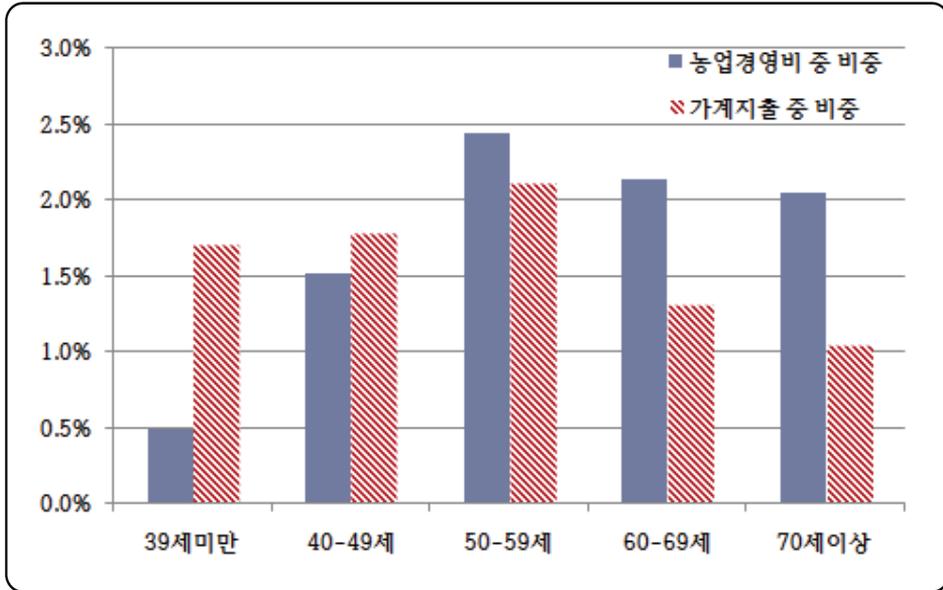
주: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한편 조세 및 부담금이 각각 농업경비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영주의 연령별로 구분하여 보면 조세 및 부담금이 농업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대 이하보다는 50대 이상에서 더 높았으며 특히 50대 사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을 위하여 구입하는 자산의 규모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산 규모가 커지는 만큼 재산세 등 농업용 자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계지출상 조세 및 부담금의 비중은 60대 이상 고령층에 비해 40대 이하의 젊은 계층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감소하면서 조세 및 부담금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6〉 경영주연령별 가구원 1인당 조세·부담금 지출 비중

단위: %



주: 가중 평균하였음.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농가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조세 및 부담금을 종합 평가해 보면, 농가의 세부담은 도시가구보다 낮은 수준이며 농업 경영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세부담도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만약 작물 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영농 규모가 클수록 추가적인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작물재배업 비과세 배경과 여건 변화

1. 농업분야의 소득세 감면 현황

1.1.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감면 배경

작물재배업에 대한 면세는 국세인 소득세 비과세와 지방세였던 농업소득세를 2010년에 폐지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작물재배와 관련된 소득세는 농지세로부터 시작되는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이나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였다(안중석 외 2010; 김태호(재인용) 2000). 농지세는 농지 소유자와 농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농지소득금액에서 기초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대해 3~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었다. 농지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였다. 또한 농지에 대하여는 국세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김기성 1997). 이때 벼와 특수작물 재배로 인한 소득은 지방세인 농지세 과세 대상이었으나 시설작물 재배소득과 작물재배 이외의 농업 소득은 국세인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표 3-1〉 농업 관련 소득세제의 변천

농업소득	2001년 이전	2001~2009년	2010년 이후
벼와 특수작물 재배소득	농지세	농업소득세	농업소득세 폐지
시설작물 재배소득	소득세		
작물재배업 이외 농업소득		소득세	소득세

자료: 안종석 외(2010)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

농지세는 사실상 농지를 이용하여 획득한 소득에 대한 소득과세이지만 명칭이 농지에 대한 재산세의 개념과 혼동될 소지가 있어 정부는 2000년 12월 29일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바꾸고 과세 범위도 확대하였다.

농업소득세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던 시설작물 재배소득도 포함하였으므로 지방세로 과세되는 농업소득은 식량작물을 포함한 전체 작물재배소득이 되었다.^{15,16} 「지방세법」 제214조에 따르면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농지세와 달리 자경농만 포함하였다.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농업소득금액이며 농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기초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이때 기초공제는 연 560만 원이고 소액부징수는 세액 2,000원 미만이었다.

농업소득세는 400만 원 이하의 최저구간이 있으며 저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이상부터는 농업소득세의 세율이 소득세보다 높다. 다만 농업소득세에서는 기초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세에서는 다양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므로 실제 세부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¹⁵ 과세 대상 작물은 벼와 과수, 묘목, 채소 등 모든 특수작물, 수경재배, 시설작물 재배, 버섯재배 및 채취, 움막시설재배, 콩나물재배, 공장식 고정설비시설 재배 등이다(안종석 외 2010).

¹⁶ 「지방세법」에서 정의하는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제197조).

〈표 3-2〉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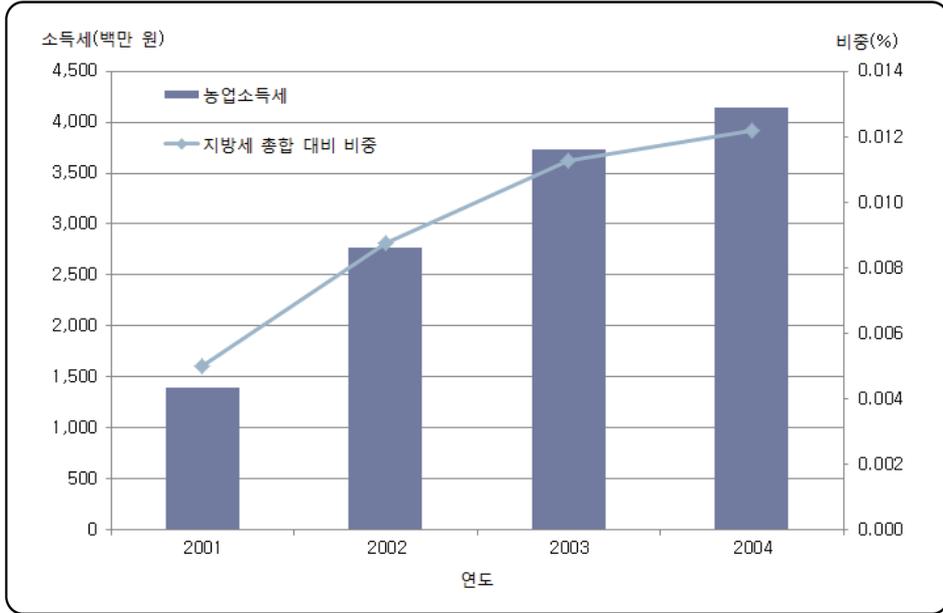
농업소득세(2001~2004년)		소득세(2004년 기준)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400만 원 이하	3%	-	-
400~1,000만 원	12만 원+400만 원 초과금액의 10%	1,000만 원 이하	9%
1,000~4,000만 원	72만 원+1,000만 원 초과금액의 20%	1,000~4,000만 원	90만 원+1,000만 원 초과금액의 18%
4,000~8,000만 원	672만 원+4,000만 원 초과금액의 30%	4,000~8,000만 원	630만 원+4,000만 원 초과금액의 27%
8,000만 원 초과	1,872만 원+8,000만 원 초과금액의 40%	8,000만 원 초과	1,710만 원+8,000만 원 초과금액의 36*%

자료: 박상원. 2011. 『농림어업 소득 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p. 41. 저자 재구성.

농업소득세는 2005년부터 과세 중단되었는데 농업경쟁력 강화가 주요한 이유였다.¹⁷ 과세 중단되었던 농업소득세는 2010년부터 폐지되었으며 당시 논리는 세수에 비해 징수행정비용이 커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것이었다. 수입과 필요경비를 농가별로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세 대상이 되는 작물의 종류가 다양해 각 작물별로 소득과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것이 징수비용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농가가 면제금액 이하의 농가로 분류되고 전체 농가의 1~2%만이 농업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실제로 농업소득세는 잠정 과세 중단되기 직전 총 1만 6,481건에 41.4억 원이 부과되어 41억 원이 징수되었다. 이는 2004년도 지방세 전체에서 0.01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¹⁷ 경제장관담화회의에서 농업소득세를 5년간(2004~2008년 귀속 농업소득) 과세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방세제상의 혜택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대만의 경우도 1986년 이후 잠정적으로 과세 중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행정자치부 2005).

〈그림 3-1〉 농업소득세 세수



자료: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농업소득세 납세인원은 2001년에 8,466명이었으나 2002년에 2만 1,524명으로 급증한 이후 2004년까지 매년 감소하였다. 세액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납세자가 10만 원 이하의 농업소득세를 납세하여 1인당 납세액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3-3〉 농업소득세 세액별 납세인원

단위: 명, %

세액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1만 원 이하	1,370	16.2	4,328	20.1	4,119	21.3	3,247	19.7
5만 원 이하	3,781	44.7	12,085	56.1	10,657	55.2	9,550	57.9
10만 원 이하	1,691	20.0	2,713	12.6	2,539	13.1	1,873	11.4
50만 원 이하	1,243	14.7	1,890	8.8	1,542	8.0	1,355	8.2
100만 원 이하	214	2.5	293	1.4	261	1.4	244	1.5
500만 원 이하	136	1.6	181	0.8	151	0.8	174	1.1
500만 원 초과	31	0.4	34	0.2	41	0.2	38	0.2
합계	8,466	100	21,524	100	19,310	100	16,481	100

자료: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1.2. 작물재배업 농가의 특징

1.2.1. 경영주 연령

통계청에서 수행한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14년 농가 수는 119만 4,855농가이고 그 중 식량작물재배 농가는 60만 3,698농가, 식량작물을 제외한 작물재배 농가는 52만 6,407농가, 축산농가는 6만 4,750농가이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는 축산농가를 제외한 약 113만 농가이며 이는 전체 농가에서 94.6%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의 특징은 고령농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식량작물재배 농가, 일반 재배작물 농가, 축산농가, 어가와 임가의 경영주 연령을 살펴보면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경영주는 대부분 고령층인데 반해 축산농가와 어가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 농가 중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비중은 57.4%로 가장 높았으며 임가가 54.2%, 작물재배농가가 49.0%, 어가가 43.5%, 축산농가는 30.9%로 가장 낮았다.

식량작물의 고령 경영주 비중이 높은 것은 식량작물의 노동 투입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가의 시설물 투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종사하기에 적절한 품목인 데 그 원인이 있다.

〈표 3-4〉 품목별·경영주 연령별 가구 비중

단위: 호, %

경영주 연령	식량작물농가		작물재배농가 (식량작물제외)		축산농가		임가		여가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가구 수	비중
29세 이하	176	0.0	115	0.0	163	0.3	65	0.1	109	0.2
30~39세	3,836	0.6	4,666	0.9	991	1.5	489	0.5	1,053	1.8
40~49세	69,674	11.5	73,589	14.0	13,147	20.3	6,667	7.0	4,652	7.9
50~59세	114,330	18.9	117,386	22.3	20,792	32.1	23,748	24.9	17,908	30.5
60~64세	69,206	11.5	72,823	13.8	9,662	14.9	12,791	13.4	9,517	16.2
65~69세	90,821	15.0	80,364	15.3	8,206	12.7	17,609	18.4	10,361	17.6
70세 이상	255,655	42.3	177,464	33.7	11,789	18.2	34,189	35.8	15,192	25.8
65세 이상	346,476	57.4	257,828	49.0	19,995	30.9	51,798	54.2	25,553	43.5
합계	603,698	100.0	526,407	100.0	64,750	100.0	95,558	100.0	58,792	100.0

자료: 통계청, 2014. 『농림어업조사』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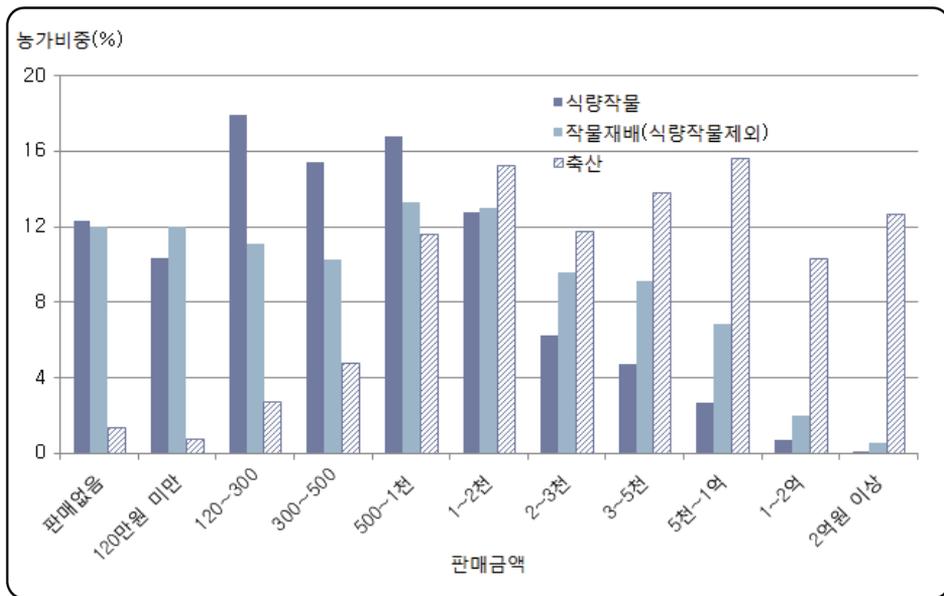
1.2.2. 판매금액 및 전/겸업 비중

논벼를 포함한 식량작물과 식량작물을 제외한 일반 작물재배업, 축산 농가의 판매금액별 비중을 살펴보면 식량작물재배 농가와 여타 작물재배 농가에 비해 축산 농가의 판매금액대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량작물 재배 농가는 120만~300만 원의 판매금액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000만 원 미만의 판매금액을 획득하는 농가가 전체 식량작물 농가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 작물재배 농가는 500만~1,000만 원 구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판매금액 구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반면 축산농가

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이 5,000만~1억 원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1,000만~2,000만 원 구간의 농가 비중도 15.2%로 높다. 축산농가 중 90% 이상이 500만 원 이상의 판매금액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식량작물 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판매금액 3,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작물재배 농가의 90% 이상이 판매금액 5,000만 원 이하의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가 아예 없는 농가의 비중도 식량작물 재배농가와 일반 재배농가 각각 12.3%와 12.0%로 높은 편이지만 축산농가 중 판매금액이 없는 농가는 0.7%에 불과하다.

〈그림 3-2〉 품목별 판매금액별 농가 비중



자료: 통계청, 2014. 『농림어업조사』.

주/부업 여부를 기준으로 품목별 특징을 살펴보면, 식량작물과 작물재배업은 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업농가 비중이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업농가 중에서는 식량작물재배 농가 사이에서 일반농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식량작물재배 농가들의 평균 경지규모가 타 품목에 비해 작고 판매수입도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5〉 품목별 주/부업 비중

단위: %

주/부업	식량작물	작물재배	축산
주업농가	91.7	89.2	94.9
전문농가	31.7	52.9	50.0
일반농가	60.0	36.3	44.9
부업농가	5.4	4.0	0.0
자급농가	2.9	6.8	5.1

- 주 1) 주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이 농업외수입보다 많은 농가
 2) 전문농가: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농가
 3) 일반농가: 주업농가 중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0만 원 미만인 농가
 4)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과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5)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농업총수입 중 현금수입 및 외상판매수입이 200만 원 미만인 농가

자료: 통계청, 2014. 『농가경제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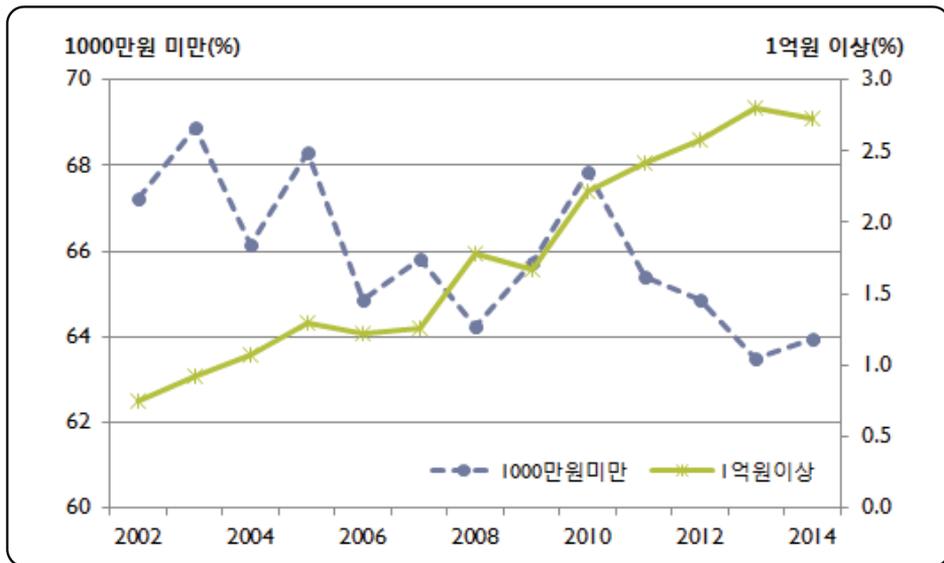
2. 농업 경영 환경의 변화

2.1. 농업경영체 규모화·전문화 진전

규모화와 함께 영세농의 집적이 심화됨에 따라, 소득격차 또한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 3-3>에서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 농가와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소농 중심의 농가구조로 1,000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 두 지표 값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비교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각 지표별 추세를 비교한다. 2000년대 초반부터 2014년도까지 연 판매금액 1,000만 원 미만인 농가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반면, 연 판매금액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로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실질 평균소득은 감소하고 있거나 정체되어 있음에도 농업경영체 중에서도 1억 원 이상의 판매액 규모를 가진 경영체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은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과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정부가 2015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 작물재배업 수입 10억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3〉 판매금액별 농가 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2.2. 고소득 농가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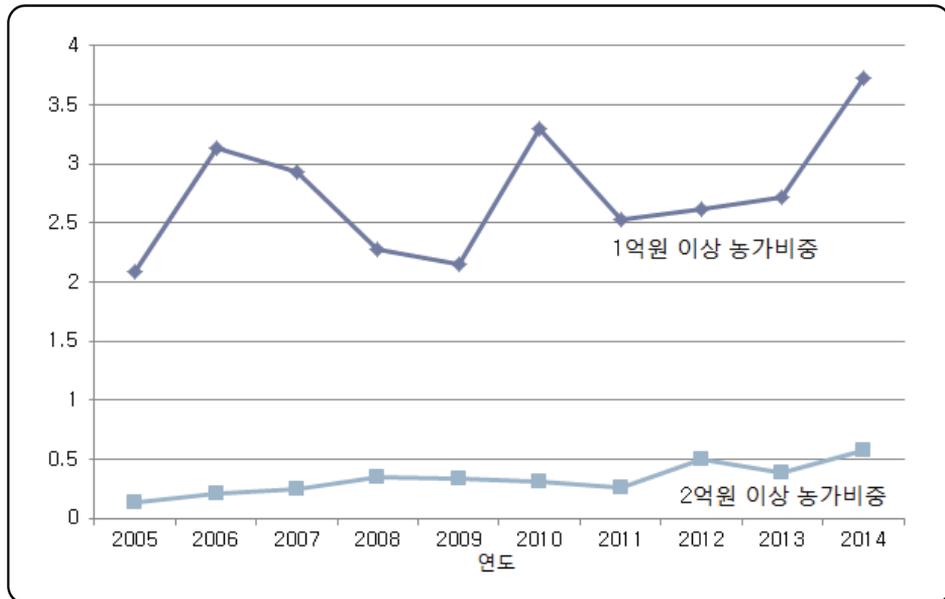
지난 10년간의 농가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고소득 농가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농가소득이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등락을 반복하고는 있으나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중은 2005년 2.1%에서 2014년 3.7%로 증가하여 6.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가소득 2억 원 이상의 농가는 2005년 0.1%에서 2014년 0.6%로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적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3-4〉 고소득 농가 비중 변화

단위: %



주: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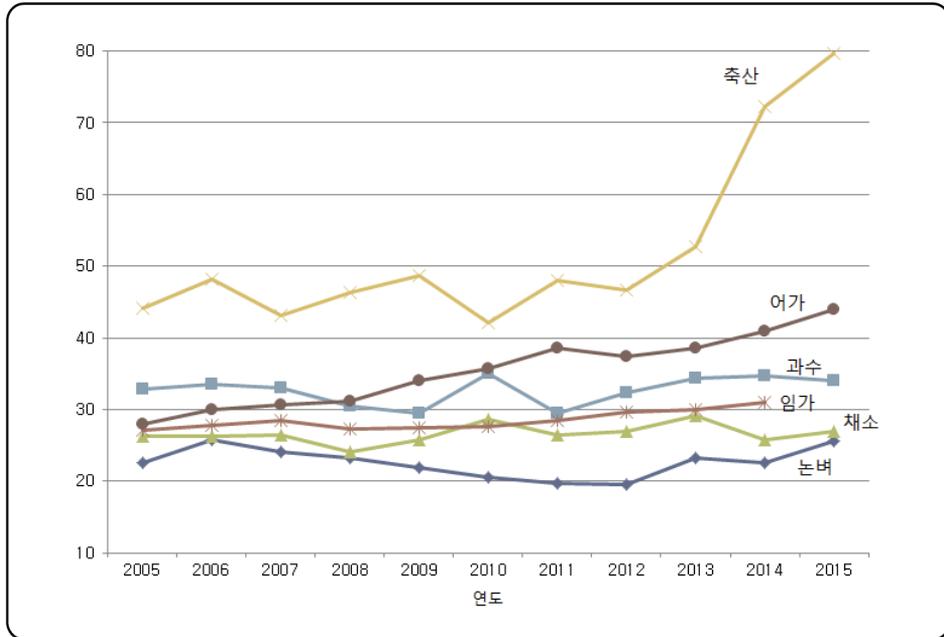
2.3. 과세 농가의 소득 증가

농가소득을 영농형태별로 나누고 임가 및 어가와 비교해 보면, 축산농가의 소득은 2011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어가, 임가 기타 경종작물 생산농

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농가에 이어 어가소득이 여타 농가 및 임가에 비해 소득이 높으며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과수, 채소, 논벼 등 경종작물을 생산하는 농가는 2005년 이후 농가소득이 하락하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논벼 농가의 소득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그나마 2012년부터 소폭 상승하여 2015년에는 2,559만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3-5〉 농림어가의 유형별 소득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품목별 가계소득의 변화 추이는 소득세 부과 여부보다는 각 품목의 시장 상황, 경영비 변동에 따른 인한 수익성 변화가 농가의 소득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세 과세 대상인 축산업, 임업, 어업농가의 소득이 꾸준히 상승한 반면 소득세 과세면제 대상인 작물재배업 농가는 소득에 큰 변화가 없어 소득세 과세 여부가 대상 농가의 소득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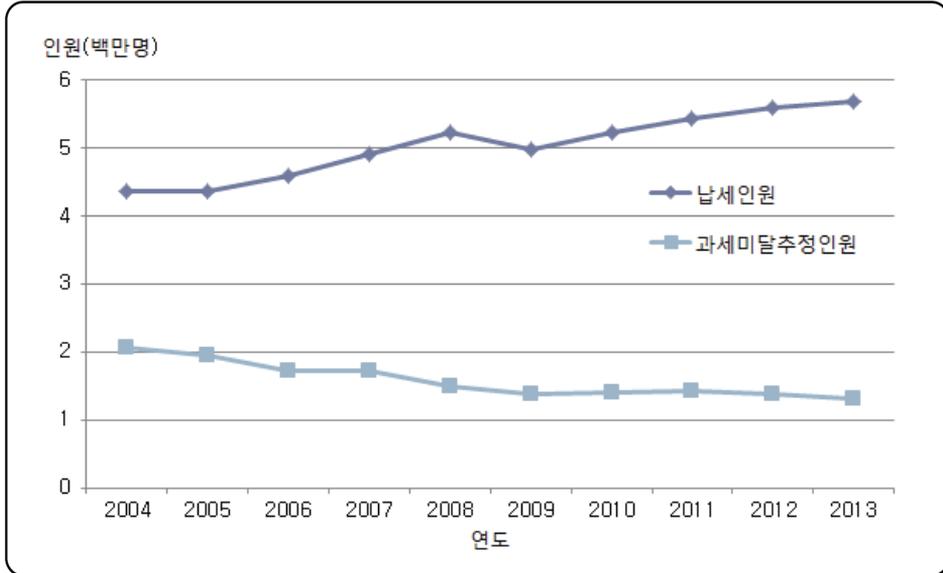
정적인(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세 폐지의 명분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제시되었으나 비과세가 한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2.4. 납세 환경 변화

농업소득세가 폐지될 당시 논리는 세수에 비해 행정비용이 크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간의 납세 행정환경과 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조세행정역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행정비용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의 소득포착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은 2004년 436만 명이었으나 2013년에는 567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과세미달추정인원은 동 기간 207만 명에서 131만 명으로 감소하여 과세미달인원 비중은 47.5%에서 23.1%로 감소하였다. 이는 신용카드 등 공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결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포착률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6〉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및 과세미달추정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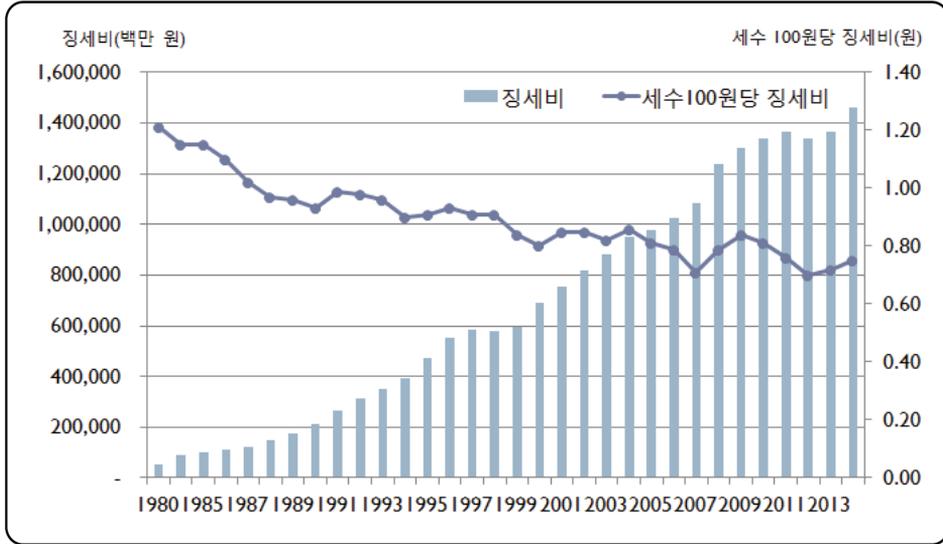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또한 국세청의 총징세비용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에는 세수 100원당 징세비가 0.81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100원당 0.75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3년 기준 일본은 1.74원, 독일 1.35원, 프랑스 1.11원, 호주 0.93원으로 낮은 징세비는 한국의 국세행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세청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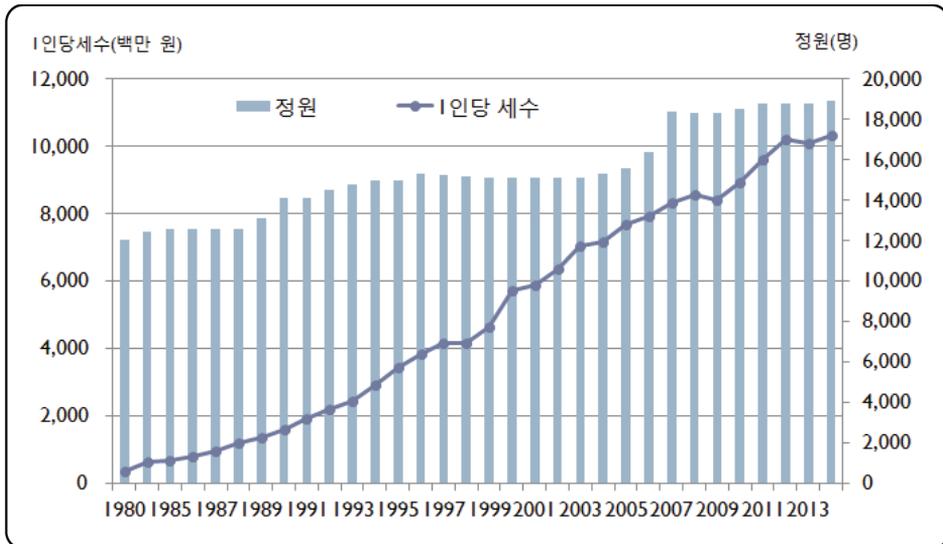
한편 국세청 인력은 1만 5,619명(2005년)에서 1만 8,917명(2014년)으로 21.1%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1인당 세수는 77억 1,000만 원(2005년)에서 103억 4,700만 원(2014년)으로 34.2% 증가하였다. 인력 증가율보다 1인당 세수 증가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행정의 효율화가 빠르게 진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7〉 국세 징세비 현황



자료: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그림 3-8〉 1인당 세수 현황



자료: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의 인력이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지방세의 경우 징수인력이 감소하였다.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던 2006년 전국의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는 1만 1,485명이었으며 도지역만 합산하면 7,206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 말 현재 전국은 1만 869명, 도지역은 6,496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인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징수능력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 1인당 지방세 세수는 2006년 35억 9,500만 원에서 2014년 56억 7,90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 지방세 세수가 2006년부터 2014년 사이에 5.2% 증가하는 동안 지방세 담당공무원 1인당 지방세 세수는 5.9% 증가하여 지방세 행정의 효율화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3-6〉 지방세 세무행정 현황

연도	지방세 담당공무원 수(명)		지방세 세수 (백만원)	담당공무원 1인당 지방세 세수(백만원)
	전국	도지역		
2006	11,485	7,206	41,293,702	3,595
2007	11,594	7,308	43,524,289	3,754
2008	11,474	7,165	45,479,732	3,964
2009	11,441	7,166	45,167,790	3,948
2010	11,068	6,880	49,159,805	4,442
2011	10,874	6,663	52,300,144	4,810
2012	10,784	6,615	53,938,064	5,002
2013	10,741	6,528	53,778,881	5,007
2014	10,869	6,496	61,726,013	5,679
연평균 증가율	-	-	5.2	5.9

자료: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국세청과 지자체의 징수효율화라는 일반적인 환경 변화 외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농업계의 영농 관련 정보수집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점은 납세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맞춤형 농정의 추진을 계기로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등록자격은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 이상 또는 농지나 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로 이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등록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 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가축·곤충 등의 사육정보를 포함한다. 특히 품목별 판매량, 판매액, 농가 추정소득 등 농가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등록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임차농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또는 실경작 증빙자료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과세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농업소득에 대한 징수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과거 농업소득세가 부과되던 2005년 이전 기간 동안에는 농가의 경영 관련 정보 수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경영정보가 수집·관리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과약을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농업소득세의 경우 수입금액, 소득금액 및 기타 농업소득세 부과와 관련한 사항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고 납세 의무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 및 질의를 하였다. 이는 현행 소득세와 비교해보면 추가적인 징세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의 추산을 위해서는 각 시·군이 수확량, 거래시가 등을 실제 조사하거나 농지 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설정해야 했는데 이 또한 농업소득세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농가가 매출현황이나 경영규모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일이 드물었는데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농가가 스스로 경영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게 되면서 과세당국이 소득과약을 위한 별도의 행정비용을 지불할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3. 여건 변화의 시사점

현재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이루어진 명목상의 이유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조세의 효율화이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업분야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오히려 과세 대상인 축산업 종사자의 소득은 증가하는데 반해 비과세 대상인 농가의 소득은 상승폭이 소폭에 그치거나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어 소득세 비과세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소득세 징수비용에 비해 세수가 낮아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논리는 현 시점에서 성립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조세행정의 효율화,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조세 징수 및 납부비용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징수 환경의 변화는 소득세 비과세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에 더욱 무게를 실어준다.

그리고 최근 농업인 전문화되고 고소득 농가가 출현하고 있는 현상은 농업분야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비농업계에서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세가 과세 중단된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작물재배 농가의 상당수가 고령농가인 점, 매출 규모가 작은 소규모 농가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가가 전체 농가에서 94.6%에 이르는 만큼 소득세 비과세 지속 여부는 농업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작물재배업이라는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대만 등 개발도상국에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농업소득도 종합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안중석 외 2010; 안창남 2009). 이 장에서는 농업소득에 대해서 오랫동안 소득세 부과를 했던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서 농업소득 관련 소득세제 변화가 어떻게 농업인들에게 받아들여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¹⁸

1.1. 프랑스 농업분야에 대한 소득세 도입과정 및 배경

프랑스에는 1900년대까지 지금과 같은 체계화된 소득세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1914년에 처음으로 프랑스 「소득세제」(impôt sur le revenu)를 창설하였으며 1917년 법률¹⁹을 제정하여 납세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을

¹⁸ 해당 절은 강남대학교 안창남 교수에게 위탁한 원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¹⁹ La loi du 16 juillet 1915(1915년 7월 16일의 법)와 la loi du 31 juillet 1917(1917년 7월 31일의 법)

신고하는 형태로 소득세제를 형성하였다. 그 이후 프랑스 세제는 소득세제와 같은 직접세뿐만 아니라 1954년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 분야도 같이 발전시켜왔다.

프랑스 농업세제 분야는 ‘농업 부가가치세’, ‘농업소득세’ 그리고 ‘임대 또는 판매에 의한 이전 및 양도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재산세와 지역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과세와 완전히 구별되는 ‘농업과 포도재배 관련 세제’가 종합적으로 편성된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이다. 농업세제는 일반세제와 구별된 프랑스만의 세제로서 단계별로 창설되었다. 그 첫 번째 단계로는 1968년 ‘농업 부가가치세’ 창설이라 할 수 있겠고, 1971년 ‘실제농업소득세’가 농업세제 구성의 그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프랑스 농업세제 구성 두 번째 단계인 1971년 ‘실제농업소득세’ 편성 이후 농업소득 내의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1990년대 법 이외에는 2016년 개정 이전 지금까지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다만 과세와 관련한 각종 농업 혜택 및 지원의 경우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1. 프랑스 농업세제의 첫 단계: ‘농업 부가가치세’의 창설

프랑스 농업세제의 시발점은 바로 ‘농업 부가가치세’의 창설로 볼 수 있다. 이 당시 프랑스 농업활동의 경제 규모는 가족 단위지만 생산과정에서 산업 농기구 또는 기계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농업도 다른 경제 분야와 생산 방식이 점점 비슷해진다고 인식되었다. 정부는 농업생산과 상품화 구조가 점차 산업경제로 변화되어간다고 판단하여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프랑스는 농업의 일반법체제화를 시도하였다.²¹ 그러한 시도의 첫 걸

²⁰ Cahuzac, J. Marre, B. 2000. “Rapport des députés sur les adaptations à apporter à la fiscalité et au monde de calcul des cotisations sociales agricoles.” p. 239(과세에 대한 적용과 농업사회보장기여금의 계산방법에 대한 보고서)

²¹ Chatanay, J. N. Cotton, G. Nallet, H. 1970. “La fiscalité et l’agriculture(과세와 농업).” *Économie rurale(농촌경제)*. 86: 69-78

음이 196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농업 부가가치세’²²이다.

부가가치세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대기업 한정되었으며 이후 소매상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1966년에 부가가치세가 개편되어 소매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면서 농업분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약 180만 명에 이르는 농산물 생산자에게는 농업 소득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잡한 것으로 여겨졌었고 행정당국이나 대부분의 관련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농산물 생산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여겨졌다. 또한 세제도입에 대한 저항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1966년 1월 6일 「부가가치세법」개편 시 농산물 생산자 중 상업 및 상업 생산방식(대량생산 방식 농업대기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을 채택한 일부 농산물 생산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농산물 생산자의 경우 스스로 선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등 결국 농업분야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8년 법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적용되던 부가가치세가 농업 전체 분야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일반 경제활동에 적용되는 세제를 그대로 농업 부가가치에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의 적용 분야를 농업활동 분야에도 넓힌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 배경에는 농업분야를 여전히 일반 경제활동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분야로 인식했던 당시 상황이 있었다. 그 결과 당시 부가가치세 세율은 대기업의 경우 17.6%, 철강 시멘트 사업은 20%, 고급상품이나 사진기, 특별차량의 경우 33.3%, 소매상의 경우 8.5%인데 비해 농업 부가가치세는 2.4%에서 4% 내외에 불과하여 타 분야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²³

또한 행정당국 각 부처 또는 시에서는 농업 부가가치세 도입에 대한 저

²² La loi du 6 janvier 1966 appliquant la TVA au secteur agricole(1966년 1월 6일의 법. 농업부문에 TVA를 적용)

²³ Chatanay, J, N. Cotton, G. Nallet, H. 1970. “La fiscalité et l’agriculture.” *Économie rurale*. No.86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함.

항을 줄이기 위해서 농가마다 부가가치세 교육과 도입 배경을 이해시키는 등 1966년 이후 1968년 도입될 때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 속에서 별 무리 없이 각 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 결과 농업 부가가치세 과세를 받는 농산물 생산자의 수는 1968년 6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1969년에는 13만 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나머지 55만 5,000명의 농산물 생산자는 정액환불을 선택하였다. 1969년에 농산물 생산자들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억 8,500프랑을 정액환급 받았다. 이처럼 새롭게 창설된 농업 부가가치세에 농산물 생산자들은 빠르게 적응하였다.²⁴

1.1.2. 프랑스 농업세제의 두 번째 단계: 농업실제소득세 창설

농산물 생산자들이 부가가치세에 잘 적응함으로써 프랑스 정부는 농업세제 현대화의 두 번째 단계인 실제농업소득과세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71년 「재정법」과 1971년 「재정법 적용을 위한 시행령」, 1972년 「재정법」에 의거해 2년 연속 50만 프랑 이상의 매상이 있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실제소득과세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원래 농업소득세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가 생겨난 것은 아니므로 농업소득세에 대해 농산물 생산자들이 특별히 조세저항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프랑스 국회에서는 1971년 법을 제정할 당시 추계과세하던 형태에 비해 실제 소득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는 형태가 농산물 생산자의 생산을 촉진하는지 아니면 생산을 위축시키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축산과 같이 토지가 없는 농업형태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추계과세형태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실제소득기준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으며 또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²⁴ 위와 동일.

이에 1971년부터는 농업소득을 실제소득기준으로 ‘실제소득과세’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소득과세’는 농업소득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에만 실제소득과세를 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소득일 경우도 자치단체에서 정한 추계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2005년 1월 1일 이전에는 ‘과도기세제’라는 세제가 존재하였다. 이 세제는 농업소득을 발생시킨 납세자가 자신의 농업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제도가 추계과세에서 실제소득과세로 변경되거나 실제소득과세에서 추계과세로 변경되는 과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세금제도였으나 2005년 이후에 폐지되었다.

〈표 4-1〉 프랑스 농업분야 소득세제 변화

연도	관련 법	주요 변경사항
1948년 이전	1914년 「소득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일부로 편입 • 1926년 「농업소득세 시행령」¹⁾에 근거하여 농업소득 산출 • 토지의 임대가치기준(토지세×계수) 과세소득 결정
1948년	1948년 분할누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법인세 신설 • 소득 카테고리에 따라 과세하는 분할누진과세 적용 • 경지규모와 농업활동에 의해 과세소득 결정 • 1948년 시행령에 의해 농업소득의 결정기준 변경 및 농업활동별 특징을 고려한 카테고리 조정
1959년	1959년 단일종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소득 유형과 함께 과세하는 단일종합소득세 적용 • 실제소득기반과세 혹은 정액과세 중 선택 가능
1968년	1968년 농업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부가가치세 신설
1971년	1971년 「재정법」 실제농업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연속 50만 프랑 이상의 매출의 경우 실제소득과세 의무적용 • 그 이하의 경우 정액과세 적용

(계속)

연도	관련 법	주요 변경사항
2016년	2015년 「재정법」 소규모 농업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부터 실시된 프랑스 농업소득 정액 과세 완전폐지 → 소규모 농업소득세제 신설 • 매출이 8만 2,200유로 이하(세금제외)일 경우 소규모 농업소득세제 적용 가능 • 농업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매출액²⁾에 비용 명목으로 87%를 공제하여 산출 (305유로가 최소 공제 금액) • 단, 비농업소득의 경우 각 소득 카테고리에 맞는 공제처리 후 각 카테고리별 소득 계산

주 1) 1926년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근거.

2) 3년마다 재평가.

1.2. 소득세 과세 대상 및 세율

프랑스의 소득세는 부동산임대소득, 산업 및 상업소득, 이사의 보수, 농업소득, 근로 및 연금소득, 비상업소득, 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한다.

프랑스는 가족단위로 과세하는 독특한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같은 과세가구 단위 내의 가족구성원(배우자, 시민연대계약(PACS)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된 파트너, 자녀 또는 책임부양하에 있는 다른 구성원)에 의해 발생한 소득도 같이 합산한다(안창남 2009: 72).²⁵ 그리고 납세자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이 발생시킨 소득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발생하여 본인 할당 분으로 계산된 소득도 이에 포함시킨다. 가족구성원의 과세 대상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가족 수로 나눈 뒤, 이에 상응하는 세율을 곱하여 가족구성원별 세액을 산출한다. 이를 다시 가족 수로 곱하여 가족

²⁵ 단, 배우자와 분리 과세를 혼인한 그 해에 신청한 경우는 같은 과세가정 단위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의 전체 소득세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과세구간은 <표 4-2>와 같다.

<표 4-2> 프랑스 소득세율(2016년 기준)

과세되는 소득금액	세율
9,700유로 이하	0%
9,701유로 초과 26,791유로 이하	14%
26,792유로 초과 71,826유로 이하	30%
71,827유로 초과 152,108유로 이하	41%
152,108유로 초과	45%

자료: La direction de Budget(예산처). 2016. *Évaluations de Voies et moyens*(방법과 수단의 평가). p. 19.

1.3. 농업소득 과세제도 현황

1.3.1. 농업소득의 정의(les bénéficiaires agricoles: BA)

프랑스 「조세일반법」 제 63조에 따르면 농업소득세가 적용되는 농업소득이란 농장, 소작인, 반소작인 또는 농작 지주가 스스로 농촌상품 경작 또는 개발로 벌어들인 소득을 말한다. 동 법은 각종 농업소득 분야를 나열하고 있다. 산림, 버섯, 양봉, 사육, 어업양식, 굴양식, 조개양식, 각종 새로운 종의 식물 채취 또는 경작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공연을 위한 마(馬)류의 훈련 및 준비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건조 또는 젖은 동 식물류의 판매소득, 개 조련 국가자격증을 갖춘 조련사의 개 경주 및 썰매활동과 같은 운송이나 스포츠 활동 또는 그에 대한 교육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유럽공동체 「공동농업정책」(la Politique agricole commune: PAC)에 근거한 유일지불 체제에 근거하여 지불의 권리에 의해 발생한 소득을 농업소득으로 한다.

그러나 농산물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농산품이 아니라 농산품을 구매하

였다가 그 상태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가공하여 파는 경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농업소득 아니라 일반 ‘상업 및 산업소득’으로 취급된다. 그리고 교환이나 상속을 통해 획득한 농산품을 판매해서 얻은 소득도 농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그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서비스(자신의 농업활동이 아니라 타인의 농업 관련 일을 행하여 주는 것), 농지관광산업 등도 농업소득이 아닌 일반 ‘상업 및 산업소득’으로 분류된다.

13.2. 농업소득의 과세 방법

가. 과세방식의 선택

프랑스에서는 농업수입금액 및 비용을 현금주의에 입각해 과세한다. 농업소득은 추계과세, 간편과세, 정상과제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농업소득의 과세 카테고리 분류는 농업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는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표 4-3〉 농업소득 금액으로 분리된 과세 카테고리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 소득	과세제도
7만 6,300유로 이하	추계과세
7만 6,300~35만 유로까지	간편과세
35만 유로 초과	정상과세

추계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로, 이전 두 해 사업연도 농업소득 평균이 7만 6,3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농산물 생산자가 영농 시작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매출금액과 상관없이 추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농산물 생산자는 이전에 실제소득과세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단, 「조세일반법」 제69조항 B에 근거하여 소득이 이전 두 해 사업연도 평균 4만 6,000유로 이하일 때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세 번째로, 농업활동 이외에 농업 이외의 타 경제소득으로 분류되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소득과세의 적용범주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을 발생시킨 납세자는 추계과세를 사용할 수 없으나 추계과세의 적용범주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을 발생시킨 납세자는 실제소득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처리할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나 과세표준계산 시에 반영해야 할 적자가 있는 납세자의 경우 실제소득과세를 택하는 경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추계과세 적용범주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을 발생시켰더라도 실질기준과세를 택하기도 한다. 또한 드물기는 하지만 간편과세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을 발생시킨 납세자도 정상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추계과세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 중 약 5.2%, 약 2만 명의 농업 생산자가 자신의 소득이 추계과세의 범주에 속함에도 실제소득과세 제도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과세 종류에 따라 과세율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 또한 세 가지 과세세제 모두 과세표준을 결정할 시 소득세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은 과세가구의 총소득을 포함시키는 등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지만, 각 과세방식마다 적용되는 특이사항들이 있으므로 납세자는 자신의 농업소득이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하여 그에 해당하는 특별사항들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여기에 과세가정의 소득공제를 한 이후 소득세의 누진계산법에 근거하여 과세금액이 정해지게 된다.

추계과세와 실질소득과세를 적용을 받는 실제 농산물 생산자의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 농업소득과세제도별 납세자 수(법적 형태 기준으로 분류)

단위: 명

납세자 분류	추계과세	간편과세	정상과세
기타 생산자 ¹⁾	12,033	3,057	1,941
개인 생산자	344,623	96,883	31,134
유한책임농업회사 (EARL) ²⁾	749	47,818	35,131
공동농업활동집단 (GAEC) ³⁾	6,726	18,657	12,042
인적회사	1,224	12,240	13,228
합계	365,355	178,655	93,476

주 1) 기타 생산자 중에는 시나 마을 공동생산의 경우도 있음.

2) Exploitation Agricole à Responsabilité limitée(EARL)

3) 공동농업활동집단(le Groupement agricole d'exploitation en commun: GAEC) 가족규모의 농업활동을 벌이는 특별인적회사

자료: Assemblée Nationale(국회). 2015. 「Rapport d'information par la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en conclusion des travaux d'une mission d'information sur la fiscalité agricole」. p.17 (일반 경제 및 예산 안 제와 농업세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관련 금융위원회 정보 보고서)

나. 추계과세방식 운영 현황

농업소득의 추계과세는 「조세일반법」 제6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업소득 정액은 농업인대표와 과세당국 대표를 포함한 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소득 추계과세를 하는 데 필요한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과정은 공동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도 또는 지역회의에서 평균계산표와 농업활동 각각의 고유 성격과 경작 재배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액소득의 각종 계산요소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정은 개인단계인데 각 농산물 생산자 자신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일이다.

정액농업소득은 각 농업 활동을 각각의 카테고리 또는 각각의 고유 성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한 해에 발생한 농산물 가치에서 당해 연

도에 발생한 각종 비용을 감해서 정한다. 정액농업소득 결정 방법은 실제 농업활동을 기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정해진 농업활동유형에 따라 각 농업활동 카테고리 별로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산을 기준으로 과세당국은 농업활동별 각각의 평균소득을 정한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에 의해 가축이나 수확물에 대한 손실이 있을 경우 결정된 소득이 적게 책정될 수 있다.

추계과세를 받는 농업활동의 과세소득은 경작범위에 모든 관련 요소 또는 헥타르당 평균소득금액을 곱하여 정한다. 또한 단일평균정액소득 계산표는 원칙적으로 헥타르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요소라 함은 꿀벌통의 수, 판매한 동물의 수, 수확한 와인의 헥토리터(100리터) 등의 요소를 말한다.

과세당국은 평균 부동산수입기대가치²⁶를 기준으로 재배되는 경작물을 각각 다른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그 이후에 개인별 정액을 정하게 된다. 개인별 정액을 결정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유일정액소득을 경작유효범위, 생산요소의 숫자, 생산량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에 적용한다.

프랑스 농업부에서 발표한 ‘농업복지표준’을 기준으로 추계과세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의 경제활동량을 대략적으로 수치화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약 7억 8,100만 유로 정도가 추계과세 과세표준이 된다.

²⁶ 프랑스는 나폴레옹 시대에 부동산의 주인을 구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수입기대가치(le revenu cadastral)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부동산을 임대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1975년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부동산수입기대가치를 측정하는 이유는 본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농업분야의 경우 농업소득을 측정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실제로 발생한 소득이라기보다는 부동산임대 시에 기대되는 가치를 계산해 본 것이므로 부동산수입기대가치로 번역하였다.

다. 실제소득과세 운영 현황

실제소득과세는 간편과세와 정상과세로 나뉘는데, 두 방식은 재고평가 기준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그러나 간소화 세제의 경우 회계의무규정과 신고의무규정이 정상과세보다 완화되어 있다.

실제소득과세의 적용을 받는 전체 농업소득의 과세표준은 2013년 기준 1,163만 유로 이상으로 추산된다.

〈표 4-5〉 2013년 과세방식별 적용 대상 농업소득 과세표준

간편과세방식	4,715,353유로
정상과세방식	6,923,277유로
합계	11,638,630유로

라. 농업인을 위한 조세특례

농업분야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73 B조에 의한 ‘청년 농업인 대상 소득공제 (l’Abattement sur les bénéfiques des jeunes agriculteurs)’이다. 청년 농업인 대상 소득공제란 「농업법」 제D.343-9조부터 D.343-16조에 근거하여 청년 농산물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이나 특별대출을 받은 청년 농산물 생산자만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이다.

두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72 D조, 제72 D bis조, 제72 D ter 조항에 근거한 ‘불확실성 또는 투자에 대한 공제(Déductions pour investissement et pour aléas)’이다. 투자에 의한 공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전이 느린 재고나 농업협동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불확실성에 의한 공제는 불확실성을 미리 예견하여 공제금액의 50%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산물 생산자가 매년 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자신의 소득 한계 안에서 각각 최고 2만 7,000유로이다.

세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75-0 B조항의 ‘3년 평균과세(l’imposition sur

une moyenne triennale)’가 있다. 이 과세의 특징은 이전 두 해의 평균과 과세연도의 소득 평균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농산물 생산자는 3년 평균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5년간 유효하고 선택에 대한 취소나 철회가 없을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갱신된다.

네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75-0 A조항에 근거한 ‘특별소득분할(Etalement du revenu exceptionnel)’이다. 생산자는 2만 5,000유로가 넘는 소득 또는 이전 3년 사업연도의 결과의 평균의 1.5배를 사업연도 7년에 분할할 수 있다. 이 세제는 보건위생의 이유로 가축을 도살해야 할 경우 받는 보상금을 분할하는 데도 쓰인다.

다섯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156-1조항에 근거한 손실이월과 ‘충당’을 말한다. 전체 순소득이 10만 7,075유로를 초과할 경우 농업활동에서 오는 손실은 과세가구의 소득에서 충당이 불가하다. 그러나 6년의 사업연도 동안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²⁷을 둔 이유는 납세자들이 고의적으로 장기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는 농업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여 무리한 방식의 과도하게 세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여섯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74조항에 근거한 ‘간소화 세제 내에서 회전 이 낮은 재고에 대한 감면(Décote sur les stocks à rotation lente dans le régime simplifié)’이다. 재고는 원칙적으로 일반 상업 및 산업소득 분야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매출원가에 같이 계산된다. 다만, 완성된 상품의 원가는 판매 시 발생 가능한 소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감면하여 정액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여덟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200조항에 근거한 ‘휴가대체비용을 위한 조세공제(Crédit d'impôt en faveur des dépenses de remplacement pour congés)’이다. 휴가대체비용을 위한 조세공제는 2006년 법²⁸으로 만들어졌으며 2013년 「재정법」에 의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하였다.

²⁷ 이 규정은 유명한 배우의 이름을 따와 “Gabin” 수정안으로 불린다.

²⁸ la loi n° 2006-11 du 5 janvier 2006 d'orientation agricole(2006년 1월 5일 농업 지침 법률 n° 2006-11)

일 년 내내 매일 활동을 요하는 농업활동을 자신의 주된 경제활동으로 하고 있는 농산물 생산자는 휴가대체비용을 위한 조세공제를 할 수 있다. 휴가기간은 14일을 최대로 하고 있으며 개인지출의 절반에 해당하도록 한다. 하루 비용으로는 보장된 최소 시간 비율의 42배가 최대가 된다.

아홉 번째는 「조세일반법」 제 244 quarter 조항에 근거한 ‘무공해 농업 조세공제’이다. 농업회사의 수입 중 무공해 방식으로 생산한 것이 40%가 넘을 시에 2,500유로의 조세공제가 주어진다. 이러한 조세공제로 인한 국가의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2,000만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 과세행정

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서식 n° 2042를 작성하여 3월 1일 이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요구된다. 추계과세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서식 n° 2342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간편과세를 적용받는 농업소득 신고자는 서식 n° 2139에 신고서를 작성하고 정상과세를 적용받는 농업소득 신고자는 서식 n° 2134에 신고서를 작성한다. 납세자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지연 또는 무신고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13.3. 2016년 개정 농업소득과세

농업소득과세 제도는 2015년 「재정법」에 의해 2016년부터 변경되었는데 감가상각제도, 공제제도 완화 등의 내용과 함께 추계과세에 대한 내용이 2016년부터 대폭 변경되었다.²⁹ 1949년부터 현재까지 65년 이상 실시되

²⁹ Art. 25, loi n° 2015-1785 du 29 décembre 2015, JO du 30 ; Art. 31, 33, 41 et 79 loi n° 2015-1786 du 29 décembre 2015, JO du 30 (2015년 12월 29일, 관보 게시 30일, 법률 제25조 n° 2015-1785; 제31,33,41,79조 n° 2015-1786)

어온 헥타르당 생산량과 생산품목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과세하던 프랑스 농업소득 추계과세가 2016년부터 폐지되고, “소규모 농업소득(micro-BA)”제도가 신설되었다.³⁰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는 세금을 제외한 농업생산자의 매출이 8만 2,200유로 이하일 경우 적용 가능하다. 또한 기준 대상금액은 3년을 평균으로 계산하며 3년마다 재평가한다.

농업 생산자의 과세소득은 3년 평균 발생한 매출액에 비용의 명목으로 87%를 공제하여 산출하게 되며 이러한 공제는 305유로 이하로 책정할 수 없다(305유로가 최소 공제 금액).

또한 매출에는 경작활동에 관련된 재산 양도의 차익과 손실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차익과 손실은 실제소득과세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고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전 추계과세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규모 농업소득과세의 적용을 받는 농산물 생산자는 자신의 농업소득을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으로 간주하여 공제한다.

농산물 생산자의 수익 계산 시 경작활동 중 평년 중에 현금화된 금액에 경작 후 거둬들인 상품의 가치를 더하고 임금노동자나 땅 주인에게 지급한 것을 빼서 계산하면 된다. 여기에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 지원금을 받은 것, 상부상조의 목적으로 계약된 비용이 환급된 것, 시설 기기 보조금, 지적재산과 관련 로열티나 사용료를 현금화한 것은 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시에 농산물 생산자의 소득과 관련된 모든 증빙 서류와 영수증뿐 아니라 농업생산활동의 일지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일지는 복식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간단한 출고 내역을 적은 서류이다. 그러나 증빙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세무행정이 요구할 시에만 제출하게 되는데 실지로 세무조사가 아니면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서면문화가 잘 정립되어 있어 증빙서류 및 영수증 등 중요 서류의 보관이 일상화되어 있다.

³⁰ 소규모 농업소득과세가 실시되기는 하나 그 시행이 즉각적인 것은 아니다.

추계과세제도와 신설된 소규모 농업소득 세제 간의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농업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농촌관광업, 숙박업, 공연을 위한 동물 교육 등)에 대한 처리에 있다. 추계과세 시에는 이러한 부속 또는 종속적 경제활동이 비상업 소득이나 상업 및 산업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같은 추계과세 카테고리 내에서 농업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나 신설된 소규모 농업소득 세제 적용 시에는 각 소득의 카테고리에 맞는 공제 처리를 한 뒤에 카테고리별로 소득이 계산된다.

추계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같은 점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농업법인의 경우 GAEC 이 외에는 이러한 세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농업소득 과세는 추계과세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농업소득과세이다. 소규모 농업소득공제로 인하여 헥타르당 가치와 농업 카테고리에 기반한 도 위원회의 정액 책정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관련된 국가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국가지출뿐 아니라 개인비용까지 전체 700만 유로의 추계과세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전의 농업소득 추계과세 시 7만 6,300유로 이하의 농업소득에만 추계과세를 실시할 수 있었는데 소규모 농업소득 과세에서는 기준 금액이 8만 2,200유로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 결과 추계과세 적용을 받던 약 10만 명의 농산물 생산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농산물 생산자가 새로운 소규모 농업소득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추계과세에 부담되던 국가비용이 줄어든 것도 있고 복잡한 절차가 줄어들어 더 많은 농가에 이러한 방식의 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된 때문이다. 또한 농산물 생산자들도 실제로 이전 추계과세 시의 계산 방법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실제로 도 위원회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알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으므로 최근 도입한 소규모 농업소득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신설된 소규모 소득과세제도 하에서는 회계의 의무가 발생한다. 추계과세하에서는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등의 의무가 전혀 없었으나 신설 소규모 소득과세하에서는 회계사를 고용할 의무는 없더라도 간소화된 회

계 장부에 기입은 의무화되고 있다. 그러나 회계 장부 기입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다. 따라서 5개의 프랑스 농업노동조합(les syndicats agricoles: FNSEA, JA, confédération paysanne, Modef, Coordination rurale)도 각 농업분야별로 특이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구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규모 농업소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였다.

〈표 4-6〉 정액소득과세와 소규모 소득과세의 비교

구분	소규모 소득과세	추계과세
주요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수익 계산 후 정해진 비율(87%)을 기준으로 비용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수익(bénéfices)계산이 필요 없음. 정액제 사용
세제적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을 제외한 소득평균이 3년 동안 8만 2,200유로 이하 *GAEC의 경우 8만 2,200유로 이하 소득×조합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평균이 세금을 포함한 7만 6,300유로 이하여야 함 *GAEC의 경우 7만 6,300유로 이하×조합원 수 수익활동의 전체가 다 추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시에만 적용 가능
농업소득(BA)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소득(les recettes)의 13%가 농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액(le forfait)에 헥타르당 단위를 곱한 것이 농업소득
세제적용 신청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활동 개시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활동 개시 초반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현금화한 소득에 비교했을 때 과세 금액이 낮음. EARL 공동 사업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공인 회계사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없음(그러나 회계장부는 기입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의 의무 자체가 없음. 실제 현금화한 소득에 비교했을 때 유리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소화된 회계장부 기록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 소득이 많을 경우 불리 (소득 7만 유로 이상인 경우 사회분담금 500~600 유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실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유한책임회사 운영 시는 적용 불가 소득금액이 아주 적을 경우 불리함.

자료: 프랑스 노동조합(FNSEA) (<http://www.fnsea.fr>: 2016. 4. 13.); 프랑스 농업회의소(<http://www.chambres-agriculture.fr>: 2016. 4. 13.)를 참조하여 저자가 재구성.

2. 일본³¹

2.1. 소득세 과세 대상 및 세율

일본의 소득세는 1887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부터 농업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었다. 일본은 과세 대상 소득을 원천에 따라 총 10개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등 8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고 있다. 퇴직소득과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한다. 사업소득은 농업, 어업, 제조업, 유통업, 기타 정부가 정한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³²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 소득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세율은 <표 4-7>과 같다.

〈표 4-7〉 일본의 소득세율(2015년 기준)

과세되는 소득금액(a)	세율(b)	공제액(c)
195만 엔 이하	5%	0엔
330만 엔 이하	10%	97,500엔
695만 엔 이하	20%	427,500엔
900만 엔 이하	23%	636,000엔
1,800만 엔 이하	33%	1,536,000엔
4,000만 엔 이하	40%	2,796,000엔
4,000만 엔 초과	45%	4,796,000엔

주: 소득세액 = 과세되는 소득금액(a) × 세율(b) - 공제액(c)

자료: 일본 국세청(<http://www.nta.go.jp/taxanswer/shotoku/2260.htm>: 2016. 8. 1.)

³¹ 해당 절의 내용은 안종석 외(2010)를 바탕으로 보완하였음.

³² 「소득세법」 제27조.

2.2.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현황

2.2.1. 납세 인원 및 금액 규모

농업소득을 소득세 대상으로 소득신고를 한 인원은 2012년에 35만 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2014년에는 약 2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업소득 신고자와 농가 수를 비교해보면 판매농가가 146만 호, 전체 농가가 253만 호로 농가 중 농업소득을 신고하는 농가의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농가가 논밭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판매를 하지 않는 농가가 판매농가로 인식되기 때문이며 판매를 하는 경우에도 매출이 매우 낮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가 상당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³³

같은 기간 농업소득 외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008년에 17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가 2010년에 146만 명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67만 명에 이르렀다.

농업소득 신고자의 평균 신고소득금액은 약 200만 엔이었다. 같은 기간 농업 외 사업소득 신고자의 인원은 약 167만 명이며 총신고금액은 5조 9,866억 엔,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약 357만 엔이었다. 농업 외의 사업소득자와 비교해 볼 때 농업소득 신고인원은 많지만 소득규모가 적어 1인당 신고금액은 타 산업보다 낮아 농업소득자의 평균소득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³³ 저소득, 자가소비 농가 등 농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은 농가들의 소득미신고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미신고는 세무 조사를 거쳐 가산금 등을 추정할 수 있으나 세무당국이 개별 농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소득미신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해 묵인해주고 있다(농림수산성 담당자 니시무라 하지메(西村 基)인터뷰 2016. 5. 25.).

〈표 4-8〉 일본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 엔

연도	사업소득 전체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1인당신고금액(엔)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1인당신고금액(엔)	신고인원	신고 소득 금액	1인당신고금액(엔)
2008	2,069,839	6,445,261	3,129,012	346,759	526,246	1,517,613	1,713,080	5,919,016	3,455,189
2009	1,827,271	5,699,597	3,119,185	309,606	497,181	1,605,851	1,517,665	5,202,416	3,427,908
2010	1,746,548	5,608,755	3,211,337	282,986	525,046	1,855,378	1,463,562	5,083,709	3,473,518
2011	1,877,885	5,927,617	3,156,539	327,436	590,223	1,802,560	1,550,449	5,337,394	3,442,483
2012	1,945,769	6,221,123	3,197,257	352,625	673,580	1,910,188	1,593,144	5,547,543	3,482,135
2013	1,947,913	6,333,527	3,251,442	313,945	599,660	1,910,080	1,633,968	5,733,867	3,509,167
2014	1,923,056	6,469,570	3,364,213	249,819	500,815	2,004,711	1,673,237	5,968,755	3,567,190

주: 사업소득 신고자의 소득 중 가장 큰 비중이 해당되는 사업에 따라 주종사업자(主たるもの)와 보조종사업자(従たるもの)로 구분하는데 이 표에서는 주종사업자와 보조종사업자를 모두 합쳐서 신고인원을 계산하였음.

자료: 일본 국세청, 2015. 『국세청통계연보』.

농업인의 소득신고 현황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30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신고한 농업인이 전체 신고농업인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90%의 신고 농업인이 800만 엔 이하의 소득을 신고하였다. 1,000만 엔 이상의 고소득 신고자는 전체 신고 농업인의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일본의 소득금액별 농업 소득신고 인원 및 비중(2014)

단위: 명, %

소득 금액 구간	전체		소득구간별 전체신고인원 비중	신고인원 누적비중
	신고 인원	주업		
70만 엔 이하	4,788	3,717	1.91	1.91
70만 엔 초과 100만 엔 이하	10,642	7,720	4.24	6.15
100만 엔 초과 150만 엔 이하	28,003	16,259	11.15	17.30
150만 엔 초과 200만 엔 이하	32,383	16,794	12.90	30.20
200만 엔 초과 250만 엔 이하	29,619	15,347	11.80	41.99
250만 엔 초과 300만 엔 이하	24,738	13,695	9.85	51.84
300만 엔 초과 400만 엔 이하	37,379	20,771	14.89	66.73
400만 엔 초과 500만 엔 이하	25,276	13,681	10.07	76.80
500만 엔 초과 600만 엔 이하	17,866	9,034	7.12	83.91
600만 엔 초과 700만 엔 이하	11,778	5,899	4.69	88.60
700만 엔 초과 800만 엔 이하	7,508	3,927	2.99	91.60
800만 엔 초과 1,000만 엔 이하	8,308	4,426	3.31	94.90
1,000만 엔 초과 1,200만 엔 이하	4,256	2,183	1.70	96.60
1,200만 엔 초과 1,500만 엔 이하	3,124	1,452	1.24	97.84
1,500만 엔 초과 2,000만 엔 이하	2,390	817	0.95	98.80
2,000만 엔 초과 3,000만 엔 이하	1,584	319	0.63	99.43
3,000만 엔 초과 5,000만 엔 이하	868	73	0.35	99.77
5,000만 엔 초과	573	24	0.23	100
전체	251,083	136,138	100	100

주 1) 신고납세금액이 있는 자의 인원 및 신고소득임.

2) 비중은 전체 신고인원 대비 소득금액구간별 주업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국세청. 2015. 『국세청통계연보』.

2.2.2.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절차

가. 농업소득 계산 방식

농업소득은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제하여 계산된다. 총수입금액은 농산물 판매금액에 가사 및 사업소비금액과 잡수입을 더하고 농산물의 기말재고를 더한 뒤 기초재고를 제한 것이다. 판매금액과 가사 및 사업소비금액의 산정은 농산물의 경우 수확시점에, 축산물의 경우 판매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농산물은 쌀, 보리 및 기타 곡물과 담배, 야채, 화훼, 종묘, 과수, 시설원예작물을 의미한다. 가사소비는 자가 소비를 하거나 친척에게 증여한 것을 말하며, 사업소비는 생산을 위해 투입된 것을 말한다. 잡수입은 농산물 판매수입 외에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수입으로서 농작물공제대금의 수취금, 출하장려금, 부산물 판매수입, 전작(轉作)장려금,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농업노임, 농기구, 차량 비품 등의 매각대금 등이 포함된다.

필요경비는 고용인 인건비, 소작료 및 임차료, 감가상각비, 대손금, 이자할인액,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 감가상각비는 농업용 건물, 농기구, 농업용 차량 등 농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이며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이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된다. 대손금은 외상매출금 등을 말하며 이자할인액은 농업 관련 차입금 이자로서 원금 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타 경비는 농업 관련 조세, 종묘비, 종축비, 비료비, 사료비, 농구비, 농약위생비, 자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농업공제부금, 의류비, 포장운송수수료, 토지 개량비, 잡비 등이다. 이외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조세특별조치법』 제24조 2).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인정농업인’이 2007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사이의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반강화를 위한 적립금을 지출한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³⁴ 두 번째 과세특례는 농업경

영기반강화준비금을 적립한 개인이 농업경영기반강화계획에 따라 농지나 농업용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지출에 대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조세특별조치법』 제24조 3). 세 번째는 육우의 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조세특별조치법』 제25조). 농민이 적절한 방법으로 육우를 판매했을 때 매각 대상인 육우가 면세 대상 사육수이고 매각한 육우 사육두수의 합계가 1,500마리 이내일 때에는 당해 연도 판매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업전종자(專從者)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때 어떤 방식에 따라 소득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백색신고자와 청색신고자로 나뉘며 각각 백색신고자와 청색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내역이 다르다.³⁵ 백색신고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사업전종자공제액을 제한 부분이 농업소득으로 계산된다. 청색신고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청색사업전종자공제액,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을 모두 공제한 금액이 농업소득이 된다.

³⁴ “인정농업인제도”는 『농업경영기반강화 촉진법』(1993)에 따라 의욕 있는 농업인이 스스로의 경영을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경영개선계획(5년 후의 경영목표)을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인정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 확대 지원, 세제상의 혜택, 융자 등 금융상 혜택, 연금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참고 토가네시(東金市)홈페이지 행정정보 DB <http://www.city.togane.chiba.jp>: 2015. 6. 3.)

³⁵ 청색신고는 기장에 의한 납세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특별공제 및 소득계산상의 특전을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청색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농업인들이 주된 소득신고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그림 4-1〉 일본의 농업소득 계산산식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 25.

사업전종자(專從者)는 신고자와 생계를 전적으로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면서 당해 과세연도 연말 기준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고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친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인과 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백색사업전종자공제액은 배우자의 경우 86만 엔, 배우자를 제외한 전종자는 1인당 50만 엔이 되며, 공제 적용 전의 사업소득액에서 전종자에 1을 더한 수로 나눈 것이 더 큰 경우 이를 적용한다. 일본 정부는 청색신고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청색신고자에게는 신고서에 작성된 청색사업전종자의 급여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는 청색신고자에 대해 청색신고특별공제를 부여하고 있는데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은 65만 엔 또는 10만 엔이며 65만 엔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해당 신고가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과 관련될 것, 둘째,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복

식부기 방식으로 기장될 것, 셋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신고서에 첨부하고 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재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것 등이다. 현금주의를 바탕으로 기장을 한 사람은 65만 엔의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을 받을 수 없으며 부동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합이 65만 엔보다 낮을 때에는 총소득의 합이 상한선으로 적용된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신고자는 10만 엔의 청색신고특별공제액을 적용받게 된다.

2.2.3. 농업소득의 소득세 납세 방식

소득세 납세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의 보관 및 장부 기장, 제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농가는 은행 정산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수입액과 관련하여 보관이 필요한 각종 서류는 일본농협(Japanese Agricultural Cooperatives: JA)으로부터 수취한 정산서 및 영수증, 농산물 수입 명세서 등이며 계좌이체를 한 사람은 명세서와 기장한 예금 통장을 보관하여야 한다.³⁶ 또한 농산물의 가내 소비 및 친척에 대한 증여도 수입으로 취급하는데 이때는 생산자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한다. 경비를 위한 증빙 서류는 비료, 농약, 종묘, 철사, 비닐, 작업복, 농기구, 유류 등을 구입할 때 받은 영수증과 명세서와 재산세 통지서 및 농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영수증, 토지개량 비용, 수리비용, 쌀 관련 기부금, 작업 위탁료 등의 명세서이다.

농가는 증빙서류의 보관과 함께 수입과 지출을 장부에 기장하여야 한다. 이때 시판 노트를 이용하여 기장을 할 수 있으며 농가의 편의를 위해 각 지자체 또는 국세청은 농가가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수지거래일람표를 역

³⁶ 일본 고령자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수전농(水田農)으로 일본 농협중앙회(이하 JA)와 주로 거래하고 있다. JA를 통한 거래액은 JA에서 명세서 등을 발급하여 증명서류로써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벼농사의 기자재는 장기사용이 많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 농업인은 JA의 판매금액과 거래내역만 가지고 거래내역서를 소득신고서에 직접 옮겨 적는 방식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JA에서는 신고 대행이나 세무 신고 관련 교육을 하지는 않는다.

셀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기장은 수입과 경비 부분을 나누어 수확량, 항목별 수입 및 지출 날짜와 금액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친척 등에 대한 증여를 포함한 가사소비에 대해서는 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농산물 재고 또한 생산자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된다.³⁷

마지막으로, 소득신고 시에는 과목별로 1년 간의 수지명세서를 작성하고 농업소득이 산출되면 농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다. 소득세의 납부와 환급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서 B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시·부민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³⁷ 농가에서는 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이때 간이와 복식 부기 장부 두 개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간이 부기작성의 비중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우 간단한 수준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비 영수증을 기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세금법」상 3만 엔 이상의 경우는 건당 매출액을 기본적으로 기입해야 한다.

〈표 4-10〉 일본의 농업소득 계산 순서

단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주요 내용	수입과 필요경비 서류를 보관	보관 서류의 내용을 장부에 기장	기장을 바탕으로 수지명세서 작성 및 신고서와 함께 제출
(1) 수입 금액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JA의 쌀대금 임시 계산서 및 정산서, 영수증 등 농산물 관련 수입금의 명세 등 계좌 이체 명세서와 기장한 예금 통장 등 	(3) 가사 소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시, 생산자 판매가격(출하 가격)으로 계산 	(5) 기장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지명세서(농업 소득용)에 기시 농업소득 산출 완료
(2) 필요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사에 필요한 물건 구입의 영수증 및 명세서 시에서 발행하는 재산세 통지서 및 농업용 차량의 자동차세 영수증 토지의 개량·수리 비용, 쌀 관련 기부금, 소작료, 작업위탁료 등의 명세서 및 영수증 	(4) 재고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 시,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계상 -기초: 지난해 재고, -기말: 다음해 이월 분 	(6) 수지 내역서 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소득 및 기타 소득 합산 후 소득세 계산 소득세 납부 및 환급 발생 : 확정신고서 B에 세무서용 수지명세서(농업소득) 첨부 및 제출 소득세 미발생 : 시·부민세 신고서에 수지명세서(농업소득) 첨부 및 제출

주 1) 가사소비와 친척 등에 증여한 농산물도 수입하므로, 생산자 판매가격으로 금액 산출
 2) 수도·전기세 등 가사와 공유하여 사용한 것은 사용 비율로 안분하여 사용량 산출
 3) 전년 농업 소득 표준으로 신고한 경우 기초는 "0"이 됨.

자료: 일본 교토부 난탄시(南丹市) 홈페이지 생활안내 DB(<http://www.city.nantan.kyoto.jp>: 2016. 5. 20.).

현재 일본 농업인은 기장을 바탕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하여 1990년대 이전까지는 표준에 의한 과세를 실시하다가 1990년 이후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와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병행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표준에 의한 과세는 세무당국이 매년 조사를 통해 경지와 가축의 단위당 표준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납세자 개인의 경작면적과

사육두수에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신고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회계장부를 이용해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연간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하는 방식이다. 기준경비율은 4개 업종(논농업, 밭농업, 과수, 시설작물)별로 청색신고자의 과거 3년 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수지계산에 의한 소득신고는 신고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근거를 둔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일본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수입과 필요경비를 모두 추계하는 방식에서 필요경비만 추계하는 방식, 추계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해왔다고 할 수 있다.

〈표 4-11〉 수지계산 이행 스케줄

각 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총수입금액						
4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상 400만 엔 이하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		
200만 엔 이상 300만 엔 이하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					
200만 엔 미만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 35.

최종 단계인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는 수입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간 총수입이 400만 엔 이상인 신고자는 2002년부터 수지 계산을 하였으며 총수입규모가 작을수록 수지계산에 의한 신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늦추어 2006년도부터는 모든 농업인이 수지계산에 의해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다.

2.3. 소득신고 자료의 활용

일본에서는 농업수입보험 가입자가 소득이 감소하여 보상을 신청했을 때 근거 자료로서 청색신고자료를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피해면적에 해당 지역의 평균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받고 있지만 2017년부터 청색신고자료를 활용하게 되면 각 농가는 실제 소득에 근거해서 소득 감소분만큼 피해 보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40대 이하의 신규 취농자들이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한 취농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규 취농농가는 최대 150만 엔의 취농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각 농가의 직불금은 전년도 소득과 연계되어 결정된다. 이때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년도 소득은 청색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증빙을 하게 된다.

3. 미국³⁸

3.1. 소득세 과세 대상 범위

미국은 농업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연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과세구간과 세율은 납세자의 가족구성, 혼인 여부, 부부합산신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구간과 세율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2013년부터 과세구간이 추가되면서 총 7단계의 누진세율로 되어있다.

³⁸ 안중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38-61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표 4-12〉 미국의 연방소득세 세율 및 과세구간

단위: %, 달러

세율	독신자	부부합산	부부별도	가장
10%	0 - 9,225	0 - 18,450	0 - 9,225	0 - 13,150
15%	9,226 - 37,450	18,451 - 74,900	9,226 - 37,450	13,151 - 50,200
25%	37,451 - 90,750	74,901 - 151,200	37,451 - 75,600	50,201 - 129,600
28%	90,751 - 189,300	151,201 - 230,450	75,601 - 115,225	129,601 - 209,850
33%	189,301 - 411,500	230,451 - 411,500	115,226 - 205,750	209,851 - 411,500
35%	411,501 - 413,200	411,501 - 464,850	205,751 - 232,425	411,501 - 439,000
39.6%	413,201 이상	464,851 이상	232,426 이상	439,001 이상

주: 2016년 현재 기준

자료: IRS. 2015.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개인소득세액공제). p. 262.

농업소득은 개인소득신고서인 Form 1040의 Schedule F를 이용하여 신고한다. Schedule F에 신고해야 하는 농업소득은 농장주나 농지임차인이 이윤을 목적으로 농장을 경작·운영·관리하여 취득한 금액들이다. 예를 들면 가축, 낙농, 어류, 과일 등의 농장 운영으로부터 취득한 소득 등이 해당되며, 농작물 생산 작업으로 취득한 현물 소작료, 장식용 식물재배에 특화된 묘목장 운영으로 얻은 소득들도 포함된다. 다만, 농장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자본이득 또는 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3.2.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미국은 실제 수입과 비용에 근거하여 농업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납세자는 영농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거두어 보관하고, 장부에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법률로써 특정 증빙자료의 보관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명시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종류에 상관없이 취사선택하여 보관하면 된다. 통상적으로 증빙자료는 신고기한에서 3년 또는 세금납부일로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까지 보관해야 하고, 고용세 및 사업용 자산관련 자료는 장기간 보존해야 한다.

3.2.1. 농업소득의 계산

농업소득 과세시점은 납세자가 이용하는 회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납세자는 현금주의(cash method), 발생주의(accrual method), 작물법(crop method), 혼합주의(hybrid method) 회계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번 회계방식을 정하면 국세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변경할 수 있다.

현금주의는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닌 현금을 실제로 수령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비용 또한 실제적으로 현금이 지출된 때 공제하는 방식이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출납과 상관없이 장부상으로 소득 또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과세연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작물법은 농작물을 판매해 소득을 실현한 과세연도에 농작물의 총생산원가를 비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서 국세청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혼합주의는 서로 다른 회계방식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소득과 비용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자들은 특별한 제약 없이 현금주의 방식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정 농업법인과의 동업, tax shelter(탈세를 위한 위장)인 경우 그리고 특정사업자는 현금주의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발생주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농가는 발생주의 방식에 비해 장부기장이 용이한 현금주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표 4-13〉 미국의 주요 소득 회계방식

구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대상	영농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있어 총수입이 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법인(가족 회사 제외) ○ 1985년 이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있어 총수입이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족회사 ○ 파트너로서 법인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 ○ tax shelter
소득의 귀속시기	소득이 발생한 때가 아닌 소득을 실제 수령하는 때 총소득에 포함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총소득에 포함
손금(損金)의 귀속시기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한(pay) 과세연도에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 다만 선급비용이나 자본화가 요구되는 특정한 경비는 지급연도에 공제가 불가능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성과가 발생했을 때 비용으로 공제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39-42 재정리.

미국의 농업소득금액은 당해의 농업소득에서 농업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과세시점이 달라 총소득 계산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는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가축 및 기타 항목의 실제 판매금액에서 이들의 구입 원가 또는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출한다. 이 금액에 직접 기른 가축 및 농작물 등의 판매가액, 협동조합 배당액, 보조금 등을 합한 것이 총소득이 된다. 반면 발생주의의 경우 농업소득을 획득한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하기 때문에 농작물, 가축, 곡물, 기타 제품의 판매금액에 협동조합 배당, 보조금, 작물보험금, 위탁영농소득 등을 더한 총농업소득을 계산한다.

〈표 4-14〉 미국의 농업손익 계산산식

농업소득	
현금주의의 수입항목	발생주의의 수입항목
1. 농업인이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가축 및 기타 항목의 판매금액	1. 가축, 농작물, 곡물, 기타 제품의 판매금액
2. 1에 기재한 가축 및 기타 항목의 원가 또는 장부가액	2. 협동조합 배당
3. 1에서 2를 차감한 금액	3. 농가소득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
4. 농업인이 기른 가축, 농작물, 곡물, 기타 상품의 판매 가액	4. 상품신용공사 용자
5. 협동조합 배당	5. 작물보험금
6. 농가소득지원제도에 따른 보조금	6. 위탁영농소득
7. 상품신용공사 용자	7. 휘발유세 및 유류세 공제(환급)를 포함한 기타 소득
8. 작물보험금 및 연방작물재해직불금	8. 가축, 농작물, 곡물 및 기타 제품의 원가
9. 위탁영농소득	a. 가축, 농작물, 곡물 및 기타 제품의 기초채고
10. 휘발유세 및 유류세 공제(환급)를 포함한 기타 소득	b. 가축, 농작물, 곡물 및 기타 제품의 당기 매입
11. 총소득(3부터 10까지의 합계)	c. 가축, 농작물, 곡물 및 기타 제품의 기말 채고
	9. 총소득(1부터 8까지의 합계)
II. 농업경비(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동일)	
1. 자동차 및 트럭 경비	13. 고용인 인건비
2. 농약	14. 연금 및 이익분배제도
3. 농지보전비용	15. 임차료(자동차, 기계장치, 토지 가축 등)
4. 위탁영농	16. 수선비
5. 감가상각 및 즉시상각의제금액	17. 종묘비
6. 종업원 복지 프로그램	18. 보관료 및 창고료
7. 사료	19. 자재비
8. 비료 및 석회	20. 조세공과
9. 운송료	21. 수도광열비
10. 유류비	22. 수의사, 종축, 약품구입비용
11. 보험료(건강보험 제외)	23. 기타 경비(구체적인 항목 명기)
12. 이자비용(모기지, 기타)	24. 총경비(1부터 23까지 합계)

자료: 미국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irs.gov>: 2016. 6. 9.);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 42 인용.

반면 농업경비는 두 방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모든 항목에 차이가 없어 이들의 합을 계산하면 된다.

3.2.2. 농업소득의 수입 및 농업경비³⁹⁾

수입금액에는 농산품 판매금액과 임대료(현물 소작료 포함), 기타 원천의 소득, 농가소득지원에 따른 소득, 배당금 등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소득, 채무면제이익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표 4-15〉 미국의 농업소득의 주요 수입

단위: 명, %

수입항목	내용
농산품 판매금액	○ 판매 목적으로 농장에서 길렀거나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가축, 농작물, 곡물 또는 기타의 제품을 판매한 경우 농업인이 취득한 판매총액을 Schedule F에 기재 - 대리인을 통한 농산품 판매수입은 대리인이 공급대가를 수령하는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 - 기상 여건으로 통상적 판매보다 많은 수량의 가축을 판매·교환한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
임대료(현물 소작료 포함)	○ 농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얻은 임대료는 농업소득이 아닌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나, 임대인이 해당 토지에서 행해지는 농업활동에 중대하게 참여하였다면 임대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과세 ○ 현물 소작료의 경우 현물을 금전으로 환가한 과세연도의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나 임대인이 농장의 운영에 중 대 하게 참여하고 받은 현물 소작료는 자가고용소득(self-employment income)에 해당하여, 임대소득이 아니라 농업소득으로 과세
농가소득지원에 따른 소득	○ 지급형태(금전, 농자재, 용역, 상품권 등)를 불문하고 농지보전사업, 직불금, 가격보전직불금과 같은 대부분의 농가소득지원금은 소득에 포함해 과세 - 농무부는 농가소득지원제도에 따라 각 농가에 지급한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
협동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득	○ 협동조합을 통해 농자재를 구매한 경우, 농민은 조합원 배당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 ○ 협동조합을 통해 농산품을 판매한 경우, 농민은 조합원 배당 또는 단위당 유보증서 형태로 소득을 얻음 - 조합원 배당은 통상 수령한 과세연도 소득으로 신고
채무면제이익	○ 일반적으로 증여 이외의 사유로 채무가 면제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소득에 포함해 과세 ○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를 면제 - 파산 또는 지급불능으로 인한 채무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채무, 부동산사업채무, 주택 채무 - 중서부 재해로 인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특정한 채무
기타 원천의 소득	○ 직업을 하고 받은 농작물이나 기타 재산, 용역의 공정시장가치 ○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시가와 차액 ○ 위탁영농이나 자산 또는 기계장치의 사용 대가로 받은 보수 ○ 콘테이너, 전차회 박람회 등에서 가축이나 농작물에 대해 수상한 상금 ○ 지역권 및 통행권의 제공으로 얻은 소득 ○ 연료세(fuel tax) 공제 또는 환급 ○ 감가상각환수금액 ○ 토양 및 기타 자연토착물의 판매 등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43-49 재정리.

³⁹⁾ 대부분 농가가 현금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주의 방식 기준 농업소득의 수입 및 농업경비로 한정한다.

이윤추구를 위한 영농활동으로 지출되는 필요경비는 농업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할 수 있는 농업경비에는 선급농자재비, 자동차 및 트럭경비, 농약구입비, 토양 및 용수 보전비, 위탁영농 수수료, 감가상각비, 종업원 인건비 등이 있다. 만약 사업용 경비와 개인용 경비가 혼용되어 있을 경우 합리적 방식을 이용하여 사업경비만을 구분해 공제해야 하며, 이때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각각의 경우와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표 4-16〉 미국의 농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단위: 명, %

경비항목	내용
선급 농자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종자, 비료 및 유사한 농자재로 과세연도 동안 미사용된 것 ○ 농업에의 사용을 위해 구입한 가금류(산란계 및 병아리 포함) ○ 재판매를 위해 구입한 가금류로 당해 과세연도 동안 재판매되지 않은 것 ○ (현금주의의 경우)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타의 공제 가능한 농업경비의 50%를 한도로 지급연도에 공제가능
선급 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급사료비는 기타의 공제 가능한 농업 경비의 50%를 한도로 지급연도에 공제 가능 - 비용의 선급이 비축이 아닌 사료의 구입을 위한 것 - 조세회피 목적이 아닐 것 - 선급비용의 공제가 소득에 중대한 왜곡을 가져오지 않을 것
고용인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활동을 위해 고용한 정규직, 일용직, 하청인력, 기타 형태의 인력에 대해 지급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급여 ○ 통상적인 급여 외에 건강보험료, 재해보상보험료, 기타 부가 급여 모두 포함, 사회보장연금 및 노인의료보험의 고용주 부담금 ○ 한편 자녀 또는 배우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i) 진정한 고용주-종업원 관계가 존재, ii) 합리적인 급여 수준인 경우 농업경비로 공제 허용
수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자산에 대한 대부분의 수선비 및 유지비 - 도색작업, 농장 건물의 지붕이나 버팀목 교체, 트럭·트랙터·기타 농업용 기계장치의 주기적이고 통상적인 수선 등
이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농장담보대출, 기타 채무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 - (현금주의 방식) 당해 과세연도에 지급한 이자 공제 - (발생주의 방식)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이자 공제 ○ 한편 다목적으로 대출금을 이용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용도별 분배 후 공제 여부 판단

(계속)

경비항목	내용
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관련 보험료 - 화재, 폭풍, 농작물, 도난, 대출담보 및 기타의 농업용 자산에 대한 보험료 - 농장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사업중단보험료 및 농장 종업원에 대한 주(州) 실업보험료 ○ 일가족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의료보험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임차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자산을 임차한 비용 - 다만, 농작물 재배에 든 비용을 농업경비로 공제했다면 이중 공제를 막기 위해 현물 소작료는 농업경비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선금임차료는 회계처리방법과 관계없이 경과기간에 대한 임차료만 공제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농가주택 부분의 임차료는 농업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또는 감모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공제
그 밖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럭 및 자동차 ○ 번식 수수료 ○ 조세공과금 ○ 사업목적의 주택사용 ○ 비료 및 석회구입비 ○ 여행에 소요된 경비 ○ 토양 및 용수 등의 보전비용 ○ 재판매목적의 구입 품목 ○ 회계사수수료, 기장비용, 컨설팅수수료, 변호사수수료 ○ 광고비, 마케팅을 위한 수수료 ○ 농업기술의 유지 및 개발을 위한 교육비 ○ 농업잡지 및 상업저널 구독료 등

자료: 안중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49-56 재정리.

3.3.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일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농업에서 획득한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이 갖는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세특례의 적용으로 농업분야에 세부담이 과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해마다 기복이 심한 농업소득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득평균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상여건의 영향으로 증가한 동물의 판매수익과 농작물보험금의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또한 농업인이 특정한 비용분담보전프로그램이나 개간 및 복원프로그램에 의해 수령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체의 공제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차입한 적격농업채무(qualified farm debt)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표 4-17〉 미국의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내용	대상 및 요건
소득평균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연도의 농업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전 3개 과세연도에 분배하여 농업소득의 평균 산출 가능 - 해당 과세연도의 농업소득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각 과세소득보다 하나라도 높은 경우 소득평균을 통해 세금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파트너십의 파트너, S회사의 주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제한
과세이연	기상 여건에 따른 판매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뭄, 홍수 등 기상여건으로 통상적인 연판매량보다 많은 수량의 가축을 판매 또는 교환한 경우 해당되는 판매수익을 다음 과세연도로 이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래 또는 사업이 농업 ○ 현금주의 방식 사용 ○ 연방정부가 해당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함. ○ 정상적인 사업 여건이라면 추가적 동물의 판매·교환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납세자가 입증
	농작물 재해 보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까지 농작물보험금에 대한 과세이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주의 방식 사용해 ○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농작물보험금 수령 ○ 정상적인 사업 여건이었다면 피해가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소득을 신고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
비용분담공제규정		<p>농업인이 특정한 비용분담보전프로그램이나 개간·복원프로그램에 따라 수령한 지원금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적 지출 목적 ○ 지출된 대상으로부터 창출되는 연소득이 상당히 증가한 경우 ○ 해당 지원금의 주된 사용처가 주로 토양과 수자원 보전, 환경보호 또는 복원, 삼림의 개선, 야생동물의 서식지 제공임을 농무부 장관으로부터 확인
농업채무면제 이익 비과세		<p>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부터 차입한 적격농업채무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대여업에 종사하는 자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그 하부기관을 포함 ○ 적격농업채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에 직접 지출 - 채무면제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총 수입의 50% 이상이 농업에서 발생

자료: 안중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58-60 재정리.

3.4.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농민이 손쉽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업소득신고양식 외에 농업소득신고양식(schedule F)을 두어 납세자의 신고 절차를 돕고 있다. 또한 IRS publication(#225)을 통해 Schedule F상의 각 항목별 구체적 계산법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은 가사경비와 사업경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각 종류의 경비별 구분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 소득신고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미국 국세청은 농무부, 협동조합 등과 같이 농가들과 거래를 많이 하는 기관으로부터 과세 관련 정보를 받아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자료를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4. 캐나다⁴⁰

4.1. 과세 대상 범위

캐나다는 주(퀘벡주, 앨버타주, 온타리오주 제외)를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농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연방정부 소득세는 4개의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16년부터 구간이 추가되어 총 5단계의 세율구간이 있다. 최저 소득 구간은 4만 5,282캐나다 달러(CAD) 이하로 15%의 세율이 적용되며, 20만 CAD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⁴⁰ 안중석 외(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62-75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표 4-18〉 캐나다의 연방정부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45,282CAD 이하	15%
45,282CAD 초과 90,563CAD 이하	20.5%
90,563CAD 초과 140,388CAD 이하	26%
140,388CAD 초과 200,000CAD 이하	29%
200,000CAD 초과	33%

주: 2016년에 새로 개정된 세율.

자료: 국제조세연구소(<http://www.ibfd.org>: 2016. 8. 1.)

캐나다에서는 농가가 농업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한 농업소득의 신고가 원칙이다. 총수입금액 산출 시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입금내역이 나타난 예금통장, ATM 전표, 각종 거래 영수증 등이 있다. 필요경비 관련 항목에는 농업에 필요한 자산 구입 매입가액,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등이 있다. 신고 시 증빙자료 및 기록물 등의 첨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과세관청에서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가 체납된 경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하고, 소득세에 대한 불복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신청이 완료된 날로부터 6년간 보관해야 한다.

4.2.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4.2.1. 농업소득의 계산 방식,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캐나다의 경우 납세자가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방식 중 선택하여 농업소득을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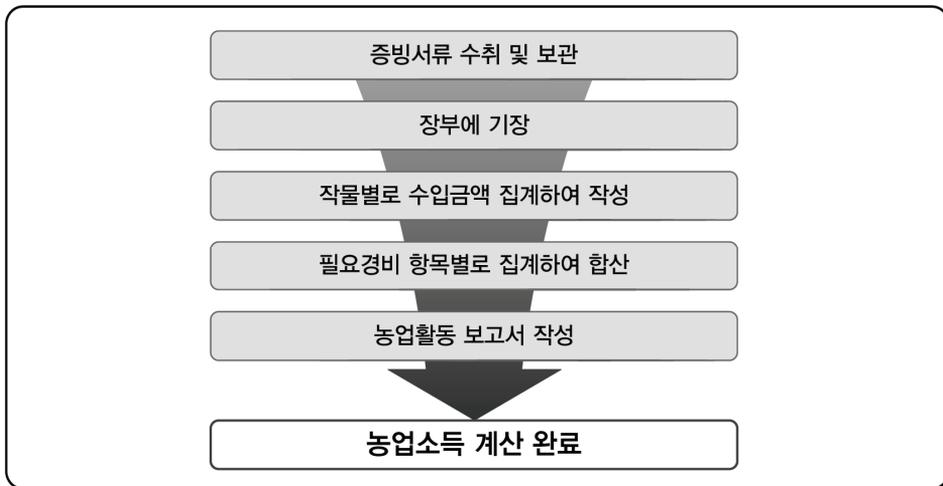
현금주의는 과세기간 동안의 수취한 현금을 수입으로, 지출한 현금을 비용으로 계산하여 농업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실제 현금의 지출 및 수입에 근거하여 농업소득을 계산한다. 수입은 판매 대가를 취득한 날이 포

함된 과세기간에, 비용은 지급 날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기입한다.

수익비용 대응에 목적이 있는 발생주의는 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어 해당금액의 측정이 가능할 때 총수입에 포함이 된다. 비용 역시 지급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고 해당 금액을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농업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계산되는데 은행, ATM 전표와 같이 거래에 따른 농업소득 증빙서류들을 수취하여 보관 하고 장부에 기록한다. 수입금액은 작물별로 집계 및 합산하고 필요경비는 항목별로 집계 및 합산한 후 농업활동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해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 가능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농업소득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출된다.

〈그림 4-2〉 캐나다의 농업소득 계산산식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 65. 재정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교체는 가능하지만 신청절차에 차이가 있다.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종료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에 반해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때 회계방식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의 조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2.2. 농업소득의 수입금액

캐나다의 경우 토양경운(soil tilling), 가축 사육, 채소, 화훼작물, 종묘, 작물재배업, 임업, 축산업, 단풍시럽 제품생산 등 영농활동으로 취득한 모든 수입은 농업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그밖에 수확한 농산물을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자가 소비한 경우 당시 판매 시가를 기준으로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농장 등에서 용역 제공 후 취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는 농업활동보고서(Form T2042: Statement of Farming Activities)의 농업 관련 소득 산출을 위해 작물별 수입금액의 합산금액을 기장해야 한다. 작물별 판매수입을 기록하고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소득 과세 대상 산업코드에 따라 가축 사육, 기타 동물 사육, 그리고 농작물들을 상세히 구분하고 있다.

〈표 4-19〉 캐나다의 농업소득의 주요 수입

단위: 명, %

수입항목	내용
농작물의 직접판매 및 외부 판매장을 통한 판매금액	○ 농작물의 직접 판매나 캐나다 소매협회 등 외부 판매장을 통한 판매금액
현금용자	○ 「농업시장유통법」에 따라 농작물에 대해 받은 현금용자부분은 농작물이 판매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
유제품 보조금	○ 우유, 치즈와 같은 유제품 보조금은 수입금액 계산에 포함
농작물 보험료	○ 농작물 손실에 대해 연방정부, 주정부로부터 받은 농작물 보험료
지원금	○ 농업안정화 및 보조금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주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 농업소득재해보조금 - 캐나다농업소득프로그램 - 농가의 보험 - 농업소득재해프로그램 등 ○ 「동물건강법」에 따라 지원되는 가축의 사망·질병·도난 기타의 사고(Destroying livestock)로 입은 손해 지원금

(계속)

수입항목	내용
부수적인 농업소득	○ 계약 등에 따라 물건 운반, 트럭의 사용, 수확, 살충, 건조, 포장, 세척, 농업 기계 임대 등으로 얻는 부수적인 농업소득
기타 원천의 소득	○ 사업과 관련된 보험차익 ○ 가사용 재고자산 ○ 농업의 부수입으로써 목재, 토양, 모래, 석재 등의 판매금 ○ 타인에게 현금대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치 ○ 농지 임대료에 따른 소득 ○ 채무면제이익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66-69 재정리.

4.2.3. 농업소득의 필요경비

통상적으로 영농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데 영농활동과 관련한 사료 구입 및 종묘비, 자동차, 트럭, 기계류 등의 재화 구입, 인건비, 토양 및 용수 등의 보전비용 등이 해당된다. 이에 더하여 농업소득의 필요경비에는 판매한 농작물의 매입가액과 이때의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등을 더하여 계산한다. 반면 납세자 본인, 가족, 지인 등이 소비한 수확 농산물 금액, 납세 당사자의 임금, 정치 또는 자선 기부금, 납부한 소득세, 사회보험금, 가산세, 벌금과 같은 비용은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표 4-20〉 캐나다의 농업소득의 주요 필요경비

단위: 명, %

항목	현금주의
판매한 농작물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 종묘비: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 종자, 모종 등의 구입비용 ○ 컨테이너 등의 사용: 농작물의 생산물의 보관, 저장, 운반, 농작물 시설운영 등에 지불한 금액 ○ 비료, 사료 비용: 화학비료, 퇴비용, 가축사료의 구입비 ○ 살충제, 제초제 등 농약구입 비용 ○ 농기구 등의 구입: 농작물 생산을 위해 구입한 기계류, 농기구 등의 구입

(계속)

항목	현금주의
종업원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동업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의 임금은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필요경비로 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한 급여, 종업원의 이름, 주소, 사회보험번호 등 - 생계를 같이 하는 청소년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수표, 현금으로 급여 지급 등 ○ 이외에 일정조건 충족 시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도 인정 ○ 종업원의 급여를 현금 대신 농작물로 지급했을 경우 그 시가가 급여로 인정
감가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에서는 감가상각 시 정률법을 적용 ○ 파트너십이 소유한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요청은 파트너 개인이 요청할 수 없으며, 오직 파트너십으로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신청함. 이후 파트너별 수입배분율에 따라 감가상각을 필요경비로 배분하여 계산 ○ 500달러 이하의 소도구 구입은 전액 공제함
기타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선비 및 보험료, 재산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수선비, 등록비, 렌탈비 - 농작물 손해보험료 등 - 농업용 차량, 건물, 울타리 등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 등 - 농업사업과 관련된 토지, 자산 등의 재산세 ○ 석유, 가스, 수도, 전기 사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기계, 온실가스, 저장용 창고 등의 에너지 소비분 (단, 가사 소비분은 제외)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72-73 재정리.

4.3.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캐나다는 과세특례로 농업손실 분에 대한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소득 납세자 소득의 주요 원천이 농업에 의한 소득인 경우 농업소득 산정 시 발생한 손실분은 그해 과세연도에서 모두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농업손실분이 소득보다 크면 근로소득, 자산소득과 같이 농업과 관련 없는 소득에서 농업소득 손실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농업손실이 소득보다 더 크더라도 납세자 소득의 주요 원천은 농업소득이 될 수 있다.

이때 농업소득이 납세자 소득의 주요 원천인지 파악하기 위한 기준 요건으로는 총소득, 순소득, 투자자본, 농장의 수익창출능력, 현금흐름 등이 있다.

또 다른 과세특례로는 농업자산의 자녀 양도 시 과세이연이 있다. 납세

자가 농업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자본이득⁴¹ 및 처분이익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이때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는데 농업 자산의 양도에 앞서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며 농업 자산은 캐나다 영토 내의 토지, 상각자산, 영농 활동과 연관된 자본자산 등에 한정하고 있다.

끝으로 농업자산 자본이득의 과세면제 혜택이 있는데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비거주자 및 법인은 해당 없음)은 특정 종류의 농업자산 양도를 통해 취득한 자본이득은 평생 누적하여 75만 CAD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표 4-21〉 캐나다의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특례	내용	대상 및 요건
농업손실 전액공제	○ 납세자 소득의 주요 원천이 농업소득인 경우 농업 소득 계산 시 손실분을 그해 과세연도에서 공제 - 농업소득보다 농업손실이 큰 경우에는 농업소득과 관련 없는 근로소득, 자산소득 등에서 농업소득 손실 전액을 공제함.	○ 납세자의 주요 원천이 농업소득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총소득, 순소득, 투자자본, 현금흐름, 농장의 수익창출능력 등을 파악
농업자산의 자녀 양도 시 과세이연	○ 납세자가 농업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자녀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자본이득 및 처분이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적용	○ 농업 자산을 자녀에게 양도하기 이전에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 ○ 농업 자산은 캐나다 영토내의 토지, 상각자산, 농업 수행과 관련된 자본자산 등으로 한정
농업자산 자본이득 과세면제	○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비거주자 및 법인은 적용되지 않음)이 특정 종류의 농업자산을 양도하고 수취한 자본이득은 평생 동안 누적하여 75만 CAD까지 세금이 면제	-

자료: 안종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p. 74-75 재정리.

⁴¹ 자본이득(capital gains)이란 공정시장가치(실제 양도 또는 간주 양도)에서 조정 후 장 부가액(adjusted cost base) 및 양도경비 등을 뺀 금액을 말한다(안종석 외 2010: 73).

4.4.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파악

캐나다에서 농업 소득이 있는 자는 Form T2042(Statement of Farming Activities)라는 농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활동보고서에는 해당하는 연도의 영농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농업 종류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해당하는 연도에 구입한 기계 장비, 건물 등의 변동 상황도 기록한다. 그 외에 주소, 사회보험번호, 경작 면적, 농업분류 코드 등의 기입항목이 있다.

농업소득은 회계연도에 근거하여 기록하는데, 새로운 농업의 시작 또는 중단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이다.

기록하는 장부의 형식에 제약은 없으나, 매일의 수익과 비용을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방식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때 캐나다 주정부 농업국은 농업소득 계산이 가능한 문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5. 시사점

미국, 캐나다 그리고 프랑스와 일본의 조세제도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와는 달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공통점이다.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과세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소득세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농업인이 심리적인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의 보관이 필요하므로 농업인이 부가가치세 납세 과정에 적응한 결과 소득세 납세를 위한 신고 절차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을 종합소득의 일부로서 소득세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업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특례를 인정해주고 있으나 세법상 농업소득도 소득의 일부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는 해외사례에서 살펴본 국가 모두 실제소득에 기초한 납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추계방식을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실제소득에 기초한 과세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과 프랑스의 경우 소득세 도입 초기에는 수입이나 지출을 추계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질소득에 입각한 납세 신고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정부가 신고방식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농업인들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과도기적 체제를 허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나라가 농업소득 신고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서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이는 농업활동이 일반 경제활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서 농업분야에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사례는 농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농업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이 아님을 말해준다. 비교적 농업 보호에 적극적인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조세 지원보다는 재정지출을 포함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농업인 지원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찌 되었든 납세자는 납세의 의무를 지고 납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프랑스와 일본에서는 제도 변화로 인한 저항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자연스럽게 납세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 정부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농업인을 설득하고, 과세방식을 전환할 때에도 과도기적 체제를 허용하여 장기적으로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한 점 등은 납세자가 제도 변화로 인한 불편을 저항 없이 수용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외사례는 정부가 소득세 확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제도 변경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농가와 논의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이고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소득세 납세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22〉 농업 관련 소득세제 국제 비교

분류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과세방법	종합과세	좌동	좌동	좌동
소득범위	작간접적으로 경작하는 자, 농업소득법인의 파트너 소작인 등이 경작, 축산, 산림, 송마와 관련되어 취득한 소득	농산물 등의 판매수입	농장주 또는 농지임차인이 농장을 경작운영관리함으로써 얻은 금액	토양경운, 작물재배업, 임업, 축산업 등 모든 농업소득
농업소득 계산산식	농업소득=수입금액-총액-필요경비	-백색신고자 농업소득 = 총수입-필요경비-사업전종자공제액 -청색신고자 농업소득=총수입-필요경비-청색사업전종자공제액-청색신고특별공제액	농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	농업소득=수입금액-필요경비-각종 공제금액
소득신고 방식	농가가 사업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장부를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소득신고	좌동	좌동	좌동
농업소득 신고서식	-추계과세: n° 2342 -간편과세: n° 2139 -정상과세: n° 2134	청색신고서	Schedule F	농업활동보고서(Form T2042)
농업 관련 과세특례	-청년 농업인 대상 소득공제 -불확실성 또는 투자에 대한 공제 -3년 평균과세 -특별소득분할 -손실이월과 총당 -휴가대체비용을 위한 조세공제 -무공해 농업 조세공제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의 손금산입 -육용소의 매각으로 취득한 사업소득에 소득세 감면	-소득평균(Income Averaging) -기상 여건에 의한 판매 수익의 과세이연 -농작물보험금에 대한 과세이연 비용분담공제 -농업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비과세	-농업손실 공제 -농업자산의 자녀 양도시 과세이연 -농업자산 자본 이득 면세

자료: 안중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

제도 변화를 시도할 때에는 반드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작물재배업 과세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우선 농가의 세 부담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농가의 세 부담 증가는 조세저항으로 이어져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가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를 하기 위한 조세당국의 행정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려할 때에는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소득세 확대에 따른 사회적 편익

1.1. 세수 증대

소득세의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세원이 넓어지면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2014년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해 농업소득 전체로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세수 증감분을 추산한 결과 493억 원이 감소하거나 최대 3,495억 원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² 2014년 소득세 전

⁴² 자세한 추산 과정 및 결과는 2절 농가의 세 부담 증가 참조.

체 수입이 54조 1,017억 원의 큰 규모라는 점에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로 인한 세수 측면에서의 실익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추산 결과는 농가가 실제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득 미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욱 작아질 수 있다.

1.2. 과세 형평성 확보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득세는 2014년 기준 국세의 27.6%를 차지하며 29.2%를 차지한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 규모가 큰 세목이다. 또한 종합소득세는 납세인원이 585만 명(2014년)에 이르는데 이는 2014년 경제활동인구 2,654만 명의 22%에 해당된다. 소득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높다.

조세부담의 원칙은 크게 편익원칙과 능력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편익원칙은 “각 납세자가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에 비례하도록 조세부담을 분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며 능력원칙은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계없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원칙은 다시 수평적 공평성과 수직적 공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평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같은 사람은 같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며 수직적 공평성은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이준구·조명환 2016: 394-397).

수평적 공평성의 측면에서 볼 때 특정 산업에 대한 비과세는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농업분야 내에서도 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을 구분하여 품목별로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농업인이 동일한 수준의 조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에 어긋난

다. 예컨대 1억 원의 소득을 올린 작물재배업 사업자는 소득세를 비과세 받는 반면 1억 원의 소득을 올린 축산업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납세하는데 반해 작물재배업 사업자는 소득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농업과 타 산업과의 수평적 공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되면 현재의 납세자들은 조세를 피하거나 줄이고 싶은 욕구를 더욱 크게 느끼게 되며 이는 조세회피, 탈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수평적 공평성에 입각해 과세를 하면 현재의 납세자들이 느끼는 불만이 줄고 납세순응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농업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형평성 제고로 인한 후생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한다는 면에서도 사회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에 맞도록 소득세제가 운영되고 있다면 작물재배업 전체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은 저소득 농가에 비해 고소득 농가가 잠재적으로 더 큰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⁴³ 만약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누진과세를 하고 있다면 고소득 농가가 저소득 농가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량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업 전체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고 누진세제를 적용하게 되면 농가 간 소득재분배는 더욱 개선될 수 있다.

1.3. 농가 경영의 효율화 및 투자 기회 확대

농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경영장부의 작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농가들이 경영장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⁴⁴ 이는 농가가 경영장부 작성을 통한 경영기술의 도

⁴³ 단 2016년부터는 작물재배업 수입금액 10억 원 이상의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 고소득 농가를 의미한다.

입이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소득세 납부라는 기장의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계관리, 재무제표 작성, 생산관리 등이 이루어지면 보다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 컨설팅 등 전문기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득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은 소득세 납부를 넘어서 농가 경영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가의 납세자료는 소득증빙자료로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활용될 수 있다. 현재는 신빙성 있는 소득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담보능력이 약한 농가나 담보한도가 차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운 농가는 담보대출을 통한 자금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로 농가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자본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준기 외(2010: 64-65)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투자계획 대비 50% 이상 투자를 못한 농가 중 63.7%와 전혀 투자를 못한 농가 중 58%가 3억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보대출 외에도 농업인은 영농을 위해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농신보)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농신보도 농가의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신보는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85%의 부분보증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신용보증료 0.3~0.6%가 적용되는 점도 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신보가 농협은행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연계되어 있어 신청자의 사업성 평가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 안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도 농가가 자본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보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업성 평가보다는 자금회수 가능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신규 취업농이나 귀농인 등 사업실적이 미미한 농가의 경우나 고위험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자 하

⁴⁴ 전업농의 투자실패를 분석한 박준기 외(2010: 50-52)에 따르면 조사 대상 농가 중 52.5%가 경영장부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영장부가 중요한 판단자료라고 응답한 농가는 17.5%에 불과하고 55.1%가 참고자료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는 농가 등은 농신보 활용이 어렵다(김미복 외 2014: 89-91). 따라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이 아닌 신용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는 것은 농업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세 납부를 위해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소득신고 자료가 축적되면 농업 전문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으로부터도 신용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농업인의 소득세 납세 및 소득신고는 농가의 자금조달 방법을 보다 확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수적으로는 농가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농신보는 일반 신용대출 상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농신보 연계 상품의 조건 완화 등 서비스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1.4. 농가의 복지제도 활용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농가는 소득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정부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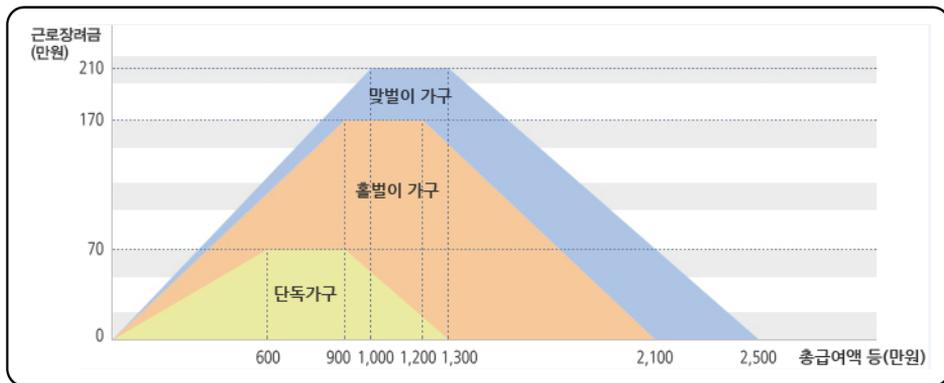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성실히 일을 함에도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곤란한 전문직을 제외한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 CTC)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2015년 기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다가 201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최대 21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녀장려금」은 최대 자녀 1인당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자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에 사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합한 것이다. 농림어업의 경우 사업별 조정률은 30%이다. 따

라서 농업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신고한 농업인의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사업소득의 30%가 된다.

여기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이 달라지게 된다. 맞벌이 가구가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게 되며 홑벌이 가구, 단독가구순으로 「근로장려금」이 낮아진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자료: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DB(<https://www.hometax.go.kr> 검색일: 2016. 4. 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 신고가 필수조건이다. 또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인 작물재배업 종사자는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면 농업인도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5 농업정책의 발전

농가의 소득신고 자료는 소득안정 정책과 농촌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

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경영안정정책은 직불제, 수입보장보험, 재해보험 등이다. 이 중 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수입이 예상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2015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16년도에는 콩, 포도, 양파, 마늘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전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차이가 있다. 수입보장보험의 보험금은 기준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 중 자기부담비율을 제외한 부분이 된다. 이때 기준수입은 가입 당시의 수입으로서 가입수확량과 가입 시 기준가격의 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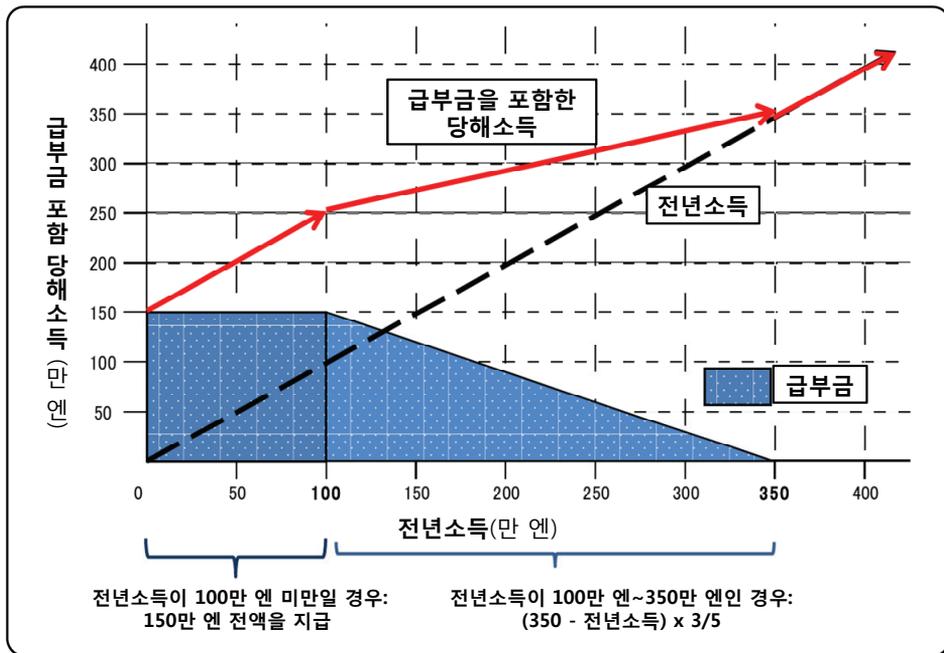
$$\text{보험금} = \text{Max}[\{\text{기준가격} \times \text{평년수확량} \times \text{보장률} - \text{당년가격} \times \text{당년수확량}\}, 0]$$

기준가격은 전국 평균 농가수취가격의 과거 5개년 올림픽 평균이며 각 농가의 개별 수취가격은 아니다. 당년가격 또한 전국 평균 농가수취가격이다. 이러한 가격산정 방식은 특정지역과 농가에서 평균 이상으로 가격이 하락하거나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농가의 실제 피해액보다 적게 또는 많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농가의 실제 피해 수준에 맞추어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가의 과거 농작물 수입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개별 농가에 맞춘 수입 증빙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소득신고 자료이며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다면 소득신고 자료를 이용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경영안정제도 운영에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한 사례는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될 계획인 일본의 수입보험제도는 과거 5년의 수입자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책정하게 되며 이때 농가의 수입자료로서 청색신고자료가 이용될 계획이다. 즉 청색신고를 하지 않는 농가는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일본은 신규로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금으로 취농급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취농급부금은 취농을 준비하는 단계(준비형)와 영농을 시작하는 단계(경영개시형)에서 지급된다. 준비형은 청년 농업인이 농업경영인 육성기관이나 선진농가·농업법인에서 연수를

받을 시 연간 150만 엔을 최장 2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경영개시형은 독립적 영농을 실시하는 농가에 연간 150만 엔을 최장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영개시형 취농급부금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직불금을 제외한 전년도 소득이 100만 엔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 엔을 전액 지급하고 전년도 소득이 100만 엔에서 350만 엔 사이에 있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부금이 감소하여 350만 엔 이상이 되면 급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김종인 2015). 이때 전년도 소득은 청색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그림 5-2〉 청년취농급부금(경영개시형) 지급 기준



자료: 농림수산성. 2015. 『2015년도 예산의 개요(平成27年度予算の概要)』. (김종인 2015 재인용).

작물재배업의 소득신고자료는 농촌 복지정책의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의 경우 농업 외 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농업인이라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수준에 따

른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의 소득신고자료가 축적되면 이를 바탕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이 가능해진다. 소득계층 간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복지지원 방식은 하후상박 형식이 바람직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개별 가구의 소득과약이다. 따라서 각 농가가 소득 신고를 하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1.6. 사업자 등록 근거 마련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는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는데 두 개의 법률 중 하나만 적용되더라도 해당 납세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농산물 생산자는 면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갖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면 「소득세법」에 사업자 등록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많은 농업인들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농업인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자로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직거래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농업분야 전체에 납세의 의무를 명시하는 것은 농업인의 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궁극적으로 농업인의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소득세 과세 확대의 사회경제적 비용

2.1. 농가의 세부담 증가

이 절에서는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과세를 추진할 경우 농가가 지게 될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현 시점에서 농가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록은 「농가경제조사」가 유일하며 가장 대표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석에서는 2014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라는 점, 일부 고소득 농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농가경제조사」의 조사 항목과 세법상 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농가의 세부담 추정에 완전히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추정 결과는 작물재배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로 인해 실제로 농가가 부담하는 정도로부터 오차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소득세 부과로 인하여 달라지게 되는 세부담의 차이, 소득계층별 효과 등 전체적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담 분석을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우선 현재와 같이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Baseline(기준선)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식량작물재배업을 포함한 작물재배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확대한 경우는 S1과 S2로 설정하였는데 S1과 S2의 차이는 적용되는 세율과 과표이다.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하되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1, 폐지되었던 농업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S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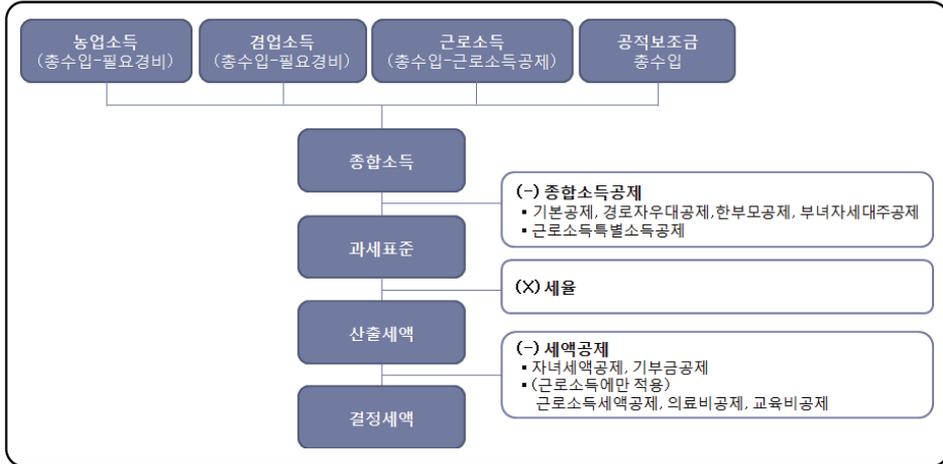
〈표 5-1〉 시나리오 구성 내역

시나리오	내용
Baseline	작물재배업 제외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S1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S1-1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EITC 및 CTC 적용
S1-2	작물재배업 포함 종합소득 => 종합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EITC 및 CTC 적용 - 농업소득공제(가칭) 560만 원 적용
S2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 => 농업소득세 과세 작물재배업 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 종합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EITC 및 CTC 적용
S2-1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 => 농업소득세 과세 작물재배업 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 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EITC 및 CTC 적용
S2-2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소득 => 농업소득세 과세 - 농업소득공제(가칭) 560만 원 적용 작물재배업 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 => 소득세 과세 - 2015년 소득세율 및 과표 적용, EITC 및 CTC 적용

또한 각 농가가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을 신청했을 때를 고려한 시나리오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정 수준의 소득공제를 가상적으로 적용한 시나리오를 추가적으로 포함하였다.

작물재배업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했을 때에는 축산소득 및 기타 농업 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의 일부로 취급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국세인 소득세 부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은 2015년도 기준을 적용하였다. 또한 소득세 계산에 들어가는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였다.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 결정세액을 계산한 과정은 <그림 5-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5-3〉 세액 계산 흐름도



2.1.1. 소득계산

「농가경제조사」상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는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이다.

농업소득은 농작물수입, 축산수입, 농업잡수입의 합계액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값이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작물소득과 축산소득, 농업잡소득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각 품목에 대한 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구성요소가 될 수 있으며 농업잡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하여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농가경제조사」상 농업 관련 경영비를 필요경비로 취급하여 농작물수입, 축산수입, 기타수입에서 경영비를 각각 제하여 소득을 계산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원료의 매입가격, 판매한 상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종업원 급여,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평가차

손, 대손금, 제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며 축산업의 경우 종란비,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가 필요경비로 추가된다. 「농가경제조사」는 농작물수입과 축산수입, 농업잡수입을 구분하고 있으나 비용은 품목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입 비중에 따라 비용을 분할하였다.

이때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의 농가는 복식부기 대상자로 취급하였으며 3억 원 미만의 농가는 간편장부 대상자지만 소규모 농가가 장부를 갖추고 기장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계결정을 통해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의 농가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농가가 장부를 갖추는 경우와 추계결정을 통해 계산된 세액을 비교하여 세액이 더 작은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한다는 가정에 각 농가의 신고방식을 결정하였다. 농작물 수입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채소, 화훼작물재배업 귀속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농작물수입에 적용된 단순경비율은 93.5, 기준경비율은 13.2이다. 축산수입에 대해서는 축종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평균한 값 93.9와 12.7을 적용하였다. 농업잡수입에 대해서도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때 농업잡수입에 대해서는 수렵 및 관련 서비스의 경비율을 적용하였다.

겸업소득은 농업 외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농가경제조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겸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에서 얻은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분류 가능하다. 2,000만 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들 소득의 2,000만 원까지는 종합소득에서 제외하고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산입하였다. 「농가경제조사」에서는 겸업지출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서 활용하였으나 수입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농가는 장부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사업외소득 중 근로소득은 농업노임과 농업 외 취업을 통해 얻은 임금으로 세분되나 둘 다 근로소득으로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한편 자본소득에 대해서 『농가경제조사』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설문조사 대상이 농가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농가의 자본소득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⁴⁵ 따라서 농가의 세부담 추정에서는 농가의 자본소득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이 연구에서 농가의 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 산정한 가구별 종합소득은 농업소득,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의 합이며 그 중 자본소득과 사적보조금은 종합소득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분류과세되는 비경상소득의 세부담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부분만 분석에 포함시켰다.

〈표 5-2〉 농가경제조사와 소득세법의 소득분류 비교

농가경제조사 소득분류		소득세법상 소득분류	과세방식
농업소득	작물재배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축산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농업잡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겸업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
사업외소득	근로소득	근로소득	종합과세
	자본소득	자본소득	비과세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기타소득	종합과세
	사적보조금	해당 없음	비과세
비경상소득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	분류과세

⁴⁵ 농업 관련 비과세 이자소득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2),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 3),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2) 등이 있으며 비과세 배당소득은 농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1인당 1,000만원 이하에 한함)의 배당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5) 등이 있다.

2.1.2. 소득 및 세액공제

농가의 세부담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우선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본인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농가경제조사」는 가구 단위로 집계되어 개인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모든 가구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70세 이상 가구원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적용되는 경로자 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세대주가 여성인 경우 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부녀자세대주 공제, 한부모인 경우 100만 원의 소득금액이 공제되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였다. 단, 부녀자세대주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는 가구에는 한부모 공제를 적용하였다. 또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여부를 알 수 없어 공제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적공제 외에는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등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농가경제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공제내역은 반영하지 않았다.

〈표 5-3〉 소득공제 적용 내역

단위: 만 원, 호

기본공제		경로자우대 공제		한부모 공제		부녀자세대주 공제	
공제금액	관찰치	공제금액	관찰치	공제금액	관찰치	공제금액	관찰치
150	98	0	1,214	0	2,371	0	2,582
300	1,753	100	685	50	224	100	13
450	433	200	692	-	-	-	-
600	185	300	4	-	-	-	-
750	71	-	-	-	-	-	-
900	55	-	-	-	-	-	-

종합소득에 소득공제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이 산정되는데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가구별 산출세액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세액공제는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 공제, 보험료공제이며 그 중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적용되었다.

<표 5-4>는 2014년 「농가경제조사」에 기록된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각 가구별로 공제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비 및 자녀세액공제액이 0인 농가 수는 2,000호가 넘는데 이는 농가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이촌향도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 공제는 「농가경제조사」에서 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이전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2,595가구 중 256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가 기부금을 납부하였으며 가구당 평균 기부금 공제액은 14만 4,145원이 되었다. 근로세액공제는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때 가구별 산출세액은 작물재배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세액공제액도 작물재배소득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추산 결과, 작물재배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켰을 때 근로세액공제액이 0인 농가는 1,661농가이며 작물재배소득을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근로세액공제액이 0인 농가는 1,900농가였다. 그러나 결정세액 계산 시 근로소득이 없는 농가는 의료비, 교육비, 근로세액공제가 세액공제에서 제외되었다.

<표 5-4> 세액공제 적용 내역

단위: 호, 원

구분	의료비 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근로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작물재배포함	작물재배제외	
공제액 0인 농가 수	274	2,128	256	1,658	1,896	2,279
평균 공제금액	320,698	435,609	137,549	381,924	342,485	280,063

주: 작물재배 포함 근로세액공제는 S1의 경우임.

2.1.3. 추산 결과

시나리오에 따른 농가별 평균 종합소득세 추산 결과는 <표 5-5>에 나타나 있다. 현재와 같이 작물재배업을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때 (Baseline) 과세 범위에 해당되는 모든 소득을 농가가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세하게 된다면 납세가구는 전체 농가의 12.2%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때의 농가별 평균 납세액은 58만 3,218원이며 농가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는 세수는 6,537억 원이 된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을 모두 종합소득에 포함시키고 2015년 소득세율을 적용(시나리오 S1)한 결과 납세가구 비중은 18.8%로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세액도 70만 519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수는 7,851억 원으로 증가하는데 Baseline과 비교하여 1,315억 원이 추가적으로 걷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가구 평균 세액과 세수는 작물재배업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면 약 20% 증가한다. 만약 작물재배업을 과세 대상으로 하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적용하게 된다면(시나리오 S2) 납세가구의 비중은 32.0%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가구당 평균 납부세액도 89만 5,082원으로 증가하며 세수도 1조 32억 원으로 증가한다. 납세가구 비중은 Baseline 적용 시 납세가구 비중의 두 배 이상에 해당되며 가구당 평균 세액도 Baseline에 비해 57.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S1과 시나리오 S2는 농가에 대한 특별한 세제 지원이 없이 주어진 세율과 과세표준만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므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농가가 신청하였거나 농업소득에 대해 기초공제 즉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했을 때에는 추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공제 또는 세액 지원을 고려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우선 작물재배소득을 모두 종합소득으로 산입하되 농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다면(시나리오 S1-1) 납세가구의 비중은 17.7%가 되고 가구당 평균 세액은 60만 2,582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뿐만 아니라 농업소득에 대해 농

업소득공제를 적용하면(시나리오 S1-2) 납세가구 비중은 14.5%이고 가구당 평균 납부세액은 53만 9,271원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시나리오별 추산 결과

시나리오	납세가구 비중(%)	가구당 평균 세액(원)	세수(억 원)
Baseline	12.2	583,218	6,537
S1	18.8 (54.2%)	700,519 (20.1%)	7,851 (20.1%)
S1-1	17.7 (29.5%)	602,582 (2.8%)	6,754 (2.8%)
S1-2	14.5 (12.9%)	539,271 (-7.3%)	6,044 (-7.3%)
S2	32.0 (137.4%)	895,082 (57.8%)	10,032 (57.8%)
S2-1	27.8 (48.8%)	797,144 (23.9%)	8,934 (23.9%)
S2-2	16.4 (15.3%)	679,453 (12.1%)	7,615 (12.1%)

- 주 1) 납세가구는 납부할 세액이 0원 초과인 가구를 말함.
 2) 괄호 안은 Baseline 대비 변화율임.
 3) 추산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음.

또한 작물재배소득을 포함한 농업소득에 대해서 농업소득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포함(시나리오 S2-1)한 결과, 납세가구 비중은 27.8%로 증가하는 한편 가구당 평균 납부세액은 79만 7,144원이 되어 Baseline에 비해 각각 48.8%, 2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업소득세를 적용하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포함하는 동시에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하였을 때(시나리오 S2-2)에는 납세가구 비중이 16.4%, 가구당 평균 납부세액은 67만 9,453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추산 결과를 정리하면 납세가구의 비중은 어떤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가구당 평균 세액은 시나리오 S1-2를 제외하면 모든 시나리오하에서 증가하는데 그 중 시나리오 S2하에서의 평균 세액 증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S1-2하에서는 가구당 평균 세액이 baseline보다 감소하는데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농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가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면 농가의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

다는 점을 나타낸다. 한편 시나리오 S1, S1-1, S1-2과 시나리오 S2, S2-1, S2-2를 비교해 보면 소득세를 적용한 시나리오 S1, S1-1, S1-2 하에서 농가 세부담 증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과세를 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농가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납부세액이 0원 초과인 납세가구와 납부세액이 0원 이하인 과세미달가구의 특성을 비교하였다<표 5-6>. 평균적으로 납세가구의 농가소득과 순자산은 과세미달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납세가구의 가구주가 과세미달가구의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가구의 평균 농가소득은 약 4,600만 원에서 7,300만 원 사이에 분포하며 순자산은 3억 8,000만 원에서 5억 사이에 분포한다. 반면 과세미달 가구의 평균 농가소득은 2,500만 원 전후이며 순자산 또한 대부분 3억 4,00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 가량으로 납세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다. 또한 납세가구의 가구주는 평균적으로 60대 초반이지만 과세미달 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이다. 즉 경제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연령대가 높은 계층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젊은 계층을 대상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세액구간별 농가 수 변화를 살펴보면 작물재배업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경우 Baseline에 비해 납부세액이 0인 가구는 감소하며 대부분의 구간에서 납세가구가 증가하였다<표 5-7>. 농업소득세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S2와 S2-1에서는 소액을 납부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0~10만 원 구간의 농가수가 각각 335호와 258호로 Baseline에 비해 5.2배와 4배로 증가하였다. 한편 납세 가구 중 가장 많은 가구가 분포하고 있는 구간은 100~500만 원 구간이었다.

〈표 5-6〉 납세가구와 과세미달가구 특성 비교

시나리오	농가소득(천원)		순자산(천원)		가구주 연령(세)	
	납세가구	과세미달가구	납세가구	과세미달가구	납세가구	과세미달가구
Baseline	69,035	26,683	453,207	354,424	60.4	68.6
S1	63,532	24,516	453,993	346,221	61.7	69.0
S1-1	65,600	24,569	476,750	342,699	61.2	69.0
S1-2	72,162	25,023	499,174	344,014	60.3	68.8
S2	46,734	24,818	381,018	359,587	65.6	68.5
S2-1	51,762	24,169	426,513	343,327	64.5	68.8
S2-2	69,115	24,518	492,381	341,715	60.3	69.0

주: 추산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음.

〈표 5-7〉 세액구간별 농가 분포

단위: 호

세액구간	Baseline	S1	S1-1	S1-2	S2	S2-1	S2-2
0원	2,245	2,060	2,078	2,169	1,734	1,819	2,098
0~10만 원	64	91	83	62	335	258	58
10만~30만 원	56	79	72	72	69	65	76
30만~50만 원	26	34	35	47	22	22	43
50만~100만 원	34	76	72	43	35	34	39
100만~500만 원	104	183	183	134	298	295	198
500만~1,000만 원	18	16	16	14	43	43	28
1,000만 원 초과	48	56	56	54	59	59	55
합계	2,595	2,595	2,595	2,595	2,595	2,595	2,595

시나리오별 납부세액 추산 결과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가구일수록 납부세액이 증가하였다<표 5-8>. Baseline하에서 농가소득이 0원 이하인 가구의 평균 납부세액은 0원이었으나 농가소득이 1억 원 이상이 농가의 평균 납부세액은 1,409만 9,690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 S1과 S2를 비교해보면, 농가소득 0원 이하인 가구는 각각 납부세액이 0원과 1,236원이지만 최고 소득계층인 농가소득 1억 원 이상의 가구는 납부세액이 1,640만 2,000원과 1,946만 1,360원에 이른다. 최저소득구간과 최고소득구간 간의 격차는

작물재배업 소득을 과세할 경우 더욱 커지는데 Baseline하에서 최저소득구간과 최고소득구간의 세액 격차는 1,409만 9,690원이었으며 S1과 S2를 적용한 결과 두 구간의 세액 격차는 1,640만 2,000원과 1,946만 124원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가 농가 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부과로 인해 저소득 농가는 세부담을 더 많이 체감할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보면 농가소득이 커질수록 작물재배업 소득세 부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가 커지지만 증감률 측면에서는 저소득 농가가 더 많은 증가율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S1과 S2의 결과를 Baseline과 비교해 보면, 소득이 큰 가구일수록 세액 증가율은 감소하였다. S1하에서 1,000만~3,000만 원 구간의 세액 증가율은 110.8%이지만 소득 1억 원 이상의 세액증가율은 16.3%로 하락하였다. 또한 S2하에서 0~1,000만 원 이하 가구의 세액증가율은 381.3%이지만 1억 원 이상 가구의 세액증가율은 38%로 감소한다.

그러나 S1과 S2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는 저소득 가구의 세부담 변화폭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S1-1과 S2-1은 농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저소득 가구 즉, 소득 3,000만 원 이하(S1-1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인해 납부세액보다 지급되는 장려금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작물재배업 소득에 과세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 된다. 그러나 농가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활용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구간의 납부세액은 미세하게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는데 이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소득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서 농가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전 소득계층의 세부담 증가도 줄게 된다. 시나리오 S1-2와 S2-2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뿐만 아니라 농업소득공제가 적용된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시나리오 S1-2하에

서는 S1-1에 비해 농가의 세부담 증가율이 작는데 농가소득 5,000만 원 이하 구간뿐만 아니라 전 구간의 세부담 증가율이 S1-1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나리오 S2-1과 S2-2를 비교할 때도 나타나는데 S2-2하에서의 세부담 증가율은 S2-1하에서의 세부담 증가율보다 낮다. 따라서 농업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저소득 농가의 세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고소득 농가의 세부담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표 5-8〉 소득구간별 평균 납부세액

소득구간	납부세액(원)						
	Baseline	S1	S1-1	S1-2	S2	S2-1	S2-2
0 이하(A)	0	0	-14,235	-14,235	1,236	-12,999	-12,999
0~1,000만 원	792	922	-55,751	-56,404	3,813	-52,860	-55,778
1,000만~3,000만 원	5,691	11,998	-145,325	-150,451	27,344	-129,978	-144,904
3,000만~5,000만 원	100,472	144,538	46,470	6,380	260,530	162,461	38,281
5,000만~8,000만 원	570,095	760,670	759,034	613,443	1,131,898	1,130,262	812,660
8,000만~1억 원	1,649,988	1,991,376	1,991,376	1,647,838	2,738,462	2,738,462	2,219,839
1억 원 초과(B)	14,099,690	16,402,000	16,402,000	15,622,790	19,461,360	19,461,360	18,474,460
B-A	14,099,690	16,402,000	16,416,235	15,637,025	19,460,124	19,474,359	18,487,459
소득구간	Baseline 대비 변화율(%)						
0 이하	-	0	n.a.	n.a.	n.a.	n.a.	n.a.
0~1,000만 원	-	16.3	-7,136.4	-7,218.8	381.3	-6,771.5	-7,139.8
1,000만~3,000만 원	-	110.8	-2,653.5	-2,743.6	380.5	-2,383.9	-2,646.1
3,000만~5,000만 원	-	43.9	-53.7	-93.7	159.3	61.7	-61.9
5,000만~8,000만 원	-	33.4	33.1	7.6	98.5	98.3	42.5
8,000만~1억 원	-	20.7	20.7	-0.1	66.0	66.0	34.5
1억 원 초과(B)	-	16.3	16.3	10.8	38.0	38.0	31.0

주: 추산 결과는 기준치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음.

추산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작물재배업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농가 전체에 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6개의 시나리오를 적용하였을 때 과세 대상 농가가 증가하고 전체 농가의 평균 납부세액도 증가하였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없다면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로 저소득 가구가 더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2015년부터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농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세부담 증가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농가의 세부담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저소득 농가에는 유리하다. 둘째, 정부가 비과세 대상을 과세로 전환하여 농가의 세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보완책으로서 농업소득공제를 적용한다면 농가의 세부담 증가는 최소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작물재배업 소득에 과세하기로 한다면 농업소득에 대해 별도로 농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소득세 과세하는 것이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추산 결과는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분석에 쓰인 「농가경제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 작성되는 설문조사라는 점,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라는 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세액 계산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추산된 결과들은 실제 과세되었을 때의 금액에 가깝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농가의 세부담을 추정해봄으로써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누구에게 미칠 것인가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2. 소득세 확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2.2.1. 농업인의 조세저항

조세저항이란 “납세자가 조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된다(지성근 1991: 136). 조세저항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조세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항의시위나 폭동, 저항운동 등의 반세운동(Tax revolt), 조세부담을 불법적으로 경감시키려는 탈세(Tax evasion)와 합법적인 방식으로 조세부담을 낮추는 조세 회피(Tax avoidance)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조세저항이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극단적으로는 정치체제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농가의 가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당연히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정부로부터의 심리적인 지지를 잃었다는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는 과세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위나 집회 등의 조직적인 운동부터 정치권 인사나 정부 관료들에 대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는 것 등 다양한 형태로 저항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은 농업분야 내에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 작물재배업 종사자와 축산업 종사자, 임업종사자 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작물재배업 과세 시 품목 생산자 간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는 농업인과 비농업인 간의 정치적 갈등, 작물재배업 종사자와 비작물재배업 종사자 간의 정치적 갈등, 농업인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표면으로 부각시켜 논쟁을 일으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2. 납세행정비용 증가

조세납부와 관련된 행정적 비용은 조세징수 비용과 납세협력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징수 비용은 과세당국이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을 거두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납세협력 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전과 시간, 에너지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무 관련 지식을 축적하는 데 드는 비용, 납세신고서의 작성에 소용된 시간,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 세무 관련 업무를 보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이다. 또한 세무 관련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납세협력비용에 포함된다(김형준·박명호 2007: 20).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은 과세 대상자와 과세 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가 신고방식으로 납세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미신고자 발생 시 과세당국이 미신고 농업인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농업인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넓고 접근성이 떨어져 과세당국이 미신고자를 확인하는 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조세징수 인력이 적은 지자체에 있어서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는 징수비용을 더욱 높이게 된다.

그러나 작물재배업 소득을 국세인 소득세로 과세하게 되면 농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이 신고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질적으로 납세행정비용의 증가는 국세 관련 행정비용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홍범교 외(2013)가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을 추정한 결과 전체 납세협력비용은 9조 8,87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득세와 관련된 납세협력비용은 4조 400억 원 가량이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체 세목에 대해 농·임·어·광업 사업자의 1업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39만 원 가량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체 사업자 1업체 평균 납세협력비용인 182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로 농가가 지불하는 납세협력비용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

납세협력비용은 표준원가모형을 이용해 추정되었는데 표준원가모형의 행정비용은 납세 관련 행정비용을 내부원가, 외부원가, 취득원가로 구분하고 있다. 내부원가는 납세를 위한 정보제공의무를 다하기 위해 내부 인력을 활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는 내부 인건비와 간접비를 포함한다. 인건비는 시간당 임금에 관련 노동투입시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간접비는 임대료, 건물감가상각비 등 고정행정비용과 관련된 비용이며 일반적으로 내부 인건비의 25% 또는 30%를 간접경비로 간주한다. 외부원가는 정보제공의무를 다하기 위해 외부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취득원가는 신고서 제출을 위한 기타 비용을 의미한다. 이를 합한 총원가가 납세협력비용이 된다(홍범교 외 2013: 13-30).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과세 대상인 농업인들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고령농업인이라는 점과 이들이 세무서비스 등 세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은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소득신고 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외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가 많고 또한 장부기장에 의해 신고할 경우 매일의 출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 고령 농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농산물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있는 까닭에 영수증 발행과 보관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아 증빙서류를 갖추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원가모형은 납세를 할 때 지불하는 정신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데 상당수의 고령농가가 납세를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정신적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대했을 때 한 경영체당 평균 납세협력비용은 139만 원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작물재배업 종사자의 납세 의무가 없었으므로 사업자 등록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농업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이 또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납세 관련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과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협력비용 증가는 전체적인 납세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1. 소득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

제도개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편익은 농업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귀속되지만 과세 확대로 인한 비용은 납세 대상이 되는 농가가 부담하게 된다. 일부 사회 구성원이 치르는 비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손해를 보는 집단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전체적인 사회 후생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농업 관련 소득세제를 개편함에 있어서 농업소득 전체에 과세를 하되 과세로 인해 농가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가능한 한 소득 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농가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다 세부담이 적은 방식의 세율 및 과표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적인 공제를 제공하거나 경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세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농가 경영 및 농업소득을 특성을 세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인이 소득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납세를 하지 않더라도 소득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른 농정과 연계하도록 하여 소득신고의 실시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편익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소득세제 개편 방안

2.1. 농업소득공제(가칭) 도입

앞서 폐지되었던 농업소득세에서 기초공제를 적용하였던 사례를 감안하여 농업소득에 대해 별도의 공제를 신설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농업소득을 종합과세하되 농업소득공제(가칭)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농업소득세의 기초공제는 일종의 자가노력에 대한 비용처리라는 점에서 소득세 상의 근로소득공제와 유사한 개념이다. 농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영농을 위해 투입된 실질적인 지출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농가의 자가노동 및 자가토지에 대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본적인 경비를 인정하여 이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이다.

농업소득공제는 농업소득세에서 기초공제가 연 560만 원으로 적용된 것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560만 원을 적용하거나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감안한 615만 원을 적용하는 방안,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누진방식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2.2. 세율 및 과표구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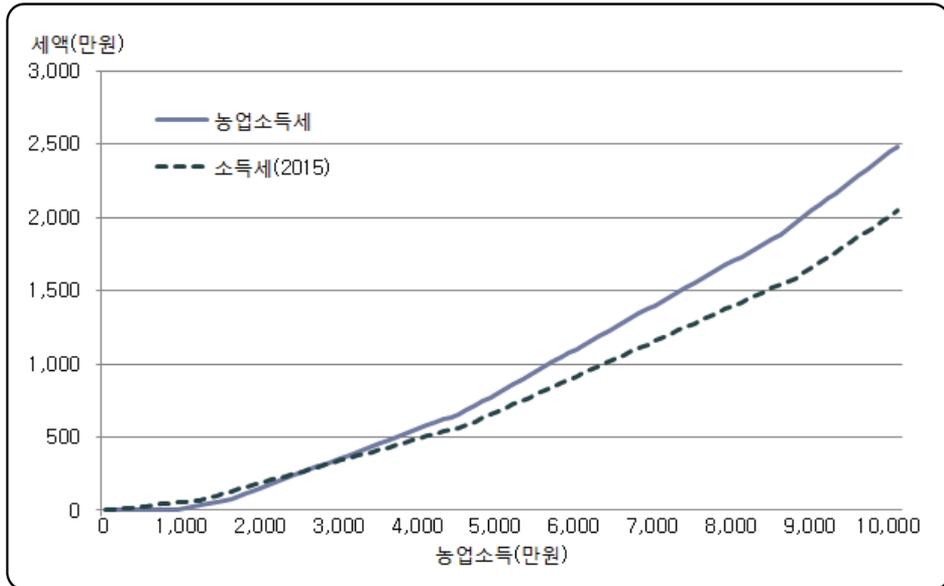
농업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되면 다양한 방안이 가능한데 ① 국세인 작물재배업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 ②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 작물재배업과 축산, 임산소득을 포함한 농업소득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농업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어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농업소득세를 부활시키는 경우 2004년 수준의 세율을 적용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대안 ①과 ②를 적용했을 때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세액을 비교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세 세율과 2015년 기준 소득세 세율을 단순적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세액을 계산해 보았다. 그 결과 2,6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농가의 경우 농업소득세가 유리하지만 2,6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농가는 현재의 소득세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5년 기준 소득세를 적용했을 때에는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세율 및 과표구간만 놓고 본다면 저소득 농가에는 농업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세는 소득세와 달리 기초공제 외에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소득세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등 다양한 명목의 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근로소득과 합산될 경우에는 근로소득 관련 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나 농업소득세제는 기초공제 560만 원 이외에는 별도의 공제제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농업소득세를 부활시켜서 농업소득에만 따로 적용하는 것이 농업소득을 종합소득에 산입시켜 소득세로 부과하는 것보다 농가 입장에서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뿐만 아니라 납세 행정 측면에서나 여타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도 농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그림 6-1〉 농업소득세와 소득세 적용 시 세액 비교



주: 농업소득세 적용 시 기초공제액 560만 원을 적용하였으며 2015년 기준 소득세 적용 시나리오는 각 농가의 소득이 농업소득 외에는 없다고 가정하였음.

2.3. 농업소득 평준화

농업분야는 소득변동성이 높고 투자 수익실현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농산물의 작황은 매년 일조량이나 강수량 등 자연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소득이 크게 변동하기 쉽다. 따라서 연도별로 세부담 변동폭도 커질 수 있는데 특정 연도에 소득이 집중되는 경우 누진구조를 가진 세제의 특성상 해당 연도의 세액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년생 작물을 키우는 농가의 경우 여러 해에 걸친 투자 끝에 수익실현이 특정 기간에 이루어지면 농가는 과도한 세부담을 맞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득을 평준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예

를 들면 올해의 소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일부를 과거 연도로 소급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식이다.

2.4. 소득신고 관련 규제 완화

정부는 2015년 귀속 농업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시행 상의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법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5년부터 수입 10억 원 이상 작물재배업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자 등록과 소득신고 시점이 달라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수익이 실현되는 것은 연말쯤이지만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자는 본인의 수입이 10억 원을 초과할 것인지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대비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보관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소득신고 시점에서 수입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 세무상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와 과세소득 계산 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여 과다한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⁴⁶ 그뿐만 아니라 수입금액이 3억 원이 넘었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미처 장부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과세소득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로 인하여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⁴⁶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장부작성, 매입증빙서 수취 및 보관, 계산서 발행, 원천징수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미기장의 경우 산출세액의 20%, 계산서 미교부의 경우 2%, 법정증명서류 미수취 2%,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1% 등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2.5 농가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농업소득 전체로 과세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장부기장이나 매입 및 매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납세 과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협에 축적된 매입자료와 매출자료를 농가에 제공하여 농업인이 손쉽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농협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농가의 매출 및 매입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무상담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일본 농협의 입장에서도 경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농협은 세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및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농협을 통해 세무서비스를 받게 되면 현행 「세무사법」에 저촉될 수 있어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6. 소득신고 자료의 활용도 제고

소득세 납부를 통해 소득신고 자료를 축적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않으면 소득신고와 농업정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입보장보험이나 기타 보조금 지급을 위해 소득신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득신고 자료를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농업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다양한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분야에 여러 가지 조세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농업분야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조세부과의 원칙인 형평성에 어긋난다.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농업 내외의 과세 대상의 불만을 사고 있다. 과세의 공정성이 지켜질 때 사회 구성원들이 현존하고 있는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으며 조세저항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없음으로 인해 소득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은 개별 농가와 농정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영기록을 작성할 유인이 줄어들었고 개인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다. 또한 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농업인의 사업자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져 인터넷 상거래 등 다양한 방식의 판로 개척이 활성화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소득신고와 연계된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농가가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불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의 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농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리고

있다. 농업수입보험의 경우 개별 농가의 소득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기록이 축적되지 않아 과소보상이나 과대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도 소득을 자격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어 소득수준에 따른 복지 혜택의 차별화가 어렵다.

한편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는 농업소득도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가 농업소득을 신고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의 사례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면서 제기된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이 농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인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농업 보호 성향이 강한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농업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농업소득 신고 자료를 소득보전 제도 시행에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농업정책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소득 신고자료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작물재배업에 대한 비과세는 농업소득세가 2005년부터 과세 중단되고 2010년에 폐지되면서 세제 개편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과거 농업소득세가 과세 중단되던 때와 비교하면 농업 대내외 상황에는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대농이 증가하고 고소득 농가의 출현이 잦아져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품목별로 농가를 구분하여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과세 대상이 되었던 품목의 농가소득은 증가하였으나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의 농가소득은 미미하게 증가하거나 과거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비과세 혜택이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납세 환경의 개선도 있었는데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세무행정력이 증가하였고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루어지면서 농가가 판매, 소득, 자산 등 경영기록과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축적되었다는 것은 농업인에 대한 과세 범위를 확대했을 때의 납세와 관련된 행정비용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변화된 환경하에서 농업 일부 분야에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농업 전체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것인지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하에서 식량작물재배업과 10억 원 이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비과세 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작물재배업을 포함한 전체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비용은 농가의 세부담 증가, 과세 확대에 의한 농업인의 조세저항,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 증가, 농업인의 납세협력비용 증가 등이 될 수 있다.

농가의 세부담은 「농가경제조사」를 이용하여 추산한 결과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보다는 많은 수의 농가가 납세부담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납세 세액도 증가하여 농가의 세부담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 및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 가구를 위한 세액지원제도를 농가가 활용하면 저소득 농가의 경우 납세액보다 지원액이 커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농가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서 일정 수준의 공제를 도입하면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폭은 감소할 수 있다.

농가의 세부담 증가와 생산활동 위축을 이유로 농업인의 조세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실질적으로 가장 큰 사회적 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농업인 간, 농업분야 내 기존 과세 대상자와 대상자 아닌 자들 간의 집단 갈등이 표면화될 수 있다.

또 다른 비용은 세금 징수에 드는 행정비용의 증가이다. 그 중에서도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주요한 세금 징수 관련 행정비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업분야 전체로 과세를 확대할 경우 얻게 되는 편익은 과세 자체로 얻어지는 편익과 과세를 위해 이루어지는 소득신고로 얻어지는 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과세 자체로 얻어지는 편익은 세수 증가, 사회적 형평성 제고로 인한 후생 증가이다. 소득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농가 경영의 효율화, 투자 기회 확대, 사업자 등록 근거 확보로 인한 판로 확대, 농정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자면 농업소득에 대한 직접 과세로 인한 편익인 세수 확대는 농가의 납세액 증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실상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득의 이전일 뿐 순편익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편익들은 경제의 효율성 증대, 제도의 발전 등 사회적 순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인의 조세저항이나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는 제도 개편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 여부에 따라서 완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비과세되던 작물재배업 및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도 개편에 편익이 존재하는 것처럼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과세 확대의 비용은 새로이 과세 대상이 되는 농가가 부담하지만 편익은 농업계를 포함한 사회 전체로 귀속된다. 사회 내 일부 집단이 치르는 비용으로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대된다면 피해를 입는 집단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 농가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세제 개편 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세부담 확대폭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농업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을 도입하거나 소득 산출 시 경비율을 조정하여 어려운 경영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동성이 강하고 일부 작물의 경우 장기 투자가 이루어지는 농업소득의 특성으로 인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소득신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납세 및 재무 관련 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농가가 납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아직 시장개방에 적응 중이고 경기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과세 시행 시 농가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소득세 과세 확대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이유이다. 또한 단시간에 제도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제도 정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제도 개편이 장기적·단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과세에서 과세로의 제도 전환 이전에 납세를 위한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세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농업인 간의 공감대 형성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득세 과세를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소득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농가가 지불하고 있는 기회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부 록 1

일본의 청색신고제도⁴⁷

■ 청색신고 개요

- 일본은 기장에 따른 정확한 소득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청색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음.
- 「청색신고제도」는 일상적인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과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제도임. 일반적인 신고서가 백색인데 반해 청색신고를 위한 신고서는 청색이므로 「청색신고제도」라 불리고 있음.
- 「청색신고제도」는 칼 샤우프(Carl Shoup)의 권고에 따라 1950년에 시행되었음. 제도 도입 시 청색신고 수는 11만 1,000건(4%)으로 저조하여, 단순 부기 인용 등의 조치에 더해 정부는 기장 지도에 역점을 두는 운영을 실시하였고, 결국 1955년 청색신고의 신고자 수가 51만 9,000건(32%)으로 급증함.
- 그러나 청색신고자의 증가로 인해 백색신고와의 부담 균형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일본 정부는 청색신고 혜택을 장부기장을 정확히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결국 이러한 정책이 납세자에게 부담으로 느껴져, 청색신고의 보급률은 다시 정체함.
- 1963년 정부는 다시 양적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지도 체제를 강화함. 제도 면에서도 1967년에 현금주의에 의한 소득 계산의 인정 등 혜택이 확충되었음. 일본 정부의 「청색신고제」의 질적·양적 측면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15년 603만 명 이상의 사업자들이 청색신고를 하고 있음<부표 1-4>.

⁴⁷ 日野 雅彦(히노 마사히코). 2009. “青色申告制度の意義と今後の在り方(청색신고제도의 의의와 향후 방향성).” 稅務大學校(세무대학교)와 일본 출장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청색신고 적용 대상자

- 소득세는 납세자 중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하여 청색신고제도의 적용이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업무를 영위하지 않는(급여 소득자, 양도소득, 잡 소득 자 등) 개인에게 청색신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의 경우는 소득세와 같은 제한 없이 모든 법인이 청색신고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색신고제도의 승인 및 취소

- 「청색신고제도」의 골자는 일률적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세무서장에게 청색신고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검토 후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을 실시
- 이때 거부되는 경우는 주로 장부 서류의 미비, 은폐 등이 원인이며, 신청한 기간의 종료일까지 승인 또는 거부 처분이 없는 경우 그날에 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또한 청색신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① 장부 서류의 미비, ② 세무서장의 지시 불이행, ③ 장부 서류의 은폐 등, ④ 기한 내에 미신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취소 사유에 속한 기간에 소급하여 청색신고의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청색신고자의 장부 기장 및 저장에 관한 의무사항⁴⁸

- 청색신고자는 원칙적으로 정규기장(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원칙에 따

⁴⁸ 소득 300만 엔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중 백색신고를 했던 사람은 기장의 의무가 없었으나 2014년 1월부터 백색신고를 하는 소규모 사업자도 기장을 하게 되며 이로써 모든 소득신고자는 기장 및 서류보관 의무를 가짐.

- 라 일상적인 거래를 기록해야 하지만 간이장부도 허용됨.
- 또한 전전년분의 부동산금액 및 사업소득 금액의 총합계가 300만 엔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간이부기를 해도 무방함.
 - 청색신고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5년 내지 7년간 보관해야 함.

〈부표 1-1〉 청색신고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기간

구분		장부서류의 구체적인 예	보존기간
장부	복식부기	분개장, 총계정원장 등	7년
	간이장부	현금출납부, 경비장, 외상장부, 고정자산대장 등	7년
결산서류		청색신고 결산서, 재고표 등	7년
현금 및 송금 관련 서류		영수증, 예금통장, 수표, 차용증 등	7년 (소규모 사업자는 5년)
기타 서류		납품서, 청구서, 송장, 견적서, 계약서 등	5년

자료: 靑色申告会. 2016. 「靑色申告会役員必携 平成 27 年分 靑色コーナー編」, 浪江町商工会 홈페이지 (<http://www.nsci.or.jp/pdf0119aairo.pdf>: 2016. 6. 2.).

- 과세 소득의 계산은 발생주의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청색신고자의 경우, 현금 수입·지출기간을 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현금주의에 입각한 소득 계산의 특례 적용을 인정하고 있음. 이 특례를 적용할 경우, 현금 출납 및 상각 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기록하고 이에 따른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즉, 간이장부 방법을 더욱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청색신고의 특전

- 청색신고자는 백색신고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특전이 부여되는데 실체상의 혜택(소득 계산상·세액 계산상의 특전)과 절차상의 혜택으로 나눌 수 있음.

가. 실체상의 특전

(1) 손실의 이월공제·소급환급

- 손실의 이월공제는 손실의 금액을 해당 기간 이후 3년(법인세는 7년) 동안의 소득과 통산하는 것임.

(2) 준비금

- 준비금 제도는 미래의 막대한 지출이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준비금 중 일정 금액에 대한 비용 산입을 인정하는 제도임. 여기에는 선박 등의 특별 수선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 수선 준비금과 일정한 국외 투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 투자 등 손실 준비금 등이 있음.

(3) 특별상각·세액공제

- 특별상각 또는 세액공제제도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상각에 일정 비율의 상각비를 가산한 특별상각을 인정하거나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제도임.

(4) 소득세 고유의 특전

① 청색사업 전임자 급여

- 「소득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청색신고 사업 전임자 급여 혜택은 예외로 가족 직원이 사업에 독점적으로 종사하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 가족 직원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인정함.

② 청색신고 특별공제

- 청색신고 특별공제는 소득의 계산상 65만 엔 또는 10만 엔을 상한으로 공제하는 것임. 65만 공제는 정규부기의 기장 방법을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 이에 대해 10만 엔의 공제는 기장 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65만 엔의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됨.

③ 기타

- 기타 소득세 고유의 특전으로서 (i) 현금주의에 의한 소득 계산의 특례, (ii)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경비 산입이 있음.

〈부표 1-2〉 청색신고자의 특전

특례		청색신고	백색신고
주된 소득 계산상의 특전	사업전종자 급여의 필요경비 산입	원칙적으로 전액을 필요경비 산입	최고 86만 엔까지 필요경비 산입
	신고공제	최고 65만 엔의 소득공제	공제 없음
	각종 총당금의 전입	대손총당금 등의 전입 가능	총당금의 전입 불가
	감가상각특례 등	특정 설비 등의 특별상각	통상적인 감가상각방식 적용
	재고자산의 저가법 선택	선택 가능	선택 불가
순손실의 이월공제		3년간 이월공제 가능(법인은 9년간)	특정한 경우에만(재해로 인한 순손실) 이월공제 가능
순손실의 소급공제		전년으로 소급공제하여 전년분의 소득세액 환급	환급 가능
경정	경정의 제한	원칙적으로 장부를 조사한 후가 아니면 경정불가	특별한 제한이 없음
	경정의 이유부기	이유 기재 필요	이유 기재 불필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경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있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심사청구 가능	불복신청의 순서는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

자료: 안중석 외.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p. 85;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소득세와 법인세 적용 대상자' 관련 DB 파일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aairo_28.pdf: 2016. 8. 1.).

나. 절차상의 혜택

(1) 장부 조사에 따른 경정

- 세무서장은 청색신고에 관한 장부 서류를 조사하고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음. 즉, 다시 말하면 청색신고자는 세무 조사에서 장부 조사가 보장됨.

(2) 경정 이유 부기

- 세무서장은 청색 신고서에 관한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경정 통지서에 경정의 이유를 부기할 필요가 있음. 즉, 청색신고자는 경정을 받을 때 경정의 이유가 첨부된 경정 통지서를 수령하는 특전이 있음.

(3) 추계 과세의 금지

- 추계에 의해 경정·결정을 받지 않는 혜택이 있음.

(4) 직접 심사 청구

- 청색 신고서에 관한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하거나 직접 심사 청구를 하거나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특전이 있음.

(5) 절차상 혜택의 효력

- 상기 (1) 내지 (3)의 혜택은 세무서장에게 일정한 행위를 의무화하는 것이지만, 이것들은 모두 과세 처분의 효력 요건이 되는 것임.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배제된 과세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잘못된 처분이 됨.

■ 백색신고제도와외의 장부기장 비교

- 「청색신고제도」가 임의의 적용제도인 반면, 「백색신고제도」는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 있음. 다만, 「백색신고제도」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및 규제는 없음.
- 「청색신고제도」는 정규부기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정규부기 방법에 비해 기장의 신뢰성이 낮은 간이부기의 방법과 현금주의 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정규부기 방법이 「백색신고제도」의 부기 기장 방법보다 기장 수준이 높기 때문에 「청색신고제도」가 규정하는 세 기장 방법 중 백색기장 제도와 관련한 검토는 단순부기와 현금주의의 두 기장임.

〈부표 1-3〉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부기 방법

영업 등 소득 (농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청색신고			백색 기장제도	
		정규 부기	간이 부기	현금 주의		
작성 장부	부기장부	○				
	총계정 원장	○				
	기타 필요한 장부	○	○	○	○	
기장 항목	자산 부채 항목	(1) 현금	○	○	○	
		(2) 당좌 예금	○			
		(3) 계산서	○			
		(4) 채권	○	○		
		(5) 외상 매입금	○	○		
		(6) (2)~(5) 이외의 채권 채무	○			
		(7) 감가상각 자산·이연 자산	○	○	○	
		(8) (1)~(4),(6),(7) 이외의 자산	○			
		(9) 총당금·준비금	○	○		
		(10) 원입금(元入金)	○			
	손익 항목	(11) 매출	○	○		○
		(12) (11) 이외의 수입	○	○		○
		(13) 매입	○	○		○
		(14) (13) 이외의 비용	○	○		○
작성 서류	손익계산서[수지내역서]	○	○	○	[○]	
	대차대조표	○				

자료: 日野 雅彦. 2009. “青色申告制度の意義と今後の在り方.” 税務大学校. p. 354.

① 간이부기와 백색신고의 부기 제도

- 첫째, 간이부기 방법과 백색부기 제도를 비교를 위해 상기 <부표 1-3>의 ‘기장 항목’을 보면, ‘손익 항목’을 부기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양쪽 모두 동일함. 그러나 ‘자산 부채 항목’에서 단순부기 방식은 (1) 현금, (4)채권, (5)미지급금, (7)감가상각 자산·이연 자산을 부기 대상으로 하는 반면, 백색신고 제도의 경우 기장 대상이 아님. 결국 간이 부기 방법이 상당 정도 기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음.

② 현금주의와 백색신고의 부기 제도

- 현금주의와 백색부기 제도를 보면, 현금주의는 기장 항목 중 (1) 현금과 (7) 감가상각 자산·이연 자산이 대상인 반면, 백색 신고제도는 “손익 항목”의 4개가 모두 대상이 됨. 이와 같이 기장 항목 수에 주목하면 현금주의 쪽이 백색부기 제도보다 기장 항목이 적어 더 간단한 기장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금주의에 의한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는 현금주의 방법의 경우, 상각비와 대출 등의 자산 손실의 계상을 제외하고 현금의 출납에 소득을 계산하게 됨. 따라서 상각비 등의 계산과 현금의 출납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소득이 계산되도록 하기 때문에 현금주의 방식은 이 특례에 관한 업무의 총수입액 및 필요경비를 기장하는 동시에, 매일의 현금 재고량의 대조를 통해 장부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기재 방법임.
- 한편, 백색부기 제도는 “손익 항목”부기에 의해 손익을 기입하되 현금 출납 자산 항목에서의 검증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정확한 소득의 계산에 기여하는 기장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현금주의 기장 수준이 백색부기 제도의 상당 부분 능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③ 결론

- ①과 ②의 검토대로 청색신고제도가 사용하는 기장 방법은 자산 부채 항목을 기입하고, 장부의 정확성 검증을 수반하기 때문에 백색부기 제도를 웃도는 기장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검증을 거친 장부에서 계산한 소득이 「소득세법」이 요구하는 소득이라고 해석됨.
- 청색신고제도의 기장은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보급 촉진하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음.

■ 청색신고제도의 농가의 활용정도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업수입이 있으면서, 청색신고를 한 사람은 42만 여명(15년)으로 파악하고 있음.

- 청색신고를 ‘정확히 제대로 부기를 하는 사람’, ‘간이장부를 하는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중 복식부기를 하는 사람은 20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음.
- 청색신고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부표 1-4〉 청색신고의 승인신청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천 명	%	천 명	%	천 명	%
경영 등 소득자	신규신청자 수	138	116	168	122	162	96
	청색신고자 수	3,474	102	3,559	102	3,679	103
농업 소득자	신규신청자 수	14	140	15	111	13	88
	청색신고자 수	410	101	415	101	421	101
부동산·산림소득자	신규신청자 수	71	113	83	117	81	98
	청색신고자 수	1,816	102	1,865	103	1,923	103
합계	신규신청자 수	223	116	266	120	256	96
	청색신고자 수	5,701	102	5,839	102	6,023	103

주 1) %은 전년 대비.

2) 신규신청자수는 각 연도 3월 15일 현재 기준, 청색신고자 수는 익년 3월 15일 현재.

자료: 일본 국세청. 2015. 『제64회 사무연보』. p. 117. 참조.

■ 청색 신고를 활용한 농업정책

- 일본 정부는 TPP 등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안전망으로서 소득세자료를 바탕으로 한 「수입보험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이때 「청색신고제도」(과거 5년의 수입자료)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2017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이며, 농가의 과거 소득 증명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농가는 장부의 보관 의무를 가짐.
- 현재는 농업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해당 공제제도는 논이나 밭에 작물이 심어져 있을 때를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많은 편
- 반면 일본의 수입보험제도는 재해 전후에도 수입액이 낮아졌다고 평가되면 수입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때 수입 감소 여부의 소득자료를 「청색신고제도」 자료로 활용가능하며, 청색신고자 역시 증가할 것으로 기대

부 록 2

사업자 등록 및 자녀장려금 제도 현황⁴⁹

■ 「사업자 등록」 제도 현황

- 「사업자 등록」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며,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아래 요건들(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어짐.
 - 가구요건은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임.
 - 총소득요건은 당해 연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 등 가구원 구성 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소득 금액보다 적어야 함.
 - 주택요건은 주택과 재산은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1채만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임.
 - 재산요건의 경우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부표 2-1〉 근로소득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요건	기준
가구 요건	2014년 12월 31일 기준 · 배우자가 있거나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양자녀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⁴⁹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등록·자녀장려금 안내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함(<https://www.hometax.go.kr>: 2016. 4. 5.).

(계속)

	요건	기준
총소득 요건	2014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가구: 1,300만 원 ▪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 원
주택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주택 또는 주택 1채만 소유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재산 요건	201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주: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고,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2014년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료: 국세청 홈택스 DB(<https://www.hometax.go.kr>: 2016. 4. 5.).

- 「사업자 등록」은 거주자가 속한 가구원 구성 기준에 따라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산정됨.
 - 가구원 구성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족가구, 맞벌이 가족가구로 구분됨.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급여액 등의 구간이 차등적으로 제시되고 각 구간별로 「사업자 등록」 지급액 계산식이 상이함.
 -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임.

〈부표 2-2〉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사업자 등록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사업자 등록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²⁾ x 600분의 70
	6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70만 원
	9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	7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x 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900분의 170
	9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170만 원
	1,200만 원 이상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총급여액 등-1,200만 원) x 900분의 21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1,000분의 210
	1,000만 원 이상 1,300만 원 미만	210만 원
	1,3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총급여액 등-1,300만 원) x 1,200분의 210

주 1)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자 등록」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자료: 국세청 홈택스 DB(<https://www.hometax.go.kr>: 2016. 4. 5.).

- 사업 및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는 ① 비과세소득, ②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③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 ④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⑤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단,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등이 있음.
-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동일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부표 2-3>에 제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관련 서류 중 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재산 관련 증거서류가 필요함.

〈부표 2-3〉 소득별 제출 증거서류

구분	제출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자료: 국세청 홈택스 DB(<https://www.hometax.go.kr>: 2016. 4. 5.).

- 「사업자 등록」 지급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의 산정에는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며, 농업의 조정률은 30%임<부표 2-4>.
 - 만약 근로소득이 있는 농가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근로소득과 농업소득의 30%를 합한 값이 해당 농가의 총급여가 되며 이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와 수급 금액이 결정됨.

〈부표 2-4〉 업종별 조정률

업종 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75%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90%

자료: 국세청 홈택스 DB(<https://www.hometax.go.kr>: 2016. 4. 5.).

- 「사업자 등록」의 지급 현황(<부표 2-5>)을 보면 2010년 약 66만 7,000가구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가구의 78.3%인 52만 2,000가구로 총지급액은 4,020억 원,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77만 원 수준으로 나타남.⁵⁰
- 신청가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2014년에는 약 158만 4,000가구가 EITC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77.8%인 123만 2,000가구가 실제 EITC를 지급받음.
 - 총지급액은 2012년 잠시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2010년의 2.5배에 이르는 1조 216억 원에 달하고 가구 평균 지급액 역시 83만 원 수준으로 다소 증가함.

⁵⁰ 신청금액은 국세청에서 구축한 데이터(국세청 소득금액, 가족관계 등)에 근거하여, 「사업자 등록」·「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로 파악된 가구를 토대로 산정한 예상금액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았으나 실제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와 데이터의 부재로 지급대상이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적격 심사 후 실제 지급현황에서 가구 수와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함.

〈부표 2-5〉 사업자 등록 신청 및 지급 현황

단위: 백만 원, 원, %

연도	신청		지급		가구당 평균 지급액	신청 대비 지급률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2010년	666,816	509,405	522,098	402,003	769,976	78.3
2011년	930,232	747,481	752,049	614,021	816,464	80.8
2012년	1,020,087	719,327	783,397	561,761	717,083	76.8
2013년	1,060,405	967,151	846,018	774,492	915,456	79.8
2014년	1,584,038	1,360,980	1,232,546	1,021,682	828,920	77.8

자료: 국세청. 2015. 『국세통계연보』.

■ 「자녀장려금」 제도 현황

-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되었음.
 -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2015년 기준) 지원금을 지급함.
-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 중 총소득 요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 주택, 재산요건은 「사업자 등록」과 같음.
 - 총소득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장려금」은 거주자가 속한 가구원 구성 기준과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 「자녀장려금」의 2014년도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약 141만 가구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였으며 실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가구의 74.2%인 104만 6,000가구임.
 - 2014년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된 총금액은 6,417억 원 가량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61만 원 수준임.

〈부표 2-6〉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급여액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홀벌이 가족가구	100만 원 이상 2,1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1,900분의 20]
맞벌이 가족가구	600만 원 이상 2,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5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1,500분의 20]

주: 위 산식은 계산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사업자 등록」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세청 홈택스 DB(<https://www.hometax.go.kr>: 2016. 4. 5.).

부 록 3

소득세 부과와 농가의 노동공급

■ 분석의 필요성

- 소득세 부과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주체의 근로의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경제주체는 주어진 시간 동안 근로시간과 여가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데 소득세 부과로 인해 임금률이 감소하면 이에 따른 노동과 여가 간 대체효과와 여가의 소득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됨.
 - 대체효과는 소득세 부과로 인해 순임금률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주체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리게 됨을 의미함.
 - 동시에 임금률의 하락은 소득감소를 의미하며 새로운 소득수준에 맞추어 효용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노동시간을 결정하는데 이때 만약 여가가 정상재라면 여가시간은 감소하게 되고 열등재라면 여가시간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 소득효과임.
- 노동 과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논리는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에 대해 과세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
 -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은 작물재배소득에 대해 과세된다면 농가의 실질 임금(소득)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며 이는 농가가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과세로 인해 작물재배에 투입되는 노동량이 감소하게 되면 농업생산이 위축됨을 의미하며 이는 전체적인 농산물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음.
- 따라서 작물재배업 과세가 농산물 생산을 위축시킬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

- 소득세가 농업인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존재함.
 - 소득세 과세가 노동의욕을 감소시킨 결과 한계농 또는 고령농의 경우 영농 자체를 포기하거나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반대로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어 세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대체 수단이 마땅치 않으므로 근로의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음.
 - 생계농의 경우 납세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므로 오히려 근로시간을 늘려 줄어든 소득을 만회하려 하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농 방식을 전환하는 등 소득세가 영농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영농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각 농가의 농지규모의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시간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음.
 - 이처럼 농가의 경영규모, 소득수준, 경영주의 연령 등에 따라서 소득세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 그러나 소득세가 노동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를 농업에 한정하여 진행한 연구가 없어 위의 두 가지 가설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가 없음.
- 다만 외국에서는 근로소득세가 노동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주제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의 결론이 정립되어 있음.
 - 근로소득세가 노동자의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대상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면, 근로적령기에 있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로 인한 근로의욕의 감소가 크지 않으나 주부와 같은 여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는 근로의욕을 크게 감소시킴(이준구·조명환 2016).
-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소득세가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나성린 외(2002), 심욱기(2006), Lee(2004), 남재량(2007), 전승훈·홍인기(2009) 등이 있음.

- 나성린 외(2002)를 제외한 최근의 국내 실증분석 결과들은 세후 소득의 증가가 노동공급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데 결론이 일치함.

■ 이론분석⁵¹

- 소득세 과세로 인한 실임금률 변화가 농가의 영농활동 투입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음.⁵²
- 소득세가 부과되면 작물재배 농가는 농업 노동시간과 농외 작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을 조정하여 자신의 소득을 극대화함.
- 하나의 농가는 보유한 최대 시간 T 중 일부를 영농활동과 농외 활동에 투입할 수 있으며 이때 농업에 투입한 노동시간은 F , 농외 작업에 투입한 노동시간은 M , 나머지 여가시간은 L 임. 농외 작업에 투입한 노동시간은 $M = T - F - L$ 으로 표현할 수 있음.
- 이때 농가는 농외 작업에 노동시간을 투입하면서 동시에 영농을 위해 노동력을 고용할 수 있음.
 - 고용 인력을 통해 투입된 노동시간은 H 로, 고용 임금은 w_h 로 표시
- 영농에 투입한 노동시간, 고용 인력의 농업 노동시간에 따라 농가의 총 생산(Q)이 결정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Q = G(F, H; A)$ 와 같음.
 - 이때 A 는 농지 등 노동시간 외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소를 의미함.
 - 농가의 생산함수는 2계 미분 가능하며 강오목한 것으로 가정.

$$G_F = \frac{\partial G}{\partial F} > 0, \quad G_H = \frac{\partial G}{\partial H} > 0$$

$$G_{FF} = \frac{\partial^2 G}{\partial F^2} < 0, \quad G_{HH} = \frac{\partial^2 G}{\partial H^2} < 0, \quad G_{FF}G_{HH} - G_{FH}^2 > 0$$

⁵¹ 본 절은 Chang et al.(2012)을 변형·발전시킨 것임.

⁵² 여기에서 영농활동은 작물재배를 의미한다.

- 농가의 농업소득 즉 작물재배로 얻은 소득(y_f)은 생산물의 가격 p 와 생산량 Q 의 곱에서 고용된 인력에 대한 노임을 제한 값이 됨.

$$y_f = pG(F, H; A) - w_h H$$

- 농가가 농외 작업에 노동시간을 투입하여 얻은 농외소득(E_o)은 농외 작업의 임금 w_o 와 총 노동시간의 곱이 됨.

$$E_o = w_o M = w_o (T - F - L)$$

- 농가는 영농과 농외 작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직불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얻은 공적 이전소득(Z)을 얻을 수 있음. 따라서 농가의 총 소득(I)은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의 합이 됨.

$$I = [pG(F, H; A) - w_h H] + w_o (T - F - L) + Z$$

- 농가의 효용은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과 여가시간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이를 농가의 노동시간과 여가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begin{aligned} U &= U(I, L) \\ &= U(pG(F, H; A) - w_h H + w_o (T - F - L) + Z, L)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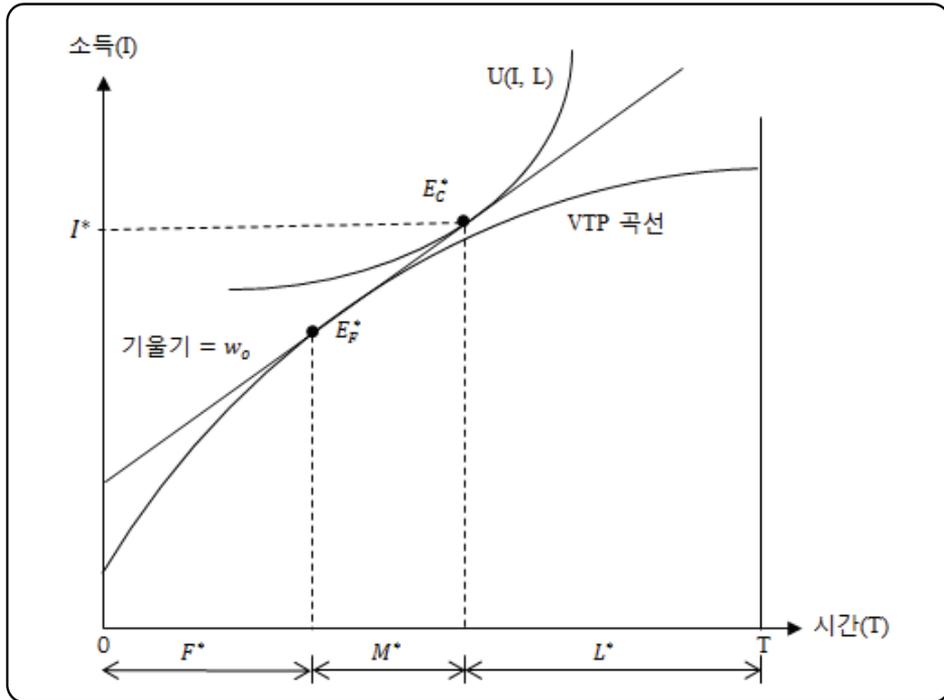
- 농가는 1계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의 노동시간을 선택하여 효용극대화를 할 수 있는데 농가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은 아래와 같음.

$$\frac{dU}{dF} = pG_F(F, H; A) - w_o = 0$$

$$\frac{dU}{dH} = pG_H(F, H; A) - w_h = 0$$

$$\frac{dU}{dL} = U_I(I, L)(-w_o) + U_L(I, L) = 0$$

〈부도 3-1〉 농가의 최적 노동시간 배분



- 1계 조건 중 첫 번째 조건은 농가가 농업 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 (Value of Marginal Product: VMP)와 농외 작업의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농업 투입 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두 번째 조건은 고용 인력에 대한 임금과 고용 인력의 한계생산물 가치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고용 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함.
- 세 번째 조건은 농가의 여가시간은 소득과 여가시간의 한계대체율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MRS)과 농외 작업의 임금 수준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노동시간에 대한 농가의 선택은 <부도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농가의 소득은 올라가므로 총산출가치(Value of Total Product: VTP) 곡선은 우상향하며 농외 임금곡선 또한 우상향함.

- 1계 조건에 따르면 농가의 영농활동 투입 시간은 농외 임금소득과 농업노동의 VMP가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되므로 VTP 곡선과 임금 곡선이 접하는 점 E_F^* 에서 영농 투입 노동시간이 결정됨.
 - 여가시간과 농외 작업 투입 노동시간 간의 최적 조합은 농가의 MRS와 임금곡선이 접하는 지점 E_C^* 에서 결정됨.
 - 농가가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 배분은 F^* , M^* , L^* 가 되며 이때의 총소득은 I^* 임.
- 만약 지금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던 농업소득, 즉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해서 정률(t_a)의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다면 농가의 노동시간 배분은 달라질 수 있음.
- 소득세 부과로 인해 농가의 농업소득과 농가의 총소득 또한 아래와 같이 달라짐.

$$y_f^{**} = [pG(F, H; A) - w_h H](1 - t_a)$$

$$I^* = [pG(F, H; A) - w_h H](1 - t_a) + w_o(T - F - L) + Z$$

- 따라서 농가의 효용극대화는 새로운 효용함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음.

$$U^* = U[[pG(F, H; A) - w_h H](1 - t_a) + w_o(T - F - L) + Z, L]$$

- 새로운 효용함수에 기반하여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면, 다음의 세 가지 1계 조건이 도출됨.

$$\frac{dU}{dF} = pG_F(F, H; A)(1 - t_a) - w_o = 0 \quad (1)$$

$$\frac{dU}{dH} = pG_H(F, H; A)(1 - t_a) - w_h(1 - t_a) = 0 \quad (2)$$

$$\frac{dU}{dL} = U_I(I, L)(-w_o) + U_L(I, L) = 0 \quad (3)$$

- 첫 번째 1계 조건은 농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농업에 투입된 노동의 세후 한계생산물가치가 농의 임금과 일치하는 수준에서 농업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
- 나머지 조건들은 이전과 다르지 않음.

$$VMP_F = w_o \Rightarrow VMP_F = \frac{w_o}{1-t_a}$$

- 더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농가의 생산함수 G 가 다음과 같은 코브-더글러스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가정,

$$G = \alpha F^\beta H^{1-\beta}$$

$$G_F = \alpha \beta F^{\beta-1} H^{1-\beta}$$

- 이를 효용극대화 1계 조건에 대입하면 수식 1은 아래와 같이 바꿀 수 있음.

$$p\alpha\beta F^{\beta-1} H^{1-\beta}(1-t_a) = w_o$$

- 위의 식을 만족하는 최적 농업 노동시간은 아래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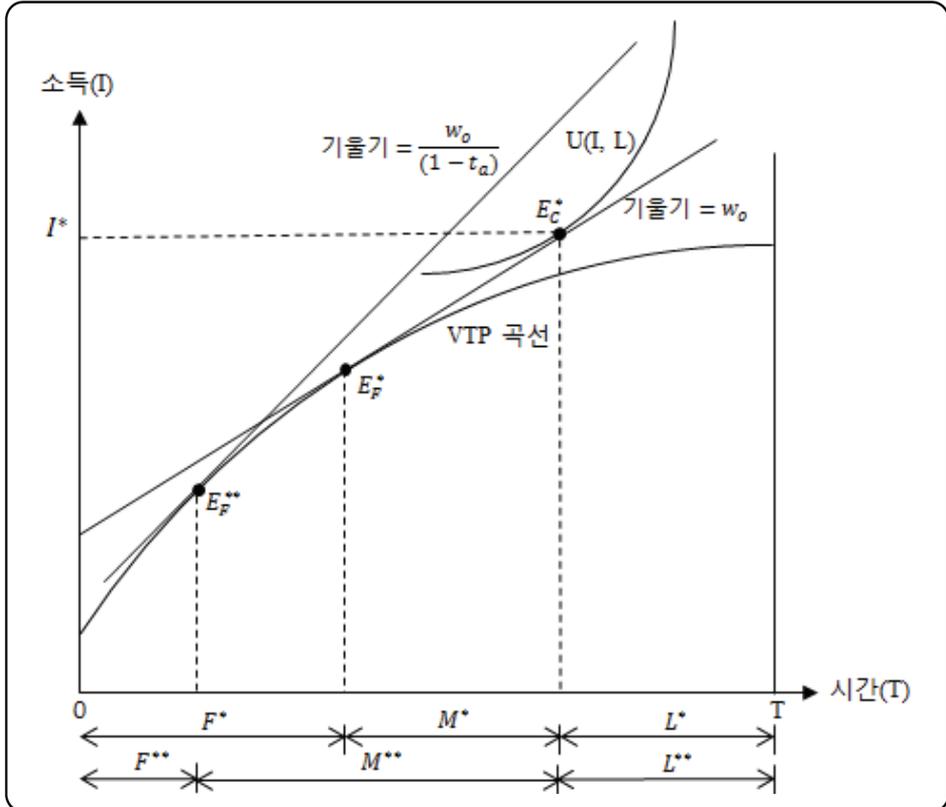
$$F^{**} = \left[\frac{w_o}{p\alpha\beta(1-t_a)H^{1-\beta}} \right]^{\frac{1}{\beta-1}}$$

- 한편 기존의 최적 농업 노동시간 F^* 는 아래와 같음.

$$F^* = \left[\frac{w_o}{p\alpha\beta H^{1-\beta}} \right]^{\frac{1}{\beta-1}}$$

- 소득세 부분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최적 농업 노동시간에 비해 새로운 최적 농업 노동시간은 감소하게 됨.

〈부도 3-2〉 작물재배업 과세 시 농가의 최적 시간배분



- 이를 도식화하면 <부도 3-2>로 나타낼 수 있으며, 농가가 직면하는 새로운 임금곡선은 기존 임금곡선보다 기울기가 크며 새로운 균형점은 E_F^* 에서 E_F^{**} 로 이동함.
- 한편 농외 작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간의 시간배분에 관한 조건은 변하지 않았으므로 기존의 임금곡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 E_C^* 에서 농외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결정됨. 또한 농가의 후생수준과 소득수준에는 변화가 없음.
- 새로운 균형점에서 영농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시간(F^{**})은 기존의 영농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시간(F^*)보다 작고 농외 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시간(M^{**})은 기존의 농외 활동 시간(M^*)보다 크지만 여가시간은 이전과 동일함.

- 다시 말하면 작물재배업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면 농가는 총노동시간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영농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농외 작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가 영농활동을 위축시켜 생산량을 줄일 수도 있음을 시사함.
- 지금까지의 분석은 농가가 자유롭게 농외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이는 다소 비현실적인 조건이므로 이를 완화하여 조세 부과가 농가의 농업 노동투입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농가가 농외 노동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bar{M} 로 정해져 있다고 가정함. 이때 농가의 추가용시간은 $T = F - L - \bar{M}$ 이 되며, 농가가 농외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E_o = w_o \bar{M}$ 로 정해지게 됨.
 - 이때 농가의 총소득 I 는 아래와 같이 표현됨.

$$I = [pG(F, H; A) - w_h H] + w_o \bar{M} + Z$$

- 농외 노동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주어진 것으로 보았을 때의 농가의 효용을 노동시간과 여가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음.

$$\begin{aligned} U &= U(I, L) \\ &= U(pG(F, H; A) - w_h H + w_o \bar{M} + Z, L)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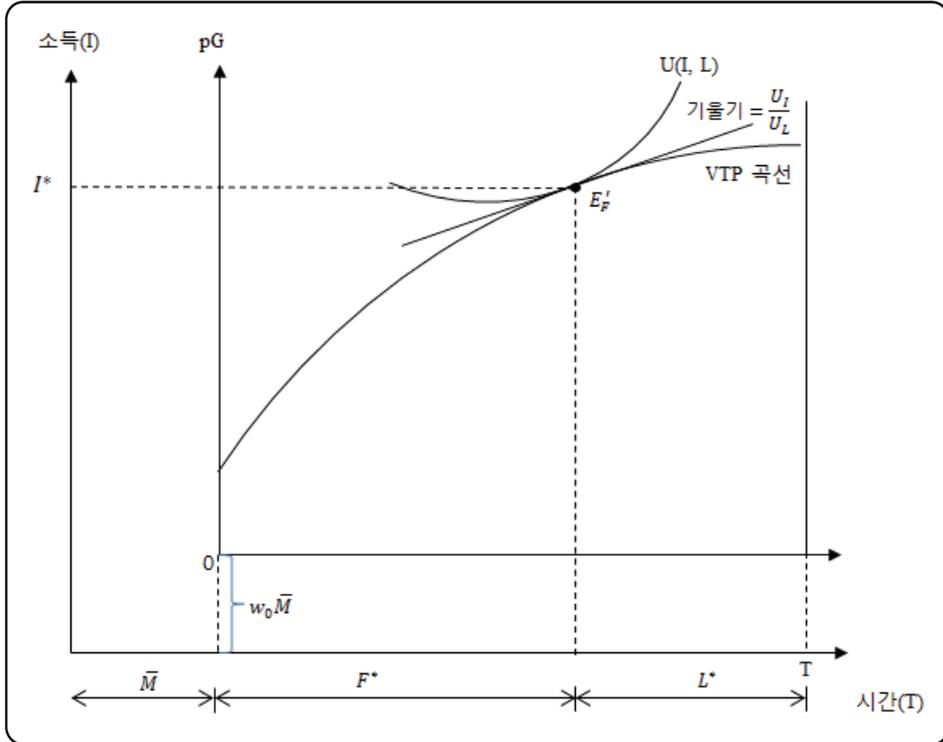
- 농가는 주어진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업 노동시간 F 와 고용 노동시간 H 임. 농가의 효용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은 아래와 같음.

$$\frac{dU}{dF} = pG_F(F, H; A) - \frac{U_I(I, L)}{U_L(I, L)} = 0 \quad (4)$$

$$\frac{dU}{dH} = pG_H(F, H; A) - w_h = 0 \quad (5)$$

- 수식 4는 농가의 최적 농업 노동투입시간이 농업 노동의 한계생산 가치와 소득과 여가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식 5는 농가의 외부 인력 고용시간이 고용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고용 노동의 임금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외 노동활동시간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했을 때 농가의 시간배분을 도식화하면 <부도 3-3>과 같음.
 - 농가가 농외 활동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bar{M} 로 정해져 있으므로 농외소득은 $w_o\bar{M}$ 가 됨.
 - 농업소득은 농업 관련 공적 보조금과 판매액에서 고용노동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값이 됨.
 - 농가의 효용극대화 조건에서 농가가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소득과 여가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므로 새로운 균형점은 무차별곡선과 총생산물가치가 접하는 지점 E'_F 가 되며, 새로운 균형에서 농업노동의 shadow price(잠재가격)는 $\frac{U_I}{U_L}$ 임.

〈부도 3-3〉 농외 노동활동 제약 시 농가의 시간배분



○ 만약 농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작물재배업 소득 즉 농업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농가의 농업노동시간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세가 과세된다면 농가의 소득은 아래와 같이 변함.

$$I = [pG(F, H; A) - w_h H](1 - t_a) + w_o \bar{M} + Z$$

- 이때의 농가의 새로운 효용함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됨.

$$\begin{aligned} U &= U(I, L) \\ &= U([pG(F, H; A) - w_h H](1 - t_a) + w_o \bar{M} + Z, L) \end{aligned}$$

- 새로운 효용극대화를 위한 1계 조건은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됨.

$$\frac{dU}{dF} = pG_F(F, H; A)(1 - t_a) - \frac{U_I(I, L)}{U_L(I, L)} = 0 \quad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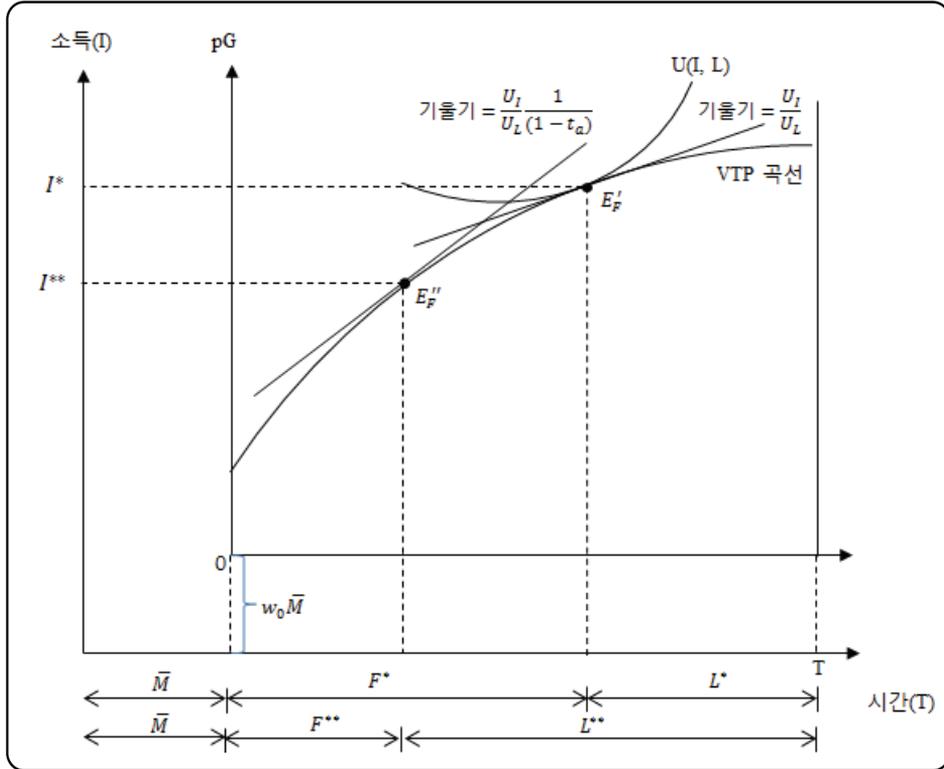
$$\frac{dU}{dH} = pG_H(F, H; A) - w_h = 0 \quad (7)$$

- 식 6은 다시 아래와 같이 변형됨.

$$\frac{dU}{dF} = pG_F(F, H; A) = \frac{1}{1 - t_a} \frac{U_I(I, L)}{U_L(I, L)} \quad (6')$$

- 소득세율 t_a 는 1보다 작으므로 식 6'는 농업노동의 한계생산물가치가 소득과 노동의 한계대체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일치하는 수준에서 농업 노동투입시간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소득세가 부과되기 전 균형점은 E'_F 였으나 농업 노동의 shadow price가 높아지면서 균형점은 E''_F 로 이동하게 됨. 그 결과 농업 노동시간은 F^* 에서 F^{**} 로 줄어들게 되고 여가시간은 L^* 에서 L^{**} 로 늘어나며 농가의 소득은 I^* 에서 I^{**} 로 감소하게 됨.
- 다시 말하면, 농외 취업 또는 사업에 제약이 있을 때 농가는 소득세 부과로 인해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며 소득도 감소함.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농외 활동에 제약이 없을 때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농가는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농외 활동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늘려 소득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농외 활동에 제약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 부과 시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줄여 농가의 총소득도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남.
- 즉 소득세 부과는 농가가 농업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을 줄이며 농산물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부도 3-4〉 농외 노동활동 제약하에서 작물재배업 과세 시 농가의 시간배분



부 록 4

농업소득세 관련 주요 조세용어

용어	정의
복식부기 (複式簿記, bookkeeping by double en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 단식부기(單式簿記)와 상대되는 개념
과세표준 (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tax 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가격, 수량, 종량, 용적 등으로 수치화한 것 각 세목의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됨.
과세표준확정신고 (課稅標準確定申告, tax retur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는 자기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과세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함. 즉, 종합소득과세표준·퇴직소득과세표준 또는 양도소득금액 등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 등 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함.
조정계산서 (調整計算書, statement of adjust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수정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그 기재 내용을 정당하다고 확인한 신고서
결정세액 (決定稅額, determined tax amou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
세액공제 (稅額控除,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납부세액 (納付稅額, amount of tax pay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여 해당 세목(稅目)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월결손금 (移越缺損金, loss carried forw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생긴 결손금으로서 전사업연도(前事業年度)로부터 이월된 결손금
추계결정 (推計決定, determination by esti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실액결정방법」)에 의한. 그러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실지조사결정의 원칙에 불구하고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함. 현재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각각 추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과세표준의 추계결정·경정방법 등이 적용됨.

(계속)

용어	정의
기준경비율 (基準經費率, basic expense r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관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적용하는 표준적인 필요경비의 비율
종합소득세 (綜合所得稅, aggregate income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함.
종합과세 (綜合課稅, aggregate ta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을 획득하는 개인별로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수한 소득은 분리과세, 분류과세를 하고 있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일정액 이하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분류과세하고 있음.
분리과세 (分離課稅, separate ta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 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 즉 납세 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 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임.
분류과세 (分類課稅, classified tax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 분류소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2016. 8. 11.).

참고문헌

단행본

- 국세청.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
- _____. 2015.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_____. 2016.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
- _____. 2016. 『2015년 귀속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기획재정부. 2015. 『2015 조세개요』.
- 김기성. 1997. 『농림수산 조세제도의 변천과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360.
- 김미복·김수석. 2011. 『농업부문 조세체계와 개선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37.
- 김미복·황의식·임지은. 2014. 『농업정책금융 및 농신보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724.
- 김종인. 2015. “일본 청년취농급부금 정책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NH 농협 조사월보 통권 제593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김태호. 2000.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 김형준·박명호. 2007. 『납세협력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나성린·남재량·문춘걸. 2002.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공공경제』 제7권 제1호. 한국재정학회.
- 남재량. 2007. 『근로소득세의 노동공급효과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일본 농림수산성. 2015. 『2015년도 예산의 개요(平成27年度予算の概要)』
- 박상원. 2011. 『농림어업 소득 과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박준기·황의식·김미복. 2010. 『전업농의 투자행위 분석과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620.
- 심육기. 2006. “2002년 세율인하 정책을 이용한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 분석.” 『제7차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안중석·기은선·정경화. 2010. 『주요국의 농업 관련 소득세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 10-01.
- 안창남.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이준구·조명환. 2016. 『재정학』 제5판. 문우사.
- 일본 국세청. 2015. 『국세청통계연보』.
- _____. 2015. 『제64회 사무연보』.
- 임응순·황진영·박상순. 2013. 『1차 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 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 전승훈·홍인기. 2009. “소득세 세율 인하 및 공제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 연구: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미시적 실증분석.” 『노동정책연구』 9(1): 55-98.
- 전주성. 2006. “재정개혁의 정치경제적 과제.” 『공공경제』 11(2): 217-238.
- 지성근. 1991. “납세자의 조세저항행위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논집』 제4권.
- 통계청.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 _____. 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_____. 2014. 『가계동향조사』.
- 행정자치부. 각 연도. 『지방세통계연감』.
- _____. 2005. 『2005 지방세정연감』.
- 홍범교·박명호·이혜원·홍성훈·고윤성. 2013.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측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日野 雅彦. 2009. “青色申告制度の意義と今後の在り方.” 税務大學校.
- Assemblée Nationale. 2015. “Rapport d’information par la commission des finances, de l’économie générale et du contrôle budgétaire: en conclusion des travaux d’une mission d’information sur la fiscalité agricole.”
- Cahuzac, J. Marre, B. 2000. “Rapport des députés sur les adaptations à apporter à la fiscalité et au monde de calcul des cotisations sociales agricoles.” p. 239.
- Chatanay, J, N. Cotton, G. Nallet, H. 1970. “La fiscalité et l’agriculture.” *Économie rurale* 86: 69-78.
- Chang, Y, B. Huang and Y. Chen. 2012. “Labor supply, income, and welfare of the farm household.” *Labour Economics* 19: 427-437.
- IRS. 2015. *Your Federal Income Tax For Individuals*.
- La direction de Budget. 2016. *Évaluations de Voies et moyens*.
- Lee, C. 2004. “The Effects of the Korean Income Taxation on Labor Supply and Welfare: A Piecewise-Linear Budget Constraint Approach Combined with IV Estimation.” *The Korean Economic Review* 20(4).

DB 자료

- 국세청. <http://www.nts.go.kr/call/income_tax/2009/09_03_01.html>. 검색일: 2016. 6. 2.
 _____. ‘세무용어사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wordList.jsp?>>.
 검색일: 2016. 8. 11.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Idx=1004000000&tabIndex=1>. 검색일: 2016. 4. 5.
- 국제조세연구소. <<http://www.ibfd.org/>>. 검색일: 2016. 8. 1.
-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aairo_28.pdf>. 검색일:
 2016. 8. 1.
-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검색일: 2016. 6. 9.
- 일본 국세청. <www.nts.go.jp>. 검색일: 2016. 8. 1.
- 일본 교토부 난탄시(南丹市). <http://www.city.nantan.kyoto.jp/www/kurashi/101/004/001/index_1866.html>.
 검색일: 2016. 5. 20.
- 일본 치바현 토가네시(東金市). <<http://www.city.togane.chiba.jp/>>. 검색일: 2016. 6. 3.
- 青色申告會青. 2016. 『色申告會役員必携 平成 27 年分 青色コーナー編』. <<http://www.nsci.or.jp/pdf0119aairo.pdf>>. 검색일: 2016. 6. 2.
- 프랑스 노동조합(FNSEA). <<http://www.fnsea.fr/>>. 검색일: 2016. 4. 13.
- 프랑스 농업회의소. <<http://www.chambres-agriculture.fr/>>. 검색일: 2016. 4. 13.

법률

- 「소득세법」(법률 제14389호, 시행일 2012. 7. 1.) 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16. 6. 1.
-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 시행일 2017. 1. 1.) 국가법령센터. <www.law.go.kr>.
 검색일: 2016. 4. 8.